

#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조사 연구

강 정 일 부 원 장  
강 창 용 책 임 연구 원  
위 용 석 연 구 원

빈

면

## 머 리 말

과거 가족농 중심의 자작영농형태가 발전의 정체를 보이게 되면서 현재 우리 농촌에는 농지의 임대차, 농기계 보유자에 일부 농작업을 위탁하는 농작업 수·위탁, 경영의 수·위탁 등의 다양한 영농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농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영농후계자를 육성한다던가, 농업생산에 관련된 여러 조직들을 구성한다던가, 외부자본까지도 농지소유 접근을 허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대안중 하나로써 과거의 농기계 중심의 영농조직인 기계화영농단과 유사한 영농조직인 위탁영농회사를 1991년부터 조성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위탁영농회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 의해 매년 수백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 진다는 점, 위탁영농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대개가 그 지역의 중추적인 기간영농자들이라는 점, 또한 이들에게 농촌내 노동력 부족 농가나 부재지주가 상당히 의존적이라는 점 등에서 그렇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위탁영농회사가 현재의 한국 농촌현실에 적절한 대응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조명과 미시적인 경영문제를 분석하여 현재의 영농형태 변화에 위탁영농회사가 적절한 대응체가 될 수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이 초기단계인데다 타영농조직과의 비교·분석을 하는데까지는 아직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여서 한국 농촌 전체적 시각의 경영주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

부분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이 연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전국의 위탁영농회사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위탁영농회사의 정책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농민들과 농정 관계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4.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	3
3. 연구의 방법 .....	5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	6
5. 보고서의 구성 .....	6

### 제 2 장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의의와 현황

1. 위탁영농의 개념 규정 .....	8
2. 위탁영농과 영농조직 .....	11
3. 위탁영농회사 설립의 의의 .....	20
4. 위탁영농회사의 조직 현황 .....	25

### 제 3 장 조사대상 위탁영농회사의 일반개황 분석

1. 조사 개황 .....	29
2. 인적 구성 .....	31
3. 보유자산 현황 .....	35
4. 영농작업규모 및 작업수수료 .....	41

### 제 4 장 위탁영농회사의 조직 성격과 유지의 문제

1. 이론적 고찰 .....	47
2. 조직성격 분석 .....	54

3. 조직 유지상의 문제 .....	62
<b>제 5 장 위탁영농회사의 사업실태 분석</b>	
1. 위탁영농회사의 농지임차 및 농작업수탁실태 분석 .....	72
2. 위탁영농회사의 농한기 소득사업실태 분석 .....	94
<b>제 6 장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성과 분석</b>	
1.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입 .....	98
2.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지출 .....	103
3.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성과 분석 .....	106
4.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지상 문제점 .....	109
<b>제 7 장 위탁영농회사 관련 제도 검토</b>	
1. 위탁영농회사 관련 제도의 내용 .....	111
2. 위탁영농회사 관련 제도의 문제점 .....	122
<b>제 8 장 요약 및 결론</b>	
1. 요약 .....	125
2. 결론 .....	132

## 표 목 차

### 제 2 장

표 2- 1	농작업 수·위탁, 경영 수·위탁, 농지임대차의 성격 구분	10
표 2- 2	농기계 공동이용조직형태	19
표 2- 3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영농단의 비교	23
표 2- 4	시도별 위탁영농회사 설립 현황	26
표 2- 5	회사 형태별 위탁영농회사 설립 현황	26
표 2- 6	위탁영농회사 지원 농기계 대수	27
표 2- 7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개소당, 1993)	27
표 2- 8	위탁영농회사 육성사업비 지원 실적	28
표 2- 9	위탁영농회사 시설 설치자금 및 경영비용자 지원, 1994	28

### 제 3 장

표 3- 1	1991~93년도 조사대상 위탁영농회사 일람표	30
표 3- 2	위탁영농회사의 평균 참여자 수	32
표 3- 3	위탁영농회사 참여자들의 연령별, 학력별 분포	33
표 3- 4	위탁영농회사 참여자들의 영농경력별, 농기계이용경력별, 수리능력별 분포	34
표 3- 5	참여자들중 농어민후계자와 영농단원의 수, 1993	35

표 3- 6	참여자들의 영농규모 분포	35
표 3- 7	위탁영농회사의 기초자산 현황	36
표 3- 8	위탁영농회사의 부지 보유 현황(누계)	38
표 3- 9	회사별 농지 전용 실태	38
표 3-10	위탁영농회사의 부대시설 보유 현황	39
표 3-11	위탁영농회사의 부대시설 보유 현황(세분)	40
표 3-12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보유 현황	42
표 3-13	위탁영농회사의 설립년도별, 년도별 농작업면적	43
표 3-14	위탁영농회사와 인근의 수도작 주요작업 수수료 현황	44
표 3-15	회사별, 년도별 평당 임차료 및 평당 완전수탁 수수료	45
표 3-16	회사별, 년도별 평당 부분수탁 수수료	46

#### 제 4 장

표 4- 1	집단응집성과 구성원 목적에 따른 집단성과	54
표 4- 2	위탁영농회사의 시행사업 성격별 회사 수 (1993년 기준)	56
표 4- 3	위탁영농회사의 조직 성격 (25개사, 설립등기시점 기준)	59
표 4- 4	회사별 대표자의 변경 및 실제 참여자수의 변화 (설립시점 기준)	66
표 4- 5	회사별 대표자의 선정 이유 및 변동 현황	68

#### 제 5 장

표 5- 1	지주의 농지 이용방법과 선택	75
표 5- 2	농지 이용방법별 지주와 소작인의 선호 랭킹	78

표 5- 3	파라메타 추정치 .....	80
표 5- 4	농가의 경지규모별 농기계 임작업률 .....	82
표 5- 5	기종별 경영수지 균형규모, 1990 .....	83
표 5- 6	농작업 수탁 관련 요인 .....	85
표 5- 7	위탁영농회사의 임차면적 추이 .....	87
표 5- 8	위탁영농회사의 완전수탁면적 추이 .....	88
표 5- 9	경운작업의 규모 변화 .....	90
표 5-10	정지작업의 규모 변화 .....	91
표 5-11	이앙작업의 규모 변화 .....	92
표 5-12	수확작업의 규모 변화 .....	93
표 5-13	1991~92년 설립 운영회사의 수탁영농형태 .....	94
표 5-14	농한기 소득사업의 내용 .....	95
표 5-15	회사별, 년도별 농한기사업 현황 .....	96

## 제 6 장

표 6- 1	회사별, 년도별 수탁수입과 농한기수입의 현황 .....	100
표 6- 2	회사별, 년도별 수탁수입 내역 .....	102
표 6- 3	연도별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지출규모 .....	104
표 6- 4	회사별, 년도별 참여자 인건비 제외 비용과 총수입에서의 비중 .....	105
표 6- 5	회사별, 년도별 처분가능수익과 참여자의 1인당 예상소득 .....	106
표 6- 6	회사별, 년도별 참여자 인건비와 이윤 .....	107

## 제 7 장

표 7- 1	년도별 위탁영농회사 육성계획 .....	112
표 7- 2	위탁영농회사 설립자격 기준 .....	114
표 7- 3	년도별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계획 .....	116

표 7- 4	시설 설치자금 지원계획(개소당) .....	117
표 7- 5	경영비 및 기타소득사업 지원계획 .....	117
표 7- 6	위탁영농회사 관리보고 내용 .....	122

## 부 표 목 차

부표 1	회사별 대표자의 변화 및 실제 참여자의 변화·····	134
부표 2	회사별, 연령별 분포(1993년말)·····	135
부표 3	회사별, 학력별 분포, 1993·····	136
부표 4	회사별, 영농경력별 분포, 1993·····	137
부표 5	회사별, 농기계운전 경력별 분포, 1993·····	138
부표 6	회사별, 수리능력별 분포, 1993·····	139
부표 7	회사별 인적 구성원의 경력(1993년말 현재)·····	140
부표 8	회사별, 영농규모별 분포, 1993·····	141
부표 9	위탁영농회사의 회사별 기초자산·····	142
부표 10	회사별 부지의 면적과 평가액·····	143
부표 11	회사별 격납고의 보유 현황·····	144
부표 12	회사별 사무실의 보유 현황·····	145
부표 13	회사별 정비실의 보유 현황·····	146
부표 14	회사별 건조장의 보유 현황·····	147
부표 15	회사별 육묘장의 보유 현황·····	148
부표 16	회사별 부대사업시설의 보유 현황·····	149
부표 17	회사별 기타시설의 보유 현황·····	150
부표 18	회사별 트랙터의 보유 현황·····	151
부표 19	회사별 이앙기의 보유 현황·····	152
부표 20	회사별 콤바인의 보유 현황·····	153
부표 21	회사별 건조기의 보유 현황·····	154
부표 22	회사별 방제기의 보유 현황·····	155

부표 23	회사별 차량의 보유 현황	156
부표 24	회사별 트랙터 부속작업기의 보유 현황	157
부표 25	회사별 수리장비의 보유 현황	158
부표 26	회사별 기타장비의 보유 현황	159
부표 27	회사별 부대사업장비의 보유 현황	160
부표 28	회사의 완전위탁 및 임대차 작업면적	161
부표 29	회사의 부분위탁 작업면적	162
부표 30	회사의 완전위탁 및 임대차 작업수수료	163
부표 31	회사의 부분위탁작업수수료	164
부표 32	인근의 부분위탁작업수수료	165
부표 33	회사의 임대차와 완전위탁 및 농한기사업의 수입 현황	166
부표 34	회사의 부분위탁사업의 수입 현황	167
부표 35-1	회사별 대차대조표(1991년 설립회사의 1991년말)	168
부표 35-2	회사별 대차대조표(1991년 설립회사의 1992년말)	169
부표 35-3	회사별 대차대조표(1991년 설립회사의 1993년말)	170
부표 35-4	회사별 대차대조표(1992년 설립회사의 1992년말)	171
부표 35-5	회사별 대차대조표(1992년 설립회사의 1993년말)	172
부표 35-6	회사별 대차대조표(1993년 설립회사의 1993년말)	173
부표 36-1	회사별 손익계산서(1991년 설립회사의 1991년말)	174
부표 36-2	회사별 손익계산서(1991년 설립회사의 1992년말)	175
부표 36-3	회사별 손익계산서(1991년 설립회사의 1993년말)	176
부표 36-4	회사별 손익계산서(1992년 설립회사의 1992년말)	177
부표 36-5	회사별 손익계산서(1992년 설립회사의 1993년말)	178
부표 36-6	회사별 손익계산서(1993년 설립회사의 1993년말)	179
부표 37	회사의 유형구분(1993년 현재)	180
부표 38	회사 유형별 참여자 수, 1993	181
부표 39	회사 유형별 참여자수(합계 1993)	181

부표 40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 1993	182
부표 41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학력별 분포, 1993	183
부표 42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영농경력별 분포, 1993	183
부표 43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농기계운전경력별 분포, 1993	184
부표 44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수리능력별 분포, 1993	184
부표 45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농어민후계자와 영농단 수의 분포, 1993	185
부표 46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영농규모별 분포, 1993	185
부표 47	회사 유형별 기초자산의 현황, 1993	186
부표 48	회사 유형별 기말자산의 현황, 1993	187
부표 49-1	회사 유형별 부지 및 부대시설의 면적과 평가액 (1993년말 현재 소유)	188
부표 49-2	회사 유형별 부지 및 부대시설의 면적과 평가액 (1993년말 현재 임차)	189
부표 50	회사 유형별 농기계의 규격과 대수 및 평가액 (1993년말 현재)	190
부표 51	회사 유형별 임대차와 완전위탁 및 부분위탁 작업 면적, 1993	191
부표 52	회사 유형별 임대차와 완전위탁 및 부분위탁 작업수수료, 1993	192
부표 53	회사 유형별 인근의 부분위탁작업수수료, 1993	193
부표 54	회사 유형별 임대차, 완전위탁, 농한기사업 및 부분위탁 수입, 1993	194
부표 55	회사 유형별 비용 소득 이윤, 1993	195

## 그림 목 차

### 제 4 장

그림 4- 1 갈등의 정도와 조직성과간의 관계 ..... 52

그림 4- 2 위탁영농회사의 출자방법 ..... 61

### 제 7 장

그림 7- 1 보조금 교부 체계도 ..... 119

그림 7- 2 융자금 교부 체계도 ..... 119

# 제 1 장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 농촌에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영농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뉘볼 수 있다. 농지의 임대차, 농기계 보유자에 일부 농작업을 위탁하는 농작업 수·위탁, 경영의 수·위탁이 그것이다. 농지의 임대차는 오랫동안 사회적 정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 금지되어 왔으나 농지임차관리법의 시행과 함께 합법화되었다.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의 수·위탁은 당초 농기계 자체의 손익분기 규모가 일농가의 경영규모를 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도입시부터 나타난 영농형태이다. 최근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수·위탁과 맞물려 일부 농작업 공정이 위탁경영되기도 한다. 수도작에 있어서 가장 흔한 위탁경영 형태는 (육묘+이앙)작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촌에서 이와 같은 영농방법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공급주체가 눈에 띄지 않는 다는데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영농후계자

를 육성한다던가, 농업생산에 관련된 여러 조직들을 구성한다던가, 외부 자본까지도 농지소유 접근을 허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앞의 문제에서 출발한 정책적 대안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 대안 가운데에서 농촌노동력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의 해결과 노동생산성의 증대라는 두가지 효과를 거양시켜줄 수 있는 농업기계화 정책은 어느 정책보다 중점적인 시책이었다. 지금도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이 적지 않다(1994년 7,972억원: 보조 및 융자).

우리나라 농업기계화 정책가운데 자금지원의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모든 구입 농기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보조(1994년 5,192억원 정도)해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정한 영농조직(최근에는 특정인으로 기계화전업농)을 조직하고, 여기에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1994년 2,780억원)하는 경우이다. 농기계를 중심으로 조직한 영농조직은 1972년 기계계를 필두로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영농조직들은 그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 구성원들간에 농기계를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私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에 의해 조직초기에는 유지되지만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현실아래 과거의 조직과 유사한 위탁영농회사를 1991년부터 또다시 조성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농촌과 농업에 대한 자원과 기술적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체(going-concern)로서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작업은 거쳤어야 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위탁영농회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농업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지의 문제<sup>1)</sup> 이전에 정부에 의해 매년 수백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루어 진다는

---

1) 김정호 외(1993), pp. 152~182에는 이러한 변화가 하나의 역사적 단계로 표현되고 있으나 사실 그것의 검증은 없는 것이 아닌가 보인다.

점, 위탁영농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대개가 그지역의 중추적인 기간영농자들 이라는 점, 또한 이들에게 농촌내 노동력 부족 농가나 부재지주가 상당히 의존적이라는 점 등에서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위탁영농회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조금하게 시행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위탁영농회사가 우리 농업을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급격히 성격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시말하면 그것이 우리 농업 전체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영농회사에 거는 기대와 그것의 중요성은 여러곳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조명과 미시적인 경영문제를 분석하여 현실적인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조건에 위탁영농회사의 성격이 맞지 않을 경우 또다른 대안책이 필요한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

일반적으로 집단(Group)<sup>2)</sup>이란 특정한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두사람 이상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위탁영농회사도 어떠한 목적(정부의 정책적 목적이든 또는 구성원들의 별개의 목적이든 불문함)을 이루기 위해 농민 몇몇이 조직한 하나의 집단이다. 이러한 위탁영농회사는 그것이 얼마의 효과를 이루느냐에 앞서 그 집단이 지속적으로 존속하는가 또는 존속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2) Scott, W. Richard, 1964, "Theory of Organization", in 'Handbook of modern Sociology', ed. Robert E.L. Farms, Chicago: Rand McNally and Co. 조직과 동의어로 사용.

위탁영농회사가 계속적인 활동체(going-concern)로서 존속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이 어떤 이유에서 형성되었는가를 분석해보고, 집단조직후 이 형성목적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아야한다. 또한 조직유지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이 나타나고, 그것의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아울러 갈등조정 의 실패현상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효과성 분석이다.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의 경우 소속구성원들의 이익 증대를 형성목적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적어도 개인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보다 집단을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때 보다 유리해야만이 위탁영농회사가 조직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충족하기 위한 위탁영농회사는 여러가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의 육성목적에 알맞은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이 지향하려는 사업영역을 가늠하기 위해서 현재의 사업실태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이전에 이러한 사업들에 위탁영농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필요하다.

위탁영농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기대된 수익이 얻어질 때 아무래도 위탁영농회사의 지속적 활동체로써의 유지가 용이하며 갈등표출도 억제될 수 있다. 즉, 수익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조직유지가 용이하다. 그러나 위탁영농회사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익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위탁영농회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성 분석도 필요한 것이다.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 조직 당시 모든 조직원의 조직참여 목적이 동일한 것이라고 한정하기는 힘들지만 - 위탁영농회사가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지침에 의해 구성되면 이 지침이 조직 초기의 구조적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점차 구성원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행위로 인해, 그리고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요소(법적

요소)는 변화를 촉진시키거나 혹은 억제시킬 수 있다. 위탁영농회사의 조직성격이나 행동패턴의 변화에 제도적 요소는 많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첫째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육성되어 온 위탁영농회사의 현황, 둘째 현재 위탁영농회사의 일반적인 상황, 셋째 위탁영농회사의 조직동기 및 그 과정과 갈등, 그리고 그것의 조정과정, 넷째 위탁영농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실태와 그것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 다섯째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지, 그리고 관련된 법적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분석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현지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1993년도의 연구에 이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1991년과 1992년도에 설립된 회사의 표본은 동일하다. 다만 1993년도에 설립된 회사 7개사가 조사표본에 추가되었다. 따라서 총 표본수는 1991년과 1992년도 설립회사 각각 9개와 1993년도 설립회사 7개사로 25개사이다. 그러나 1991년도와 1992년도에 설립된 각각 2개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최종표본수는 이들을 제외한 21개사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 세술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이용된 특별한 분석방법은 없다. 단지 농지임대차 증대 요인 분석시 요인간에 OLS를 이용하였고, 경영성과 분석시는 가능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려고 하였다.

##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이 연구는 우리 농업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위탁영농회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지속적인 경영주체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위탁영농회사가 다른 경영주객체와 어울려 농업의 생산을 담당해 나가기 때문에 관련된 타 조직체 및 개인과의 비교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단은 다른 농업경영주체와 위탁영농회사는 경쟁관계에 있게될 뿐만 아니라 자칫 현실적 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전혀 기대치 않은 다른 성격의 조직체로 변화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연구자원의 부족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위탁영농회사만을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경영주체에 대한 정밀한 비교·분석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연구범위도 위탁영농회사의 경영문제에만 한정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 5. 보고서의 구성

제2장에서는 위탁영농의 개념, 성격변화, 위탁영농회사의 설립배경 및 의의, 그리고 조직현황이 정리된다. 제3장에서는 피조사 위탁영농회사의 일반개황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위탁영농회사가 어떤 목적 아래, 어떤 과정을 통해 조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그 조직이 유지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직내부의 갈등이 나타날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 등을 구체적 사례형식을 빌어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현재 위탁영농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영역과 그것의 현황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사업영역을 크게 농지 임대차 및 농작업과 농한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결과 나타난 사업의 경영수

지는 제6장에서 분석된다. 제7장에서는 위탁영농회사의 조직과 관리에 관련된 법적인 계약내용을 서술하고, 현실적으로 갈등이 나타나는, 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 8장에서는 위에서 검토·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위탁영농회사의 육성에 참고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 제 2 장

#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의의와 현황

### 1. 위탁영농의 개념 규정

최근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에서 눈에 자주 띄는 용어으로써 경영 수·위탁, 위탁경영, 농작업 수·위탁, 농지 임대차, 위탁영농 등이 있다. 이들 용어들은 물론 각자의 연구내에서 일정한 의미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같은 용어가 연구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연구내에서 같은 용어가 서로 다른 뜻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어도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육성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주요 목적이 농지 임대차와 위탁영농의 확대를 통한 구조개선에 있다면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규정해 놓는 것이 앞으로의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지 임대차란 용어는 과거 자주 사용되던 소작이란 용어를 지양하는 의미에서 대체된,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 규정된 용어로 볼 수 있다. 임대차라는 용어는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 수익케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

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농지임대차관리법 제 2조 3). 농지 임대차를 임대차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의 임대차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성격이 다양하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두가지 형태는 고정지대 임대차(소작)와 분할지대 임대차(소작)이다. 고정지대 임대차는 농지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이용하는 대신, 그로 인한 수입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농지 임대자에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이다. 분할지대 임대차는 임차농지의 이용에 따른 생산물을 일정 비율로 농지 임대자와 농지 임차인간에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량이 없을 경우 농지임차에 따른 임차료(지대, 소작료)는 없다. 농지 임대차의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는 농지 임대차를 매개하는 임대차료는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따른 지대라는 점이다.

위탁영농, 위탁경영, 위탁 농작업간에도 엄격한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따르면 위탁경영이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다(제2조 4). 김정호·김홍배(1990)와 송대희·김진수(199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탁경영을 위탁영농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영농과 위탁경영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탁경영과 비교할 때 위탁영농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탁영농이란 영농을 위탁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서 영농이란 farming으로써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농 수·위탁은 경영 수·위탁과 농작업 수·위탁, 농지 임대차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경영이란 management로써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주체가 생산요소를 선택하고, 이것을 조합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제과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육묘와 이앙작업을 대행해 줄 경우 종자의 선택, 육묘시기, 이앙시기 및 방법 등을 작업 수탁자가 모두 행할 경우 이것은 경영 수·위탁이 된다. 반면 위탁자가 종

자의 종류를 선택하고 육묘와 이앙시기, 그리고 그 방법등도 지정해 주고 단순 작업만을 의뢰할 경우, 이 경우는 농작업 위탁이 된다.

경영의 수·위탁과 농작업의 수·위탁이 농지 임대차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확물의 처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이다. 전자의 경우는 농지 소유자(위탁자)에 있으나 후자는 수탁자에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세가지 성격을 주요 특성별로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한편 위와는 달리 임작업이란 용어가 자주 쓰이기도 한다. 임작업이란 작업 수탁자가 위탁자로 부터 일정한 작업 수수료를 받고 약정한 작업을 수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작업 수·위탁이 바로 임작업이 된다. 내용면에서 농작업의 수·위탁과 임작업은 같은 의미이다. 단지 어떤 작업을 일 개인이 부분적으로 대행할 경우는 대개 임작업이라 하고, 위탁영농회사와 같은 집단(조직)에서 수행하는 경우를 농작업 수·위탁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농협중앙회에서 펴낸 「위탁영농회사 업무편람」(1992)에서는 기간작업 수·위탁, 전작업 수·위탁(작업신탁), 경영 수·위탁, 관리작업 수·위탁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규정이 되어 있는데(p.12), 기간작업이란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관리작업과 비교한 것으로 보아 농기계 이용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경영 수·위탁을 분할지대에 의한 농지임대차와 혼용하고 있는 듯하다.

표 2-1 농작업 수·위탁, 경영 수·위탁, 농지임대차의 성격 구분

구 분	농작업 수·위탁	경영 수·위탁	농지 임대차
경영권 소재	위탁자	수탁자	임차인
생산물 처분권 소재	농지 소유자	농지 소유자	임차인
영농위험 부담자	위탁자	수탁자	임차인(분할계약시 분담)
수수료 성격	작업 내용별 수수	경영 내용별 수수	지대 성격으로 수수
법적 성격	법적 구속력 없음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세부내용이 규정됨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세부내용이 규정됨

다만 작업신탁의 경우 모든작업과 생산자재를 수탁자가 수행, 부담하고(건조 이전까지), 일정수탁요금(신탁수수료)을 수령한다는 것은 현재 농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지만, 하나의 용어로서 사용하는 데는 다른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

부분위탁과 완전위탁이란 용어도 연구자에 따라 한정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안준섭; 1991), 일부연구에서는 그 개념조차 명확치 않다(송대회·김건수; 1991). 부분과 완전위탁이란 용어는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에 대해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것이지만, 이 용어는 각 회사마다, 사용자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당초 완전위탁이란 수도작 농작업 위탁으로써 농기계로 가능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작업을 일괄되게 한 위탁자로부터 수탁될 때를 가르켰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육묘가 빠지거나, 혹은 방제, 건조작업 등이 빠진 상태에서도 완전위탁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완전위탁은 부분위탁보다 수탁자에 여러 가지의 유리성을 가져다 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때 그때 의미를 한정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좋을 것이다.

## 2. 위탁영농과 영농조직

### 2.1. 위탁영농의 성격 변화

앞에서 보듯 위탁영농은 세가지로 세분될 수 있다. 농작업 수·위탁, 경영 수·위탁, 농지 임대차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경영 수·위탁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작업 수·위탁과 농지임대차는 우리 농업이 계절적으로 노동수요량이 크게 차이나는 수도작 위주이며, 왕족과 그 가신들에 의해 농지가 대부분 소유되고, 노동을 경시하는 유교사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여 왔다는 점 등에 의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일제시대 이후 농지임대차(본질적으로 소작과 같음: 김성호 외 4인, 1984. p.140~144)의 성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적 봉건적 토지소유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토지사유제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토지조사 사업일 것이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보유자이며 경작자인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배제하고, 봉건적인 토지소유자를 그대로 토지사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수많은 경작농민들을 소작농민으로 재편성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의 공전(公田)이나 궁 장토(宮 莊土) 등도 국유화되면서 경작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되었다. 특히, 토지조사사업의 경우 신고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자작농이던 농민들도 무지의 탓으로 소작농화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sup>2)</sup>. 1944년에는 총농가구수 가운데에서 순수소작농이 35.1%, 자소작농이 41.1%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작지 면적은 전체의 51.9%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토지로 부터 유리된 농민들은 뚜렷한 대안적 소득기회가 없는 당시 상황 아래에서 높은 소작료에 시달리는 영세농적 소작농이 된 것이다. 그당시 소작료율은 생산량의 90%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한마디로 봉건시대 농노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 것이며, 경제외적 강제가 재현되었다. 이로 인해 소작쟁의 건수는 늘어갈 수밖에 없었다<sup>4)</sup>.

한편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함께 농업에 있어서도 경자유전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게 된다. 미군정에서는 군정청 법령 제9호

1) 토지조사사업에 관련된 법령으로 토지조사령, 조선민사령, 부동산등기령, 부동산증명령 등을 들 수 있다. 이당시 토지조사사업의 주요내용은 토지소유권, 지형, 지목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2) 鈴木武雄, 「朝鮮の經濟」, 1942.

3) 동아일보(1931.4.19)에는 소작료가 생산량의 90%인 경우를 실고 있다.

4) 金錫淡, 李基洋, 金漢周, 「현대 조선사회 경제사」에 의하면 1920년 소작쟁의 건수는 20건 이었으나, 1938년에는 22,596건에 이르고 있음.

(1945.10.5)에 의해 소작인에 대한 보호조치로써 소작료 3·1제(소작료 몫으로 총생산량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및 지주에 의한 일방적 소작계약 해지금지 등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종래의 기생지주제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어서, 농민에게 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었다. 농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지의 구입과 분배를 유상으로 하느냐 혹은 무상으로 하느냐의 논란이 일기 시작한다. 결국 유상 구입, 유상 분배의 원칙아래 미군측의 귀속농지 처리(1948)에서부터 시작하여 1949년 본격적인 농지 개혁이 착수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농지 개혁이 지향한 소작농 제거와 자작농 창설이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당시 분배된 농지면적은 1945년도 총소작지 면적의 39.3%에 불과한 것이다(정영일; 1967)<sup>5)</sup>. 물론 이러한 농지 개혁에 의해 일시적인 소작농의 감소현상은 엿볼 수 있었다. 농지 개혁 이후 한 조사(1960년 농업센서스)에 의하면 또 다시 소작농이 증가하게 되어 자·소(소자)작과 순소작농의 비율이 전체의 26.4%, 소작지 면적 비율은 31.5%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소작농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계비 지출을 위한 농지의 매각과 소작인화였다(반성환; 1958). 그후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노동인구의 유출, 특히 순소작농의 이촌으로 인해 소작지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1965년도 소작지면적은 전체의 16.8%(토지조사연구소 조사), 1975년도에는 14.7%(1975년 간이농업센서스)로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최근에는 반전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소작지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진(1982)의 연구에 의하면 1981년도 소작지면적은 전경지의 22.3%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주류를 이루었던 순소작농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자·소작농이

---

5) 관련된 근본원인은 정영일(1967)의 논문 참조.

증가하고 있다. 순소작농의 감소는 역시 농외취업기회확대에 따른 이촌의 결과로 보인다(오호성: 1979).

소작료의 지급방법도 과거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즉, 농촌내에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소작인에 유리한 소작료 지급방법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전형적인 정률제(타조)에서 정액제(정조)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 진보하면서 생산력이 높아질 때 정률제는 지주에게 유리하고, 정액제는 소작인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eady: 1952). 1963년 고정지대 계약의 형태는 전체의 14.7%였으나<sup>6)</sup> 1976년에는 68.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고정지대 계약에 의한 소작은 소작인에게 생산의 의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소작인의 순수익 분배몫은 당연히 높아진다. 특히, 1970년대 다수확 품종의 도입과 생산력의 증대로 인해 소작인의 분배몫은 더욱 커지고 있다(오호성: 1979, 강창용: 1993). 나아가 고정지대 계약과 고미가정책은 소작농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sup>7)</sup>.

결국 1980년대 이후 농촌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소작인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으며, 지주가 요구하는 지대몫 자체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일제시대 또는 해방후 1960년대 생계와 경제외적 강제에 시달리던 소작인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아울러 부재지주가 많은(장동섭: 1979) 상태에서 농지소작에 관련된 지주의 영향력은 그만큼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는 대부분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해 왔다. 최근 위탁영농회사라는 영농조직이 조성되면서 지주와 집단간에 농지 임대차가 발

6) 농협중앙회, 「농지의 영세구조와 검병현상에 대한 조사보고」, 1964. p.42에 의하면 1963년 정률제 소작료 지급방법은 조사전체의 71.7%였음.

7) 국립농업경제연구소, 「농지제도의 토지정책적 정립방향」, 1978. p.92 참조.

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류는 개인과 개인에 의한 농지 임대차이다.

한편 농작업의 수·위탁은 일시적인 노동력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이전에는 대개 어느 집단과 개인간에 발생되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라 농기계 보유자와 위탁자 개인간에 농작업의 수·위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역우를 이용한 경운·정지작업시 일정 작업면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업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농작업의 위탁이 된다. 또한 마을의 두레와 같은 집단에 일정 면적의 모내기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료를 지급했던 경우도 모두 농작업 위탁이 된다. 1930년대에 걸쳐 나타났던 위탁경작제도도 농작업 수·위탁의 실례가 된다. 위탁경작제도는 수도작에서 나타난 위탁영농의 한 형태로서 경작자는 농작업에 노동을 투하하고, 지주는 토지를 비롯한 생산요소 모두를 부담하며, 생산된 생산물의 일정율을 경작자의 노동보수로 지급하는 제도였다. 일종의 청부경작으로 소작과는 다른 형태이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만을 제공하는 형태이지만 노동제공 농민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으며, 지주는 그만큼 농민(경작자)을 믿을 수 없었던게 아닌가 여겨진다. 특히, 계약기간도 1년 또는 그 이하가 많았으며, 지주의 농작업 방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농작업이 수행되었다. 또한 경작필지별로 책임수확량이 부과되기도 하는 등 그 전근대적 예속관계는 매우 강력하였다<sup>8)</sup>.

고지대 또는 고지제도 역시 청부경작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전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제도가 남아 있다. 고지란 일정한 경작 노동을 청부한다는 의미이다<sup>9)</sup>. 고지는 대개 빈농이나 농업노동자가 임금명목으로 미리 보수를 받고, 다음 영농기에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와

8) 진홍복(1991)의 pp. 8~9 참조.

9) 고지란 용어는 지역에 따라 도급, 매기, 동두레, 자리폼, 선품팔이, 세경, 샳논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었다.

개인이 아닌 단체에 의한 것(고지대), 두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 성행한 고지는 대부분 단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고지의 기원은 대개 겨울이나 춘궁기에 농민이 부농에게 생활미와 금전을 빌려쓰고, 농번기에 그 대가로 노동을 제공한 것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변해서 19세기 경에는 보다 조직화된 단체를 조직하여 개인(부농, 경작노동청부자)과 단체(고지대)간에 노동청부 제도로 변하게 된 것이다<sup>10)</sup>. 1938년 고지에 의해 경작된 면적은 전국 175만정보 가운데 44%가 넘는 약 78만정보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이렇듯 고지가 성행한 이유는 물론 지주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라는 이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직화된 노동인력들은 지주가 뜻하는 바를 충족하지 않는 것이 예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당시 노동투하에 따른 거래비용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이러한 농작업 위탁형태는 대개 농기계가 보급되기 이전에 나타난 것으로써 위탁인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수탁인의 측면에서는 안정적 소득원의 확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위탁인은 대부분 대규모 농지 소유자이며, 수탁인은 소규모 토지 소유자이거나 무토지 소유자가 많았다.

1970년대 이후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농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해 가면서 나타나는 농작업 수·위탁은 과거와는 달리 농기계와 농업노동이 결합된 상태로 작업이 수행된다는 성격을 가진다. 농작업의 수·위탁과정에서 오히려 수탁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토지 소유규모의 크기에 따른 일방적 유형을 나타내지도 않는다. 소규모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도 농작업을 위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경영의 수·위탁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육묘와 이앙

10) 고지를 두가지 형태로 구분한 것은 사후적인 것이며, 어느 형태가 고유한 것이고, 그 기원은 어디에 두는가 의 논의는 윤수중(1990)의 논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11) 조선총독부, 「1938년 농업통계표」, 1940. p. 6.

작업이 결합된 상태에서 수·위탁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농작업 수탁자가 종자 선택, 육묘방법, 이앙시기 등을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것이 부분 경영위탁의 맹아가 아닌가 여겨진다. 나아가 이것은 농작업 수탁자의 편리 증진을 위해, 다시 말하면 교섭력의 증진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 2.2. 위탁영농 수행조직의 변화

위탁영농은 수도작에만 한정한다해도 수·위탁자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개인과 개인간에 나타나는 경우와 개인과 집단간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개인 위탁자가 개인 수탁자에 위탁영농하는 경우는 임대차의 경우가 지배적이다. 개인과 집단간에 발생하는 위탁영농은 농작업의 수·위탁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에 의한 농지의 임대차이다. 집단에 의한 농작업수 위탁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 수도작의 경우 노동수요가 계절적이고 집중적이어서 어느 집단화된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다수에 의한 노동력을 농기계 한대로 대체하면서부터는 개인들에 의한 농작업 수·위탁이 많다.

위탁영농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는 과거의 두레, 고지대, 작업반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두레는 우리 농촌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공동작업 집단으로서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농업생산 과정인 모내기, 김매기, 수확작업 등을 수행한 두레는 자연부락 단위로 20~30명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두레는 신분분화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적 평등적 조직이었으나, 그후 평민층과 농업생산층만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일제시대는 작업 내용이나 형태도 여러가지로 변하게 된다(신용하;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레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 지주나 부농, 일반농가의 농작업을 수탁하여 수행해 온 중요한 하나의 조직이었다. 즉, 가

장 오래된 수탁작업 조직인 것이다. 이러한 두레는 일제시대를 통해 쇠퇴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촌락내 계층분화, 촌락공유지의 사유화와 화폐경제 투입에 따른 임금노동의 발생, 경지규모의 불균등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두레는 일부 고지대로 변화되기도 하였으며 나머지는 소멸하게 되었다.

고지대는 고지(청부경작제도)를 수행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고지대의 구성원은 평균적으로 4~5명에서 20여명 전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지대의 성원들은 대개 자연부락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영세소농과 일용노동자 또는 빈농이 주류를 이룬다. 이 조직 역시 두레와 같이 다양하지는 않으나 내부조직이 짜여 있었다<sup>12)</sup>. 고지대의 고지수수료는 면적당 계산되어 수취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로 다르게 지급되었다. 고지수수료는 대부분 작업계약과 함께 지급되기 시작하지만 전부 지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고지대는 1930년대 후반 이후 점차 사라졌으나 해방 이후까지도 일부는 영유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1941년부터 조직된 농촌의 공동작업반도 하나의 위탁영농 집단이다. 이 조직이 구성된 이유는 강제징용이나 노동징발로 농촌내 가용노동력이 줄어들고,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는데 있었다. 남자, 여자, 아동, 학생 생도작업반 등 여러 형태를 띤 이 작업반은 부락당 3~4개, 1개 반당 20여명 내외였으며, 조직초기에 벌써 24만여개가 전국에 조직되었다. 공동작업반은 투입노동력과 경작면적을 초과한 노동력을 투입했을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보수를 받았으며, 부족시는 부족분을 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은 1960~70년대에 걸쳐 우리 농촌에도 잔존하고 있었다. 물론 이 당시 작업반은 자발적인

---

12) 고지대의 대표는 고지두목, 통수, 고지모개비, 도고지, 수고지, 총대, 좌상 등으로 불리웠으며, 그 구성원은 고지꾼, 품팔이, 고지작인, 도급인 등으로 불리웠다.

것으로서 이양시기에 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농기계가 보급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 공동이용조직이 정책적으로 지원되면서 농기계 중심의 집단에 의해 위탁영농이 시작되었다. 실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의 목적에는 위탁영농이 배제되어 왔으나, 대부분 농작업의 수·위탁을 하고 있었다. 1970년대 이래 농기계를 중심으로 한 위탁영농집단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에 의해 조직된 것들이다. 이들 조직들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표 2-2).

농기계 이용조직이 구체화되어 최초로 시행된 정책사업은 기계계로서 이것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온 홍농계와 같은 농민조직을 모태로 한 것이다. 기계계의 설치목적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의 합리적 이용에 있었으며, 경지정리가 잘 된 벼 집단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10~15ha규모로 조성된 기계계는 1972년 1,012개소만을 조성하고 이후 중단되었다.

영농기계은행은 충남도 자체적으로 서독과 일본의 농기계은행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500ha 이상 평야지 영농을 협동단지화하기 위해 검토된 것이다. 1975~77년 사이에 조성된 영농기계은행은 10여개소였으며, 대형농기계위주로 조성되었다.

표 2-2 농기계 공동이용조직형태

조직 형태	조직 주체	운영 주체	조직 명
농민중심의 공동이용	농민	농민	1972 기계계 1981 기계화영농단 1991 위탁영농회사
농업단체중심의 공동이용	농조, 단협	농조, 단협	1975~79 영농기계은행 1977~81 영농기계화센터
농업단체중심의 시범지역설치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업진흥공사	농민, 농협 또는 기업농, 농진공	1977~79 철원지구종합기계화 1978~81 종합농업기계화시범단지

영농기계화센터는 1977~81년 5개년동안 전국에 총 510개 조성된 것으로, 운영주체는 농협(382개), 마을단위농민(70개), 농지개량조합(58개)이다.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는 대단위 평야지에서 시범성격이 강한 조직체로써 조성되었다. 1978~80년에 걸쳐 총7개소가 조성되었는데, 1개소당 300ha 정도로써 대규모화된 것이 특징이다. 기계화영농단은 1981년 612개소를 조성한 이래 1993년말 현재 43,185개를 조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영농조직 가운데 농업단체 중심의 시범사업이나 공동이용조직은 나름대로의 운영원칙을 세워 수탁농작업과 시범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지속적인 운영체로 남아 있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보다 농민의 자발적 조직-물론 정책적 지원이 뒤따랐지만-인 기계계나 기계화 영농단은 실질적으로 집단으로의 역할, 즉 위탁영농-당초부터 공동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성원 모두의 면적을 상회하는 농기계의 부담면적은 공동이용의 의미가 없는 것이었지만 -을 수행해 나가는 데 그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조성시 의도적 자발적 집단이 조성후 개인별 분산이라는 과정을 대부분 겪게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조직들에 의한 위탁영농의 수행은 농기계의 소유와 관리의 분리에 따른 비용의 과다 발생, 비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에 따른 경영효율 저하, 관련기관의 체계적 지속적 지원책 미비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강창용·이성호, 1990).

### 3. 위탁영농회사 설립의 의의

#### 3.1.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배경

앞에서 보듯 지금까지 조직되었던 위탁영농조직들은 대부분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는 또 다른 영농집단으로서 위탁영농회사가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규모나 보조지원 규모가 어느것보다 크다는 면과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통해 조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농업기계화의 전제조건인 영농규모의 확대가 영세소농인 가족농하에서 매우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또 다른 배경은 위탁영농회사의 기본 육성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발전특별법에 명시된 위탁영농회사 육성의 기본목적-이 다음에 자세히 설명됨 -을 살펴봐도 뚜렷한 현실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 다만 농업경영주체<sup>13)</sup>를 개별적 농가(가족농)와 이들 몇몇이 모여 조직한 집단(조직)으로 구분할 경우 우리 나라 농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족농의 한계를 집단(경영)이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적인 위탁영농조직으로서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하게 된 이론적 현실적 배경을 몇몇 연구<sup>14)</sup>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의 경제성을 이룰수 있다는 전제이다. 가족농에 의한 수탁영농보다는 위탁영농회사와 같은 집단이 대규모 수탁영농을 수행하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는 발휘되어 위탁농가는 보다 저렴한 위탁영농비를 지불하고, 위탁영농회사 참여자는 개별시보다 더 많은 노임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는 농업노동력이 노령화·부녀화되

13) 최근 농업경영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기본적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물론 일본의 신농정에서는 기간농가나 중핵농가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경영체란 용어가 등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주체란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한것 같다. 따라서 굳이 경영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겠다.

14) 김정호, 김홍배(1990), 김병택외(1992), 안준섭(1989), 정두철(1994), 주중환(1985)의 연구 참조.

고 있으며, 비록 농업의 기계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성수기의 작업인 이앙과 수확시기에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작업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논리다.

세번째 대형농기계의 보급과 함께 이것을 이용한 일관된 기계화체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가족농의 경제 경영범위를 넘기 십상이라는 면이다. 농촌내에서는 연속작업을 의뢰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가족농이 여기에 필요한 모든 농기계를 가지고 수탁영농에 대응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논리이다.

네번째 겸업농의 증가와 비수도작부분-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 -의 전문화로 인해 수도작의 농작업을 부분적으로 대행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요약컨대, 현재 농촌에는 위탁영농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고, 이것을 수행하는 데 하나의 가족농보다 이들의 결합체인 집단(조직)이 유리하며, 이를 통해 구조개선(규모의 경제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실과 논리가 일관되게 검증되지 않고 있다. 물론 단편적인 연구가 없지 않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위탁영농에 있어서 영농조직이 가족농보다 유리하다는 명제는 더욱 그렇다.

### 3.2. 위탁영농회사의 의의

앞에서 살펴보듯이 지금까지의 농기계 관련 조직은 대부분 법인성격이 아닌 순수한 협동체의 성격이었다. 조직의 구성시 정부의 일정지침이 주어지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거나 참여자의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1991년부터 위탁영농회사라는 법인성격의 조직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개방농정의 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는 점과 위탁영농회사가 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기업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조직체와 다르다. 보다 구체적인 설립 이유를 당

표 2-3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영농단의 비교

구 분	영 농 조 합 법 인	위 탁 영 농 회 사	기 계 화 영 농 단
성 격 (법인격)	○ 영세소농의 공동영농조직 (조합)	○ 전문적인 영농대행조직 (회사)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법적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좌동	○ 농업기계화 촉진법
설립개시년도	1992년	1991년	1981
설립자의 자격	○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민 ○ 10,000평방미터미만의 농지소유자 또는 별표*에서정하는 규모이하의 가족사육자 ○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결한 시 군에 거주하는자	○ 회사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 는 농민 ○ 농지개량조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 단체	○ 일반농민 (1994년은 작목반, 영농 조합법인)
설립절차	○ 정관작성(희망농민 5명이상) ○ 창립총회, 정관의결 ○ 설립등기 ○ 설립통지(30일내 시군에 통지)	○ 회사설립법기(일반회사와 동일) ○ 정관작성 ○ 설립등기 ○ 설립통지(30일내 시군에 통지)	○ 일정조성면적과 회원이 있으면 가능 ○ 농기계 공동이용규약 작 성
구 역 (정관예)	○ 리동, 읍면, 시군 (연접시군 포함)중에서 선택	○ 시·군 일원	○ 규정없음
사 업	○ 농수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또 는 운영 ○ 농작업 대행 ○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 으로 정하는 사업	○ 위탁에 의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 농기계 및 장비의 임대와 수리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 ○ 기타 농가의 영농이용 절감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순수 농기계 공동이용
출 자	○ 출자종류 : 현금 현물 ○ 현금출자는 농지출자시만 가능	○ 출자종류: 현금·현물 ○ 제한없음.	○ 없음
농지소유	○ 농지소유 가능	○ 농지소유 규정 없음	○ 제한 없음

주: 별표\*내용: 소와 말은 각 30두, 젃소와 사슴 각 20두, 돼지 200두, 면양 산양 300두, 토끼·친칠라·밍크·여우 5천  
두, 닭 오리 메추리 1만수, 꿀벌 150군 이하이며, 성숙기준, 다만 육성우의 경우 2두를 1두로 봄.

자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1994년도 농업기계화사업 시행요령」 등으로부터 발췌, 요약.

시 설립목적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4. 7 법률 제4228호) 제7조에 명기되어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육성에 관한 내용의 첫째는 농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은 농업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의 편의와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탁영농회사의 주요 업무는 농업경영이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영농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1993 위탁영농회사 육성지원 요령」(농림수산부, 1992. 12. 23)과 「1994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시행요령」(농림수산부, 1994. 1)에 따르더라도 위탁영농회사의 궁극적 육성목적은 일손 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과 농촌노동력 부족의 해소, 농기계 이용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 노동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의 도모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의 임대차나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있어 순수 농작업 대행만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구조 개선이란 것을 단순히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규모 확대로서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보다 긍정적인 농업구조 개선수단으로서 농지 임대차나 농지소유 확대가 사업영역에서 배제된 것이다.

한편 농발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약어)내에서 위탁영농회사와 함께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오히려 후자는 전자에 비해 사업 가능 영역이 넓고, 근본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즉, 농민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탁영농회사와 달리 농지 소유도 허용하고 있다.

위탁영농회사를 198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계화영농단과 비교해보면 설립조건이나 설립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아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오히려 위탁영농회사가 불리하게 될 수 있다. 기계화영농단은 모든 조건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규정되어 있어 농촌에서 위탁영농회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4. 위탁영농회사의 조직 현황

### 4.1.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현황<sup>15)</sup>

1991년 최초로 16개 위탁영농회사를 조성해 온 이래 1993년까지 전국에는 493개소가 설립되었다. 정부의 지원에 의해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는 국고 보조에 의한 회사가 409개, 지방비 보조에 의한 회사 18개소, 그리고 농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66개소이다(표 2-4).

회사 형태별로 보면 합명회사가 146개소, 합자회사가 132개소, 유한회사 125개소, 주식회사 90개소이다. 조성 초기에는 주식회사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다른 형태에 비해 구성원에 불이익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회자되면서 합명회사형태가 많아지고 있다(표 2-5).

지역별로 보면 대단위 평야지가 많은 전라남·북도과 경상남·북도에 많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전라남·북도는 상대적으로 경상남·북도에 비해 조직 회사수가 적다. 이러한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위탁영농회사의 보조 가운데 50%를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 지역의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아 보조 지원금을 마련할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위탁영농회사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대개가 중·대형이다. 1개 회사당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구입대수는 약 2대이며, 건조기는 1.2대 꼴이다(표 2-6).

---

15) 위탁영농회사의 설립방법 및 관련제도적 사항은 뒤의 한장에서 증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설립현황만을 검토한다.

표 2-4 시도별 위탁영농회사 설립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국 고 보 조				지 방 비 보 조				자 율 설 립				계
	91	92	93	계	91	92	93	계	91	92	93	계	
경기	2	16	29	47	-	2	1	3	-	-	1	1	51
강원	1	14	14	29	-	-	-	-	-	-	-	-	29
충북	2	8	22	32	-	-	-	-	-	1	1	2	34
충남	2	13	35	50	-	-	-	-	5	8	17	30	80
전북	2	11	31	44	-	5	1	6	2	2	4	8	58
전남	2	19	42	63	3	5	-	8	-	-	-	-	71
경북	2	22	59	83	-	1	-	1	5	-	-	5	89
경남	2	17	38	57	-	-	-	-	3	-	15	18	75
제주	1	1	2	4	-	-	-	-	-	1	-	1	5
부산	-	-	-	-	-	-	-	-	1	-	-	1	1
계	16	121	272	409	3	13	2	18	16	12	38	66	493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4.

## 4.2. 위탁영농회사 조직자금 지원 현황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크게 농기계 구입자금, 시설 설치 자금, 경영비의 비목으로 지원된다. 1991년 이래 이러한 용도의 지원자금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오는 추세이다. 1991~93년 사이 농기계 구입

표 2-5 회사 형태별 위탁영농회사 설립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국 고 보 조				지 방 비 보 조				자 율 설 립				계
	91	92	93	계	91	92	93	계	91	92	93	계	
합자	1	29	62	92	-	-	-	-	4	7	29	40	132
합명	5	37	89	131	-	4	1	5	8	-	2	10	146
유한	4	29	74	107	2	6	-	8	2	3	5	10	125
주식	6	26	47	79	1	3	1	5	2	2	2	6	90
계	16	121	272	409	3	13	2	18	16	12	38	66	493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4.

표 2-6 위탁영농회사 지원 농기계 대수

단위: 대

구 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방제기	기 타	계
1991	39	39	33	19	10	8	140
1992	254	254	237	146	90	60	1,022
1993	498	498	535	324	73	222	2,175
계	789	791	805	489	173	290	3,337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4.

지원자금 규모는 위탁영농회사원들의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약 412억원이며, 이 가운데 정책지원자금(보조+융자)은 약 352억원이다. 이를 위탁영농회사 1개사당 평균규모로 보면 약 1억원이다(표 2-7, 표 2-8).

이러한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자금규모를 기계화영농단이나 기계화전업농에 비교해 볼 때 그다지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간에는 조직 구성원 수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을 고려한다면 1인당 혜택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자금 지원만을 두고 볼 때 어느 부문에 대한 강력한 지원의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보관을 위해 혹은 농한기사업 및 자체 경영비 충당을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 이외에도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표 2-7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개소당, 1993)

단위: 천원

구 분	총 액	자 금 종 류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위탁영농회사	95,220	23,805	23,805	38,088	9,522	
기계화 영농단	대규모	56,490	14,122.5	14,122.5	22,596	5,649
	소규모	18,830	4,707.5	4,707.5	7,532	1,883
기계화 전업농	22,380	3,357	3,357	13,428	2,238	

자료: 농림수산부.

표 2-8 위탁영농회사 육성사업비 지원 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지 원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1991	16	270	295	708	253	1,526
1992	121	2,494	2,494	4,466	2,185	11,639
1993	272	6,153	6,153	12,199	3,578	28,083
계	409	8,917	8,942	17,373	6,016	41,248

주: 93사업비 지원액은 잠정 집계치임.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4.

하고 있다(표 2-9). 1개 회사당 용자지원 한도액은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 수리시설비 33백만원, 기타 소득사업 시설비 2억원, 경영비 20백만원까지이다. 여기에서 시설 설치자금은 전체 소요액의 80% 이내로 지원하며, 기타 소득사업 시설비 지원은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 수리시설을 우선 지원한 후 예산의 잔액 범위내에서 개소당 2억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표 2-9 위탁영농회사 시설 설치자금 및 경영비 용자 지원, 1994

단위: 개, 억원,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용자지원액	개소당 용자지원 한도	용자상환기간	용자금리
시설설치자금	300	100억원	백만원	3~7년	5%
-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33		
- 기타 소득사업 시설			200		
경 영 비	750	150	20	1년	5%

## 제 3 장

# 조사대상 위탁영농회사의 일반개황 분석

### 1. 조사 개황

위탁영농회사의 조직과정과 구성원들의 변화, 사업 실태 및 그것의 운영수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표를 이용한 현지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기준시점은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초기와 1991, 92, 93년도 말이다. 현지조사는 2개년도에 걸쳐 시행되었다. 먼저 1991년과 1992년도의 자료를 수집키 위해서는 1993년 1~4월에 걸쳐 현지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1993년도 자료 수집기간은 1994년 1~4월 이었다.

1991년과 1994년에 걸쳐 조사대상이 된 위탁영농회사는 총 25개사였다. 이 가운데 1991년도와 1992년도에 설립된 회사는 각각 9개사, 1993년도 설립회사는 7개사이다. 1992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분류된 Gd, Dj, Ma, Sh 위탁영농회사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1991년에 설립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1992년도부터 이루어 지고 있었다(표 3-1). 따라서 사업실태나 경영수지분석시 1992년도 설립회사로 분류하였다.

1993년도 현지조사시 조사가 가능했던 Kp, Hc, Gd, Sh 위탁영

농회사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1994년에는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 4개사는 위탁영농회사의 조직과정과 성격분석이 외의 분석에서는 조사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3-1 1991~93년도 조사대상 위탁영농회사 일람표

설립년도	회사명	지 대			회 사 형 태				농한기사업		비 고
		평야	중간	산간	합명	합자	유한	주식	유	무	
1991	Kp*	0					0			×	
	Cs		0			0			0		
	Is	0			0				0		
	Jus	0			0				△		
	Jos	0					0		△		
	Dp	0			0					×	
	Dd		0					0	△		
	My		0					0	△		
1992	Hc*	0			0					×	
	Di	0						0	0		
	Kd*	0			0					×	1991. 12. 설립
	Yd	0					0			×	
	Dj	0				0				×	1991. 12. 설립
	Ma			0				0	△		1991. 8. 설립
	Mg			0		0			0		
	Sh*			0		0				×	1991. 7. 설립
1993	Sy			0			0		0		
	Md			0	0					×	
	Pt			0			0		0		
	Di			0				0		×	
	Ss		0			0				×	
	Id	0				0				×	
	Bg			0	0					×	
1993	Hj		0		0					×	
	Wh		0				0			×	
총 조사대상 합계		11	6	8	8	6	5	5	11	14	
분석대상 합계		(8)	(6)	(7)	(6)	(5)	(5)	(5)	(11)	(10)	

주: \*는 지속적 조사가 불가능하여 1993년도 분석에서 제외된 회사임. 농한기사업에서 △는 고소득 작물생산임.

따라서 실질적으로 위탁영농회사의 사업실패 및 경영수지 분석시 대상이 된 조사대상 위탁영농회사의 수는 총 21개소이다. 이 가운데 1991년도에 설립된 회사는 7개, 1992년에는 7개, 1993년에는 7개이다. 이것을 지대별로 분류하면 평야지 8개, 중간지 6개, 산간지 7개이다. 회사 형태별로 보면 합명이 6개사이며, 주식과 합자, 유한회사 형태가 공히 5개사이다.

조사대상 위탁영농회사 가운데 농한기사업<sup>1)</sup>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총 11개사, 52.4%이다. 이들 가운데 회사 설립 후 1년 이내에 농한기사업을 경영에 도입한 회사가 6개사, 28.6%나 된다. 또한 향후 농한기 소득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추가하려는 회사는 14개사로서 66.7%를 넘고 있다.

## 2. 인적 구성

위탁영농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수는 1개 회사당 평균 4.0명(실제참여자기준)이다. 설립 년도별 참여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표 3-2)에서와 같이 초창기 1991년에 설립된 위탁영농회사 1개사당 설립 참여자 수는 7.7명에서 1992년, 1993년에는 각각 5.6명, 4.3명으로 적어지고 있다. 1992년도 설립된 회사도 초창기 5.7명에서, 1993년 말 현재 3.3명으로 줄어들었다.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된 후 조직 구성원들의 이탈과 신규영입 등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엿보인다.

먼저 1991년도에 Jos된 8개사 모두는 1993년 말까지 조직 구성원의 변화를 한번 이상씩 겪었으며, 1992년 설립회사 가운데는 Md과 Mg를 제외한 5개사에서조차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3년도에 설립된

---

1) 여기에서 농한기라 함은 수도작의 농작업 대행, 수도작의 임대차를 제외한 소득획득활동을 말한다. 자세한 농한기사업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취급한다.

표 3-2 위탁영농회사의 평균 참여자지 수

단위: 명/1개사

구	분	설 립 자	형식상참여자	탈 퇴 자	신규참여자	실제참여자
1991년 설립	1991	7.7	0.3	1.0	0.1	6.6
	1992	-	-	2.7	1.7	5.6
	1993	-	-	1.9	0.6	4.3
1992년 설립	1992	5.7	0.1	1.7	0.1	4.0
	1993	-	-	0.9	0.1	3.3
1993년 설립		5.1	0.1	0.6	0.1	4.6
평 균		6.2	0.2	1.5	0.4	4.0

주: 형식상 참여자란 실제 회사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법적, 규정상 등록만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킴.

회사 가운데에서는 7개중 2개회사가 1년도 지나지 않아 구성원이 뒤바뀌고 있다. 이러한 조정과정의 결과 위탁영농회사의 구성원 수는 1개사당 6.2명에서 1993년말에는 4.0(형식적 참여자 포함시 4.2명)명으로 줄어들었다(표 3-2). 이 가운데 가장 극심한 인적 변동을 겪은 회사로서 초창기 15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다.

위탁영농회사 참여자들의 연령별, 학력별 특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이라는 것이다. 21개 위탁영농회사 참여자 총 85명 가운데 가장 영농의욕과 능력이 왕성하다고 볼 수 있는 25~44세의 참여자 수는 81명, 95.0%를 차지하고 있다(표 3-3). 이는 농림어업취업자 전체 가운데 이들 연령에 해당하는 비율 25.8%(1992년도)에 비하여 매우 젊은 층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면에서도 모두가 중졸 이상일뿐만 아니라 고졸 이상이 70명, 82.0%로서 전국 농업경영주의 학력보다 월등하게 높다.<sup>2)</sup>

2) 1990년 농업경영주의 학력 비율은 무학 22.6%, 국민학교 48.5%, 중학교 15.8%, 고등학교 11.2%, 전문대학 0.5%, 대학 이상 1.4%이다(농림수산부, 「농업총조사」, 1990).

표 3-3 위탁영농회사 참여자들의 연령별, 학력별 분포

단위: 명/1개사

구	분	1991년 설립	1992년 설립	1993년 설립	평 균
연령별 분포	~24세 이하	0.0	0.0	0.3	0.1
	~29세	0.1	0.9	0.1	0.4
	~34세	1.9	0.9	1.4	1.4
	~39세	1.9	1.3	1.6	1.6
	~44세	0.4	0.3	0.6	0.4
	~49세	0.0	0.0	0.1	0.0
	50세 이상	0.0	0.0	0.4	0.1
	계	4.3	3.3	4.6	4.0
학력별 분포	국 졸	0.0	0.0	0.0	0.0
	중 졸	1.1	0.3	0.7	0.7
	고 졸	3.0	2.3	3.9	3.0
	전문대졸	0.0	0.7	0.0	0.2
	대졸 이상	0.1	0.0	0.0	0.0
	계	4.3	3.3	4.6	4.0

그런데 근년에 올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연령이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위탁영농회사 육성초기에는 보다 영농의욕이 강한 젊은 층의 농민들이 모여 먼저 회사를 조직하고, 그런 다음 비교적 연령이 높은 장년층의 농민들이 위탁영농회사의 추가조직에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농경력은 대개 5~15년 사이가 많다. 농기계를 운전해 온 경력 역시 비슷하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종사하기 시작한 초반부터 농기계를 이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농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많은 만큼 수리능력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표 3-4).

표 3-4 위탁영농회사 참여자들의 영농경력별, 농기계이용경력별, 수리능력별 분포  
단위: 명/개사

구 분		1991년 설립	1992년 설립	1993년 설립	평 균
영농경력별	~4년	0.1	0.1	0.4	0.2
	~9년	0.9	1.1	0.7	0.9
	~14년	2.9	1.3	1.0	1.7
	~19년	0.3	0.7	2.0	1.0
	20년 이상	0.1	0.0	0.4	0.2
	계	4.3	3.3	4.6	4.0
농기계 운전경력별	~4년	0.4	0.4	1.0	0.6
	~9년	0.7	1.4	0.7	1.0
	~14년	2.9	1.1	1.0	1.7
	~19년	0.1	0.3	1.6	0.7
	20년 이상	0.1	0.0	0.3	0.1
	계	4.3	3.3	4.6	4.0
수리능력별	숙달	1.6	1.1	1.3	1.3
	보통	1.9	2.1	2.4	2.1
	미숙	1.1	0.0	0.9	0.6
	계	4.3	3.3	4.6	4.0

현재 위탁영농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의 대다수는 우리 농업을 오랫동안 이끌어 갈 기간농들이며, 이들 대부분 과거에 4-H, 농어민 후계자, 이장, 기계화 영농단원 등을 역임한 사실이 있다. 조사된 위탁영농회사의 전체 참여자 수 85명 가운데 적어도 농어민후계자이거나 기계화영농단원 출신은 64명, 75.0%에 이르고 있다. 1개 위탁영농회사당 실제참여자 4명 가운데 3.1명이 적어도 기계화영농단원 출신이거나 농어민후계자 출신이다(표 3-5).

위탁영농회사 구성원들의 1인당 경영규모는 1ha 이상이 약 70명, 82.0%로써 비교적 대규모이다. 4ha 이상인 경우도 7명이나 된다(표 3-6).

표 3-5 참여자들중 농어민후계자와 영농단원의 수, 1993

단위: 명/개사

구 분	농어민후계자	기계화영농단원	후계자 및 영농단원	회사참여자수
1991년 설립	1.4	0.3	1.0	4.3
1992년 설립	0.4	1.1	1.0	3.3
1993년 설립	0.6	2.4	0.9	4.6
계	0.8	1.3	1.0	4.0

표 3-6 참여자들의 영농규모 분포

단위: 명/개사

구 분	1,000평이하	-3,000평	-6,000평	-9,000평	-12,000평	12,000평이상	계
1991년 설립	0.0	0.7	1.9	1.1	0.3	0.3	4.3
1992년 설립	0.6	0.3	1.4	0.4	0.3	0.3	3.3
1993년 설립	0.3	0.3	1.7	1.9	0.0	0.4	4.6
계	0.3	0.4	1.7	1.1	0.2	0.3	4.0

이상에서 검토된 위탁영농회사의 인적 구성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탁영농회사의 구성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두번째 위탁영농회사의 구성원들은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학력수준도 높다. 세번째 구성원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농들이며, 경영규모도 일반농가보다 크다.

### 3. 보유자산 현황

#### 3.1. 기초자산규모

위탁영농회사를 조직할 때 확보된 기초자산 규모를 설립 년도별로 보면 (표 3-7)에서와 같이 1개 회사당 약 213.4백만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역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자금인 보조금과 융자지원금으로 전

체의 51.1%인 109.1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출자와 부채가 각각 70.0백만원, 34.2백만원으로 각각 32.8%, 16.1%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년도에 따른 기초자산 규모를 보면 1993년도에 설립된 위탁영농회사의 기초자산은 192.6백만원으로 1991년과 1992년에 설립된 회사의 그것에 비해 매우 적어졌다. 1991년과 1992년에 설립된 회사의 자산규모가 큰 것은 육성 초기에 위탁영농회사를 조직한 농민들의 과욕, 정확한 사업규모 예측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채를 끌어들이거나 보유현물을 회사에 과다출자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과도한 부채나 출자는 결국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후발 위탁영농회사 참여자들이 상당히 감지한 결과, 그에 대처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1993년에 조성된 위탁영농회사의 1개사당 부채는 5.7백만원으로, 1991년과 1992년에 조성된 위탁영농회사의 1개사당 평균부채 48.0백만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이는 후발 위탁영농회사들이 부채를 지지 않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표 3-7 위탁영농회사의 기초자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1991년 설립	1992년 설립	1993년 설립	평 균
출 자	현금	38,636	48,638	49,422	45,565
	현물	23,824	20,729	28,834	24,463
	계	62,460	69,367	78,256	70,028
보 조	보조금	25,216	48,499	39,697	37,804
농 협 용 자	농기계용자	39,265	35,508	35,148	36,640
	시설용자	14,714	22,139	19,457	18,770
	운영자금	12,000	21,429	14,286	15,905
	계	65,979	79,076	68,891	71,315
부 채	금융기관	15,000	39,571	2,143	18,905
	사채	34,286	8,157	3,571	15,338
	계	49,286	47,729	5,714	34,243
합	계	202,940	244,670	192,558	213,389

### 3.2. 보유 부지 및 시설

위탁영농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는 두가지 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하나는 위탁영농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를 통해서이다. 조사대상이 된 위탁영농회사의 1개사당 1993년 말 총 보유 부지는 831평이며, 이 가운데 소유면적은 495평, 임차면적은 336평이다. 소유부지면적의 가액은 20.6백만원이며, 임차지에 대한 임차료는 0.3백만원으로 총 20.9백만원이 부지구입에 투입되고 있었다. 위탁영농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의 크기를 보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소유규모의 크기가 괄목할 만하다(표 3-8).

한편 위와 같은 부지소유규모의 확대는 대부분 농지의 전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위탁영농회사의 운영목적은 달성키 위한 농지 전용이 용이할뿐만 아니라, 전용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도 적지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 위탁영농회사 21개사 가운데 부지를 확보한 회사는 10개사이고, 이 가운데 부지 확보를 위해 농지를 전용한 회사는 9개사이다. 1994년에 추가로 1개사(Mg)에서도 농지를 전용하였다. 그러나 회사 대표자의 토지를 전용한 경우를 포함하면 13개 위탁영농회사에서 농지를 전용하였다. 그리고 조직 초기의 보유 부지를 확대한 회사는 Dd과 My위탁영농회사이다. 위탁영농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규모는 1개사당 495평으로, 이 가운데 농지 전용에 의한 것은 364평(73.5%)이다(표 3-9).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과 관련된 시설로써 농기계 보관창고와 수리실, 육묘장, 건조장 등이 있다. 농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소위 농한기 사업에 주로 소요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정미소, 퇴비사, 직판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앞의 부지와 같이 위탁영농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남에게 빌려쓰는 경우도 있다.

표 3-8 위탁영농회사의 부지 보유 현황(누계)

단위: 평, 천원

구 분		소 유			임 차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년 설립	평 수	117	256	367	386	455	542
	구입액	10,114	17,728	24,231	429	429	533
1992년 설립	평 수	-	893	893	-	256	256
	구입액	-	24,429	24,429	-	9	9
1993년 설립	평 수	-	-	226	-	-	211
	구입액	-	-	13,247	-	-	383
년도별 평균	평 수	117	574	495	386	355	336
	구입액	10,114	21,078	20,636	429	219	271

주: 임차에서 평가액은 임차료임.

표 3-9 회사별 농지 전용 실태

년도	회사명	부지소유		농지전용		농 지 전 용 규 모		비 고
		유 무	유 무	1991	1992	1993	계	
1991년 설립	Cs	0	0	-	-	654	654	
	Is	0	0	520	-	-	520	
	Jus	0	0	150	-	-	150	
	Jos	0	×	(150)	-	-	(150)	S市에 대지를 구입함
	Dp	×	×	-	-	-	-	
	Dd	×	×	-	-	-	-	대표자농지전용후회사임차(1,084평)
	My	0	0	-	969	127	1,096	
계*	0:5, ×:2	0:4, ×:3	117	138	112	367		
1992년 설립	Dl	×	×	-	-	-	-	대표자농지전용후회사임차(900평)
	Yd	×	×	-	-	-	-	대표자농지전용후무료임차(450평)
	Md	×	×	-	-	-	-	
	Sy	0	0	-	1,001	-	1,001	전체소유규모(1,201평)
	Dj	0	0	-	2,050	-	2,050	전체소유규모(3,650평)
	Ma	0	0	-	450	-	450	전체소유규모(1,400평)
	Mg	×	×	-	-	-	-	'94년 485평 전용
계	0:3, ×:4	0:3, ×:4	-	500	-	500		
1993년 설립	Pt	0	0	-	-	683	683	
	Di	×	×	-	-	-	-	
	Ss	×	×	-	-	-	-	설립자농지전용후무료임차(200평)
	Id	×	×	-	-	-	-	
	Bg	×	×	-	-	-	-	
	Hj	×	×	-	-	-	-	
	Wh	0	0	-	-	900	900	
계	0:2, ×:5	0:2, ×:5	-	-	226	226		
총 계	0:10, ×:11	0:9, ×:12	117	319	16	364		

주: \*계에는 ( )숫자 제외함.

표 3-10 위탁영농회사의 부대시설 보유 현황

단위: 평, 천원

구 분			소 유			임 차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농 작 업 관 련	1991년 설립	평 수	206	283	282	21	21	21
		평가액	17,304	20,678	29,045	386	386	386
	1992년 설립	평 수	-	116	148	-	182	182
		평가액	-	33,930	37,617	-	193	193
	1993년 설립	평 수	-	-	129	-	-	14
		평가액	-	-	29,559	-	-	43
	평 균	평 수	206	199	186	21	102	72
		평가액	17,304	27,304	33,074	386	289	289
부 대 사 업 관 련	1991년 설립	평 수	21	21	123	-	-	-
		평가액	6,139	5,850	14,279	-	-	-
	1992년 설립	평 수	-	146	176	-	-	-
		평가액	-	17,542	23,810	-	-	-
	1993년 설립	평 수	-	-	-	-	-	-
		평가액	-	-	-	-	-	-
	평 균	평 수	21	84	100	-	-	-
		평가액	6,139	11,696	12,696	-	-	-
전 체 평 균	평 수	227	283	286	21	102	72	
	평가액	23,444	39,000	44,770	386	289	289	

위탁영농회사 1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부대시설 규모는 358평이며, 이 가운데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규모는 286평(80.0%)이다. 용도별로 보면 농작업에 관련된 시설규모가 258평이며, 부대사업 관련 시설규모는 100평이다. 사업 관련 부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투하된 금액은 총 45.1백만원 이었으며, 대부분 건물 신축에 투하된 자금이다(표 3-10).

부대시설을 보다 세분하여 보면 (표 3-11)에서와 같이 육묘장과 부대사업 시설규모가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는 격납고와 사무실이 각각 50~60평, 10~20평 수준이다.

표 3-11 위탁영농회사의 부대시설 보유 현황(세분)

단위: 평, 천원

구 분			소 유			임 차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격 납 고	1991년 설립	평 수	42	51	55	-	-	-
		평가액	7,284	8,666	13,885	-	-	-
	1992년 설립	평 수	-	46	52	-	4	4
		평가액	-	20,839	21,872	-	54	54
	1993년 설립	평 수	-	-	44	-	-	6
평가액		-	-	17,038	-	-	21	
평 균	평 수	42	48	50	-	2	3	
	평가액	7,284	14,753	17,598	-	27	27	
사 무 실	1991년 설립	평 수	10	10	12	-	-	-
		평가액	2,878	2,288	3,779	-	-	-
	1992년 설립	평 수	-	10	13	-	1	1
		평가액	-	4,249	5,056	-	7	7
	1993년 설립	평 수	-	-	10	-	-	1
평가액		-	-	3,936	-	-	7	
평 균	평 수	10	10	12	-	-	-	
	평가액	2,878	3,269	4,257	-	4	4	
정 비 실	1991년 설립	평 수	8	8	8	-	-	-
		평가액	3,186	3,036	2,885	-	-	-
	1992년 설립	평 수	-	3	3	-	1	1
		평가액	-	2,158	2,158	-	18	18
	1993년 설립	평 수	-	-	10	-	-	-
평가액		-	-	2,351	-	-	-	
평 균	평 수	8	5	7	-	1	0.3	
	평가액	3,186	2,546	2,400	-	9	9	
건 조 장	1991년 설립	평 수	7	19	21	-	-	-
		평가액	1,578	2,118	4,240	-	-	-
	1992년 설립	평 수	-	12	13	-	4	4
		평가액	-	4,653	4,602	-	29	29
	1993년 설립	평 수	-	-	21	-	-	-
평가액		-	-	4,710	-	-	-	
평 균	평 수	7	15	19	-	2	1	
	평가액	1,578	3,385	4,517	-	14	14	
육 묘 장	1991년 설립	평 수	135	192	181	21	21	21
		평가액	2,174	4,376	4,071	386	386	386
	1992년 설립	평 수	-	42	57	-	171	171
		평가액	-	1,412	1,804	-	86	86
	1993년 설립	평 수	-	-	43	-	-	7
평가액		-	-	1,523	-	-	14	
평 균	평 수	135	117	94	21	96	67	
	평가액	2,174	2,894	2,466	386	236	236	
기 타	1991년 설립	평 수	4	4	4	-	-	-
		평가액	205	195	185	-	-	-
	1992년 설립	평 수	-	2	11	-	-	-
		평가액	-	716	2,320	-	-	-
	1993년 설립	평 수	-	-	-	-	-	-
평가액		-	-	-	-	-	-	
평 균	평 수	4	3	5	-	-	-	
	평가액	205	456	835	-	-	-	
합 계	평 수	206	199	186	21	102	72	
	평가액	17,304	27,304	33,074	386	289	289	

### 3.3. 농기계 및 장비

위탁영농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현황을 보면 (표 3-12)과 같다. 위탁영농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일반적인 농작업기계 뿐만 아니라 차량과 각종 수리장비까지 다양하다. 1개 위탁영농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비롯한 주요 농작업기계의 보유대수는 6기종 15~16대 수준이다. 보유 농기계 및 수리장비 등의 총가액은 125.0백만원 규모이다.

설립년도별 농기계 보유대수와 이것의 총가액을 보면 1991년 설립회사가 1993년에 설립된 회사보다 많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초창기 회사들의 의욕과 참여자 수 및 출자 농기계가 많았고, 자연적으로도 평야지에 많은 위탁영농회사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농기계 기종별 보유대수를 보면 트랙터 이앙기가 약 4대, 콤바인 3.4대이며 나머지 건조기 방제기등 각각 2대 정도이다. 보유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트랙터와 콤바인 보유액이 각각 40.8백만원, 26.1백만원으로 가장 많다. 농한기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장비도 20.0백만원으로 적지않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4. 영농작업규모 및 작업수수료

위탁영농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농작업규모를 (표 3-13)에서 보면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개 위탁영농회사당 연평균 주요작업의 합계(연작업 면적이 아닌 1회 작업기준 면적임. 예컨대 일정포장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작업이 이루어졌을 경우 각 작업을 더하여 5로 나누어 준 포장면적 기준임.)는 1991년 260.2천평에서 1992년에는 220.7천평, 1993년에는 194.4천평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책적인 조성목적과 괴리되는

표 3-12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보유 현황

단위: 마력, 조, A, 석, 대, 천원

년도	기 계 명	총 규 격			대 수			총 가 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년 도 설 립	트랙터	165	241	247	4.3	5.6	5.3	29,834	39,161	40,676
	이앙기	17	21	23	3.1	3.9	4.1	10,192	11,295	9,122
	콤바인	12	15	16	3.4	4.1	4.3	28,785	27,818	22,536
	건조기	32	32	58	0.9	0.9	1.4	1,958	1,626	3,320
	방제기	203	229	253	1.9	2.0	2.3	2,184	2,745	2,264
	차량	-	-	-	1.4	1.7	2.4	5,205	5,924	7,596
	트랙터부속작업기	-	-	-	-	-	-	6,713	8,598	8,659
	수리장비	-	-	-	-	-	-	1,142	932	775
	기타	-	-	-	-	-	-	6,499	11,013	10,879
	부대사업장비	-	-	-	-	-	-	-	40,616	41,445
합계	-	-	-	15.0	18.1	19.9	92,514	149,726	147,271	
1992 년 도 설 립	트랙터	-	137	185	1.4	2.7	3.4	-	34,753	37,697
	이앙기	-	22	24	0.9	4.0	4.4	-	12,913	11,399
	콤바인	-	9	10	1.3	2.4	2.7	-	30,974	28,134
	건조기	-	57	62	-	1.4	1.6	-	3,309	3,222
	방제기	-	50	110	-	2.4	3.3	-	2,094	1,845
	차량	-	-	-	-	1.6	2.0	-	7,542	9,696
	트랙터부속작업기	-	-	-	-	-	-	-	5,064	5,041
	수리장비	-	-	-	-	-	-	-	1,213	1,011
	기타	-	-	-	-	-	-	-	8,917	8,533
	부대사업장비	-	-	-	-	-	-	-	11,287	17,586
합계	-	-	-	-	14.6	17.4	-	118,066	124,165	
1993 년 도 설 립	트랙터	-	-	176	-	-	3.4	-	-	44,031
	이앙기	-	-	15	-	-	3.1	-	-	8,565
	콤바인	-	-	11	-	-	3.3	-	-	27,487
	건조기	-	-	69	-	-	1.9	-	-	4,724
	방제기	-	-	145	-	-	1.1	-	-	1,594
	차량	-	-	-	-	-	0.4	-	-	757
	트랙터부속작업기	-	-	-	-	-	-	-	-	9,586
	수리장비	-	-	-	-	-	-	-	-	944
	기타	-	-	-	-	-	-	-	-	5,807
	부대사업장비	-	-	-	-	-	-	-	-	-
합계	-	-	-	-	-	13.3	-	-	103,494	
평 균	트랙터	165	189	203	4.3	4.1	4.0	29,834	36,957	40,801
	이앙기	17	22	20	3.1	3.9	3.9	10,192	12,104	9,695
	콤바인	12	12	12	3.4	3.3	3.4	28,785	29,396	26,052
	건조기	32	45	63	0.9	1.1	1.6	1,958	2,467	3,755
	방제기	203	139	169	1.9	2.2	2.2	2,184	2,420	1,901
	차량	-	-	-	1.4	1.6	1.6	5,205	6,733	6,016
	트랙터부속작업기	-	-	-	-	-	-	6,713	6,831	7,762
	수리장비	-	-	-	-	-	-	1,142	1,072	910
	기타	-	-	-	-	-	-	6,499	9,965	8,406
	부대사업장비	-	-	-	-	-	-	-	25,951	19,677
총 계	-	-	-	15.0	16.4	16.9	92,514	133,896	124,976	

표 3-13 위탁영농회사의 설립년도별, 년도별 농작업면적

단위: 천평

구 분	1991년 설립			1992년 설립		1993년 설립	전 체 평 균			
	1991	1992	1993	1992	1993	1993	1991	1992	1993	
완전수탁 <sup>1)</sup>	147.9	151.9	142.7	61.6	48.3	48.0	147.9	106.7	79.7	
부 분 수 탁	경운(1회)	107.1	115.6	105.8	94.3	81.7	104.7	107.1	104.9	97.4
	정지(1회)	106.3	123.1	110.9	129.0	98.9	107.6	106.3	126.1	105.8
	육묘	12.9	13.3	19.7	68.3	103.7	36.7	12.9	40.8	53.4
	이앙	101.3	98.3	85.9	97.0	147.1	53.3	101.3	97.6	95.5
	시비(1회)	0.0	9.9	27.9	4.3	175.7	42.9	0.0	7.1	82.1
	방제(1회)	42.9	109.3	104.7	116.4	90.9	34.1	42.9	112.9	76.6
	수확	145.8	102.1	123.0	172.6	213.4	128.4	145.8	137.3	154.9
	건조	2.6	22.7	57.4	34.4	24.9	61.4	2.6	28.6	47.9
	기타 <sup>2)</sup>	22.0	75.1	97.1	96.2	103.6	58.6	22.0	85.7	95.4
	주요작업 <sup>3)</sup>	94.7	90.5	89.1	112.2	129.0	86.1	94.7	101.3	101.4
임 대 차	17.6	15.6	16.3	9.7	11.2	12.5	17.6	12.7	13.3	
주요작업 합계 <sup>4)</sup>	260.2	258.0	248.1	183.5	188.5	146.6	260.2	220.7	194.4	

1) 완전위탁은 회사별로 건조와 방제, 시비, 운반작업 등에 있어서 시행유무의 차이가 있어 수도작의 주요작업인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등의 작업을 모두 하는 것을 완전위탁의 범주에 넣었다.

2) 기타작업으로는 벼운반, 밭경운 정지, 보리작업 등이 포함되었다.

3) 주요작업으로는 ( 경운+정지+육묘+이앙+수확작업면적 ) ÷ 5로 계산함 (1993년 보고서에는 육묘작업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1994년 보고서에는 포함시켜 평가함).

4) 는 (완전수탁 + 주요작업(3) + 임대차 면적)임.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작업 내용별 변화를 보면 부분수탁과 임차규모는 큰 변화가 없으나 완전수탁면적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부분수탁면적은 작업별로 편차가 심하나 근년에 오면서 상당히 평준화되고 있다.

수탁작업을 이행하고 받는 작업수수료를 (표 3-14)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작업수수료와 위탁영농회사의 수수료가 비슷해 지고 있다. 수도작 주요 작업수수료의 상대비율을 보면 1991년에는 86.5%에서, 1993년에는 96.2%로 높아지고 있다. 일부 농작업 수수료수준이 인근에 비해 더욱 낮아진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작업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표 3-14 위탁영농회사와 인근의 수도작 주요작업 수수료 현황

단위: 원/평, %

구 분	1991년			1992년			1993년		
	회사(A)	인근(B)	A/B*100	회사(C)	인근(D)	C/D*100	회사(E)	인근(F)	E/F*100
경운(1회)	42.6	46.0	92.6	46.3	50.1	92.5	48.2	52.4	92.0
정지(1회)	42.6	46.0	92.6	57.5	61.4	93.6	58.8	61.7	95.3
육묘	108.8	145.3	74.8	142.5	148.8	95.8	149.0	152.1	98.0
이앙	55.8	69.2	80.7	64.6	69.0	93.6	69.1	75.2	91.9
수확	93.9	98.3	95.5	98.9	108.0	91.6	101.9	101.9	100.0
건조	56.2	57.6	97.6	55.6	56.1	99.1	57.3	60.1	95.4
합계	399.9	462.4	86.5	465.5	493.4	94.4	484.4	503.4	96.2

회사별, 연도별 농지의 임차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평야지의 농지임차료는 생산성면에서 산간지에 비해 우월한 탓으로 산간지에 비해 비교적 높다. 반면 완전수탁료와 부분수탁료는 높아지고 있으나 평야지가 오히려 낮다. 이는 작업조건이 평야지가 양호할뿐만 아니라 농기계 보급률이 높기 때문이다(표 3-15, 표 3-16).

표 3-15 회사별, 년도별 평당 임차료 및 평당 완전수탁 수수료

단위: 원/평

년 도	지 대	회 사	임 대 차			완 전 수 탁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년 도 설 립	평야지	Is	-	685	561	367	377	392
		Jus	943	979	-	415	415	417
		Jos	707	636	510	800	833	917
		Dp	707	-	-	400	400	425
		평균	786	767	536	496	506	538
	중간지	Cs	755	636	510	505	705	572
		Dd	472	490	510	350	450	450
		My	-	-	51	400	520	580
평균		614	563	357	418	558	534	
1992 년 도 설 립	평야지	DI	-	490	-	-	580	590
		Yd	-	636	510	-	350	367
		Dj	-	490	357	-	450	500
		평균	-	539	434	-	460	486
	산간지	Mg	-	979	510	-	565	605
		Md	-	-	459	-	300	300
		Sy	-	587	612	-	430	430
		Ma	-	979	-	-	1,007	450
평균	-	848	527	-	576	446		
1993 년 도 설 립	평야지	Ed	-	-	510	-	-	-
		평균	-	-	510	-	-	-
	중간지	Ss	-	-	510	-	-	642
		Hj	-	-	510	-	-	490
		Wh	-	-	357	-	-	500
		평균	-	-	459	-	-	544
	산간지	Pt	-	-	-	-	-	583
		Di	-	-	-	-	-	480
Bg		-	-	-	-	-	-	
평균		-	-	-	-	-	532	
평	균	717	690	463	462	527	510	



## 제 4 장

# 위탁영농회사의 조직 성격과 유지의 문제

## 1. 이론적 고찰

### 1. 1. 집단형성의 원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집단을 형성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부터 사회학적, 경제학적 측면에서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집단형성의 원인을 어느 하나의 변수만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회·심리·경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특정집단의 경우 특수한 동기 아래에서 조직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나타난 특정원인만으로 집단의, 집단내 구성원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형성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집단을 설명하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대상집단의 행태를 예견함과 동시에 구성원들과의 관계, 구성원과 집단과의 관계를 조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형성에 관한 이론은 크게 우연론적(casual)견해와 형식론적(formal)견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M. Olson(윤여덕역: 1987).

우연론적 견해는 집단의 형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 예컨대 본능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견해도 두 가지로 세분될 수 있다. 하나는 Freud(1922)와 Schutz(1958)로 대표되는 정신역동적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생물사회학(Sociobiology)적 견해로서 Wilson(1975), Crook(1981) 등의 학자가 여기에 속한다. 이 두 견해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후자는 군집충동(affiliative urge)의 적응적 기능을 강조하는 데 차이가 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그 기본적 토대를 두는 이런 견해는 생물학적 뿌리를 갖고 있는 군집(모이)하려는 충동(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집단에 가입한다는 가정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방어나 먹이 찾기, 번식 등에 있어서 적합도(fitness)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형식론적 견해를 통해 집단형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연적-일부에서는 형식론적 견해에 반대견해로서 비형식적(informant)으로 표현하기도 함 -인 견해와 비교적 상치되는 것이다. 이들 견해는 우연적 견해에서 강조되는 인간의 집단귀속 본능보다는 어느 사회를 전제로 하여 전체조직의 목표와 관련된 과업 수행을 위해 집단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견해도 두 가지로 세분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하듯, 본능적 이유보다는 정보적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사회 비교 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집단을 형성한다는 견해이다. Festinger(1950, 1954)나 Schachter(1959) 등의 연구가 이러한 시각을 잘 나타낸다. 또 다른 견해로서는 사회 교환의 관점에서 집단 형성과정을 바라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정보의존) 타인과 집단을 형성할 수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또한 여러 가지 효

과(목적)를 얻기 위해 집단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포괄적인 견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사람들은 집단을 형성하는가의 이유는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사회 교환의 관점을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어느 한 개인이 집단을 구성(참여)하여 그로부터 얻는 보상(이득)이 부담(비용)보다 클 때 집단형성의 유인이 작용하게 된다. 즉, 극소극대의 원리(Mini-Max Principle)가 작용하는 것이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것은 역시 이러한 원리가 지배하는 집단이다. 물론 다른 사회·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조직된 집단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요 연구대상은 경제적인 형성요인에 있으며, 그것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집단적 이익 추구를 위해 형성된 조직을 우리는 이익집단이라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익 획득에 소요되는 집합재 공급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가능한 한 적게 하려고 하며, 획득 이익량은 크게 하려고 구성원들은 노력한다. 조직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상이하게 쓰이고 있다.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Bently, Ehrman, Truman, Berry, Almond 등의 학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익이라는 것은 어느 정책 또는 가치의 분배에 있어서 집단내 공유된 태도를 기반으로 자기들에 유리하도록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의도적인 욕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집단이란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조직인 것이다. 위탁영농회사도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이익집단이다.

## 1.2. 집단 유지의 조건

일단 공동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s)<sup>1)</sup>를 획득하기 위해 집단이 조직되었다고 해서 조직된 모든 집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조건이 주어질 때 또는 조성되어질 때

계속적인 활동체로 남게 되는 것이다. 집단이 조직되고 난 후 그 구성원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집단의 지속을 고려하게 된다. 하나는 집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재의 획득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집단 구성원간에 공공재 획득의 크기 분포문제이다. 집단 구성원 상호간 획득한 이익의 크기가 공평한가 어떤가 하는 점이다. 전자는 집단의 조직화로 인한 수익이며, 후자는 집단 구성원간의 수익차이이다.

집단의 조직화이익은 집단형성의 기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의 실현 여부는 곧 집단 지속 여부의 가늠자이다. 이 조직화이익은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개인으로 남아 있을 때의 이익보다 집단에 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야 된다는 점이며, 두번째는 집단내에서 공공재 획득에 투입된 비용보다 그로 인한 수혜가 커야 된다는 점이다. 앞의 것은 동일인에 대한 위치에 따른 수익비교(吉田博, 1980)이며, 뒤의 것은 특정개인이 공공재 공급에서 얻는 이익이 이의 획득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할 때 공공재는 공급된다는 것이다(Olson: 1987). 여기에서도 이익획득의 분배문제는 남아 있다. 아울러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요인도 집단성격을 이해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집단내 구성원간의 수익분배문제는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지속적 유지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예컨대 집단 활동에 대한 노동참여시간, 집단의 기본자산으로서 자본의 출자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집단에서 획득된 공공재의 분배문제가 철저하게 대립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불만족스러울수록 그 집단의 존속은 의심되는 것이다. 물론 이 부문에서도 비경제적인 요소가 있다. 집단 구성원 사이의 인간적 관계나 개인간 사회적 욕구 등에 의해 분배의 불

---

1) 공공재나 집합재(Collective goods), 사회재(Social goods)는 동일 의미로 볼 수 있다. Paul A. Samuelson은 공공재란 관용어를, Richard A. Musgrave는 사회재란 용어를, Mancur L. Olson은 집합재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균등이 완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동일 공공재 획득을 위해 조직된 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어느 집단은 와해되기도 한다.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 참여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의 비교를 통해 소속된 집단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집단조직이 용이하고 가입 탈퇴가 쉬울 경우 발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분된 집단의 유지 조건은 내부조직 및 경영관리 혹은 구성원의 선택 등의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집단의 크기도 집단의 지속적인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집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집단 지향적 행동에 대한 보상이 적고, 그만큼 조직 구성원들의 비용 부담이 크며, 무임승차자(Free-rider)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조건을 변화시키는 집단을 둘러싼 외부조건이 있다. 제도, 자원, 기술 등의 여건이 그것이다. 동일한 공공재를 획득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이라하더라도, 특히 경제적인 성격이 강한 집단의 경우 그 집단에 관련된 제도가 집단 유지에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원이나 기술조건이 다름에 따라 어느 집단의 지속성은 크게 좌우된다. 물론 위탁영농회사는 그 자체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집단의 조직과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인 내용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집단유지의 조건은 크게 내부적 조건과 외부적 조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상호 영향을 주면서 조직의 지속적인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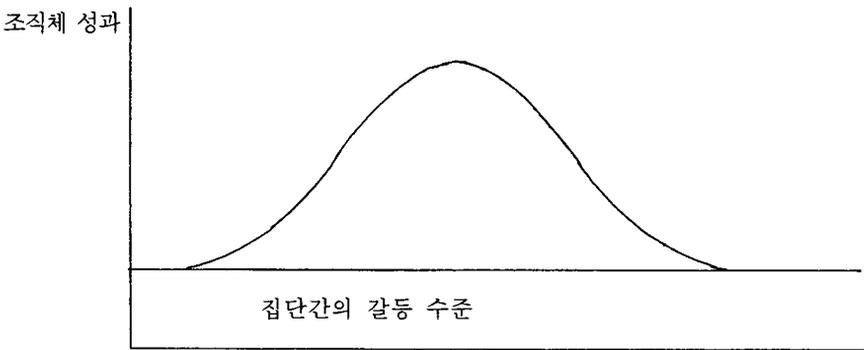
### 1.3. 집단의 갈등 및 조정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갈등(Conflict)은 집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갈등 존재에 대한 인식, 대립, 희소성(Scarcity), 간섭과 방해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어느 행위를 의도적으로 좌절시키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갈등은 그

성격이 어떤 것인가와 그것을 어떻게 관리 조정하느냐에 따라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갈등에도 최적수준(Optimal level of conflict)이 있다. 즉, 적절한 갈등은 집단 구성원들의 건전한 경쟁 유발과 창의력을 거양시켜 목표로 하는 공공재 취득을 빠르게 그리고 쉽게 만든다. 한편 지나친 갈등은 집단의 와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다. 따라서 어느 한 두 요인만

그림 4-1 갈등의 정도와 조직성과간의 관계



갈등 수준	낮음	이상적	높음
영 향	역기능적	순기능적	역기능적
집단행동	환경변화에 적응력 둔화 무사안일적 침체적 의욕상실	환경변화에 신속한 적응력 창의적, 변화지향적 활발한 문제해결행동 적극적 목표달성행동	혼란 분열 상호조정결여 상호의식결여
성 과	낮음	높음	낮음

자료: J.L.Gibson, J.M.Ivancevich, and J.H.Donnely, Jr. Organizations: Behavior, Structure, Processes, 6th ed. (Plano, Tex:Business Publications Inc., 1988), p.308.

을 가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성격과 처방을 내릴 수는 없다. 나아가 갈등의 유형은 개인내(intrapersonal) 갈등, 개인간(interpersonal) 갈등, 집단내(intragroup) 갈등, 집단간(intergroup) 갈등 등이 있어 복잡함을 더해 준다. 이러한 갈등은 일반적으로 의견 불일치(disagreement), 대결(confrontation), 격화(escalation), 해소(resolution)이라는 진행과정을 겪게 된다. 특히, 갈등 가운데 가장 자주 눈에 띄는 개인간의 갈등은 양자가 모두 손해 보던지(Lose-Lose approach)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거나(Win-Lose approach) 혹은 당사자 모두 이익을 보는 방법(Win-Win approach)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제3자가 개입할 수도 있고, 현상을 하거나 법적인 힘에 의존할 수도 있다(朴乃會, 1993).

지나친 갈등의 존재는 집단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 다른 한편 똑같은 갈등 수준이라해도 응집력의 수준에 따라 집단의 지속적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소속 집단에 가지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매력(friendness or attractiveness)으로 볼 수 있는 응집력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촉진되고 증대될 수 있다(Cohen etc, 1976)<sup>2)</sup>. 첫째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common values and goals)를 갖는 것이며, 두번째는 목표 달성을 성공해야(Success in achieving goals)만 구성원간 응집력이 강해지며, 세번째 응집력이 높은 상태의 집단(high-status groups)은 역시 구성원에 긍지와 만족을 주게 되며, 네번째 집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모색(resolution of differences)되고, 다섯번째는 규범에 따르는 순종성(Conformity to norms)이 높을 때이다. 이외에도 경쟁심을 유발시킨다던가, 집단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구성원들의 적용 규범과 집단의 응집력을 중심으로 집단성격을 유형 개념화할 수 있다(표 4-1). 먼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목

2) 柳基鉉(1983), pp. 239~242 참조할 것.

표 4-1 집단응집성과 구성원 목적에 따른 집단성과

구 분		집단목적과 구성원목적과의 관계	
		불 일 치	일 치
집단응집성	고	집단, 개인별 목적 달성 (저수준 성과)	집단전체적 개인목적 달성 (고수준 성과)
	저	개인별 목적 달성 (저수준 성과)	개인별, 집단목적 달성 (중간수준 성과)

적이 조직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단의 응집력에 관계없이 성과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조직의 목적이 일치되면 집단의 응집력이 낮다 하더라도 집단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된다. 구성원들 개인적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직의 목적과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일치되고 집단의 응집력도 높은 상태에서 구성원들 자체가 집단단위로 조직의 목적 달성에 적극 노력하여 집단성과에 기여하는 것이다.<sup>3)</sup>

## 2. 조직 성격 분석

### 2.1. 위탁영농회사의 조직 목적<sup>4)</sup>

위탁영농회사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목적은 크게 세가지로 세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지원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목적, 두번째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조직자체가 나타내는 목적, 마지막으로

3) Fremont E. Kast and James E. Rosenzweig, 「Organization and Manage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0.

로 구성원들내 개개의 참여 목적이다. 이러한 세가지 목적이 일치하게 되면 그 위탁영농회사의 형성 유지, 나아가 전향적 발전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세가지 목표가 상이하다면 물론 그 위탁영농회사는 와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초기의 목적은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구성원의 변화가 수반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방향에서 위탁영농회사가 유지되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위탁영농회사가 처음 조직될 때 각 단계별 조직목적간에 불일치가 있다고 해서 반듯이 그 집단 자체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측면에서 내세우는 위탁영농회사의 육성동기는 앞장에서도 살펴 보듯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대행과 농기계이용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는 데 있다(농발법 제7조 ① ② 참조). 이를 위해 위탁영농회사는 첫째, 위탁에 의한 농업경영 또는 농작업 대행 둘째, 농기계 및 장비의 임대와 수리 셋째,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관리 마지막으로, 기타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 9 조).

조성되어 있는 개별 위탁영농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는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먼저 회사의 정관에 사업영역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업 내용은 위탁영농회사 조성시 정부에서 일정양식(농림수산부: 「위탁영농회사 설립 해설」, 1990. 12)에 의해 지도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즉, 정부육성지침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이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탁영농회사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 
- 4) 동기와 목적은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다르게 되며, 어느 집단 형성의 초창기에도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문제를 동시에 조명하는 데 있어서 전자의 동기와 후자의 목적은 집단 형성에 있어 대동소이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목적과 동기(형성원인)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였다.

위탁영농회사가 어떤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가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득증대란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 반응하는 가는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사대상이 된 25개 위탁영농회사 가운데 사업성격 파악이 불가능한 회사는 Kp, Kd, Hc, Sh 등 4개사이다. 구성원 대다수의 탈퇴로 잔존 농기계를 몇몇이 지원된 농기계를 나누어 사용 수익하거나, 원래부터 개인별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9개사나 된다. 아물튼 이들까지를 포함한 21개사 가운데 농지 임차 경영을 하거나 농지 소유규모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회사는 12개사, 약 57%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10개 위탁영농회사 모두는 1993년말 현재 농지 임차경영을 하고 있었다.

농업생산 이외의 농한기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8개사, 고소득 농업생산(비닐하우스 등)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는 2개사이다. 소득증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위탁영농회사는 계속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1991년도에 설립된 회사 가운데 처음부터 농한기사업을 시작한 회사는 Cs, Jus, Dl, Sy, Ma 등 5개사에 불과하다. 그러던 것이 1993년에 와서는 9개사로 늘어난 것이다. 점차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농한기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된 21개 위탁영농회사 가운데 순수하게 영농대행만을 하는 회사

표 4-2 위탁영농회사의 시행사업 성격별 회사 수(1993년 기준)

단위: 개

회사/사업	영 농 대 행		농지임대차 및 소유규모확대	개인혜택 수 혜	사 업 성 격 파악 불가능
	농업생산 이 외	고소득, 수도작외 생산			
개 소	8	2	12	9	4
회 사 명	Cs, Jus, Jos, Dl, Dd, Mg, Sy, Pt	My, Ma	Cs, Is, Dp, Dd, My, Dl, Md, Sy, Pt, Di, Id, Wh	Bg, Yd, Jos, Dd, Dl, Ma, Hj, Wh, Mg.	Kp, Kd, Hc, Sh

주: 복합적 성격인 경우 이중 계산되었음.

는 11개사이다. 이들 가운데 가족 친지와 농기계를 나눠가진 형태(Yd 과 Bg)와 지입제(Hj), 1인 운영형태(Wh)를 제외하면 7개사에 불과하다. 이들을 조성년도별로 구분해 보면 1991년과 1992년에 설립된 회사는 Is, Dp, Dj와 Yd, Md(등기완료시점 기준)이다. 나머지 2개사는 1993년도에 조성된 회사다.

한편 위탁영농회사를 조성할 당시 상당수의 대표자들은 위탁영농회사의 조성목표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정도로 대답한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명예를 굽히지 않는 경우도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sup>5)</sup>. 그러나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일단 적지않은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한 보조가 정부에 의해 지급되고, 따라서 저렴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작업을 수탁할 경우 수익이 증대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의 사업영역을 농작업대행에만 제한하는 데에 대해서 위탁영농회사 구성원들의 불만이 많다. 결국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회사 운영목표를 영농대행에만 한정하지도 않으며, 굳이 구조 개선이란 거창한 구호도 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소득이 보다 높다면 어느 사업이든 능력 범위내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탁영농회사의 사업행태가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순수 위탁영농을 통해 소득 증대가 가능하리라 여기고 노력했으나 예상치 못했던 비용 발생과 어려움<sup>6)</sup>으로 목적 수행에 실패하여 위탁영농회사가 실질적으로 해체된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농기계를 구성원간에 분배하여 사유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들

- 5) 조사회사 가운데 Dd위탁영농회사의 대표는 실질적으로 개인 혼자 출자하여 1991년부터 꾸려 나오고 있는데, 대표자 K씨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 6) 초창기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에 타격을 준 경제요인들은 첫째, 기 보유 농기계 미활용과 비용 부담, 둘째 불요불급한 사무실, 격납고등의 시설 설치비용, 세번째 제세공과 및 접대비와 같은 비용의 과다지출 등이다. 물론 인적 요소의 갈등은 제외한 것이다.

이 혜택을 받은 경우는 9개사나 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목적과 위탁영농회사나 그 조직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에서 위탁영농이나 농기계 이용의 확대만을 강조하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며<sup>7)</sup> 수도작이외의 소득사업이나 농업생산이외 농한기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의 육성 목적과 조직의 목적이 상이한 것이다. 심지어 위탁영농회사 부지를 위한 농지 전용을 통해 지가 상승에 의한 자산 증식을 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엄밀히 말해 목적은 같은데 그 수단과 방법이 다른 것이다.

## 2. 2. 위탁영농회사의 조직과정

위탁영농회사가 조직되는 과정은 모든 회사에서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탁영농회사의 조직과정은 누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 어떻게 조직했는가에 대한 세술이 된다.

먼저 위탁영농회사를 누가 주체가되어 조직하였는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할 수 있다. 정책적 지원 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써 행정기관의 주선에 의해서 조직되는 경우(Ⅰ), 일부 선도적인 농민들이 사전에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나서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받고 만드는 경우(Ⅱ)이다. 그 다음에는 동일지역내(반듯이 행정구역의 기준만이 아니며, 대개는 대단위 포장을 지칭함)에서 대형 농기계를 소유, 이용하던 친목모임이나 기계화영농단이 주체가 되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 경우(Ⅲ)이다.

위탁영농회사를 위 세가지 조직과정의 특징별로 살펴보면 (표 4-3)

---

7)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경우 자신들은 동네(마을) 머슴이나 다름 없는 것이 아니냐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표 4-3 위탁영농회사의 조직 성격(25개사, 설립등기시점 기준)

년 도	회사	조직과정 특징			조직구성원의 관계					구성원수 변화		
		I	II	III	A	B	C	D	E	설립자	탈퇴자	현재원
1991	Kp	0							0	7	5	2
	Cs			자'90			0	0		4	2	4
	Is		0			0				5	2	4
	Jus			자'84			0	0		8	7	5
	Gd	0							0	7	7	2
	Jos	0		후·영			0		0	15	10	5
	Dp		0	후			0	0		8	3	5
	Dd		0	후			0	0		7	8	3
	Hc	0							0	6	0	6
	Dj		0	후			0			8	4	4
	Ma		0				0			8	7	3
	My			후			0	0		7	9	4
Sh		0						0	5	4	1	
1992	Dl			자		0		0		7	3	4
	Yd		0		0					5	2	3
	Md			자 '91		0		0		5	0	5
	Sy		0		0					5	2	3
	Mg			영	0					2	0	2
1993	Pt			자		0		0		6	0	6
	Di		0			0				5	0	5
	Ss			4H			0	0		5	0	5
	Id			영		0		0		5	0	5
	Bg		0		0					5	2	3
	Hj			후·이					0	6	2	5
	Wh		0				0			4	0	4

주: I : 행정기관주선 조직 II : 선도농민에 의해 조직

III : 과거 유사 및 타 조직이 중심이 되어 조직

(자: 자율조직, 후: 후계자조직, 영: 기계화영농단)

A: 일가 친척 중심 B: 인근 친구, 선후배

C: 비교적 광범위(친구, 선후배)

D: 기존 조직의 구성원 E: 유대관계 미약한 관계

설립자 수에는 형식적 참여자 제외.

조직성격이외 분석시 Gd, Dj, Ma, Sh은 1992년으로 분류됨.

에서와 같이 1991년도에는 아무래도 조성 초기여서 적극적인 관련 행정기관의 지도에 의한 경우가 4건(총 13건)이나 되었다. 조직의 결속력이 비교적 약한 후계자 모임에서 선도적인 농민이 나서서 조직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1개 농민이 주도적으로 조직해 나간 경우가 6개사이다. 당시에는 광범위한 홍보가 미약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권유나 일부 지역 유지로 지칭되는 선도농에 의해 조성된 비율이 높다.

1992~93년이 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바뀌게 되어 지역내 자생적 결합체<sup>8)</sup>, 혹은 기계화 영농단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어느 정도 조직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특성을 비교적 쉽게 알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이해 일치 여부가 쉽게 나타난다. 앞의 선도농에 의한 경우 조직의 지도자(leader)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후자는 구성 개개인의 조직에 대한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조직 구성원들간의 관계도 다양하다. 먼저 일반적으로 가장 구성원간 응집력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일가 친척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A)가 있으며, 인근부락의 친구와 선·후배가 위탁영농회사를 만들기도 한다(B). 비교적 광범위(동일작업분야)한 부락간의 선·후배나 친구가 결속(C)되기도 하고 기존의 일정한 모임(후계자, 기계화영농단, 기타 기계운영친목모임 등)이 주체세력이 되어 위탁영농회사를 조성하기도 한다(D). 마지막으로는 구성원 상호간에 긴밀한 유대가 없는 상태에서 조직 선도농에 이끌려서 혹은 관련 기관의 권유에 의해 결합되는 경우(E)도 없지않다

조사대상 25개 위탁영농회사 가운데 조직 구성원간에 일가 친척인 경우가 4개사, 사전에 상호간에 유대관계가 미약했던 경우가 5개사이다. 나머지 16개사는 기존의 후계자모임이나, 4H, 기계화영농단 및

---

8) 지역내 자생적 결합체는 대형농기계 소유자들이 작업편의상 만들기도 하지만 추후 위탁영농회사로 지정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정 조직을 만들기도 한다.

자생모임에서 규합된 선·후배, 동료들로 구성되었다.

위탁영농회사의 조직 구성원 수는 1991년의 경우 7~8명 정도이다. 1992~93년에 설립된 회사는 이보다 작은 5명 내외이다. 설립 초기에는 아무래도 참여희망농가가 많기 때문이다(자세한 내용은 뒷절 참조).

위탁영농회사의 조직과정과 조직 구성원의 성격을 결합하여 보면 비교적 쉽게 조직 유지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1991년에 설립된 회사 가운데 조직운영 파악이 불가능한 Gd, Hc, Sh은 행정기관이나 하나의 선도농의 주도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구성원들은 사전 유대관계가 미약한 상태였다. 일가 친척이 중심이 된 회사는 대부분 조직후 구입 농기계를 분배, 사유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체로써 위탁영농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11개사(Cs, Is, Jus, Dp, My, Md, Sy, Pt, Di, Ss, Id)의 공통적 특징은 과거 유사조직에서 같이 작업해 오던, 인근의 친구나 선·후배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것이다. 구성원 서로간에 상당한 수준의 인지도

그림 4-2 위탁영농회사의 출자방법



\* : 조직운영파악 불가능(4), \_ : 개인분배, 지입제(4), # : 개인운영(5)

가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러한 회사들의 경우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경영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들도 대부분 조직내 갈등을 1회 이상 겪게 된다. 그러나 이때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조직을 이끌었고, 구성원들은 그를 추종하면서 갈등을 극복한 것이다.

한편 위탁영농회사 설립자들의 출자형태를 (그림 4-2)에서 살펴보면 의외로 불균등 출자(19개사)가 많다. 균등 출자된 6개사는 대부분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출자하고 있으며, 모두 다 1993년말 현재 본연의 위탁영농회사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불균등 출자한 회사들은 여러 운영형태로 변하고 있다. 불균등 출자한 19개 위탁영농회사 가운데 조직 운영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개인 분배 지입제 및 개인 운영되는 회사는 총 13개 회사이다.

### 3. 조직 유지상의 문제

위탁영농회사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적이 되는 조직원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적 개념이 있어 현재만을 고려치 않으며, 미래의 가능성도 포함된다. 적어도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위탁영농회사에 가입했을 때보다 이익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초과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수익 분배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세번째 타위탁영농회사 또는 유사기능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동에 관련된 거래비용도 포함된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은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조직 유지 및 갈등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재 위탁영농회사에서 표출되는 갈등은 인근 위탁영농회사나 유사조직(기계화 영농단, 유사자율조직)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조직 구성원간의 그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내부조직원간

의 갈등은 탈퇴를 양산하게 되어 위탁영농회사의 조직 와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위탁영농회사를 구성하는 개개인 자신의 내부 갈등과 구성원간의 갈등은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키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 위의 두가지는 결합된 상태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단 조직자체의 유지조건으로서 수익 발생 여부와 외부적 조건 -경지기반, 임대차시장, 소득사업 접근도-은 차치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위탁영농회사에서 구성원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갈등 제공요인은 작업수행과 사업후 수익의 분배에 대한 불만이다. 농작업의 수행과정에서 구성원들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조직운영 과약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예가 Gd이다. 이 회사는 조성초기 행정기관 담당자가 구성원 상호 간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조성한 경우다. 처음 이 위탁영농회사의 대표는 R씨(트랙터사고로 사망)였으며, 조직 구성원과 대표자는 상당한 의욕을 앞세워 대규모작업량을 확보하였다. 그러다보니 작업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곳도 포함되었을뿐만 아니라 작업거리나 일정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확보된 대규모작업의 수행을 위해 106HP급 트랙터를 회사 자금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작업일정은 밤늦게까지 작업해야만 소화할 수 있도록 빡빡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처음에 구성원들은 의욕적으로 이러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직원 가운데 U씨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가와 임차를 합해서 약 40여필지(1,200평×40필지 = 48,000평 = 16ha)를 경작하고 있었다. 처음에 그도 역시 위탁영농회사의 작업일정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탁영농회사가 수탁받은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정작자가 수도작의 작업은 자연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으나 U씨만은 그에 따른 불안

이 많았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은 책임지고 U씨의 농작업을 수행해 줄터이니 위탁영농회사의 일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자고 권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씨는 자신의 농사일을 하면서 위탁영농회사일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가장 시기적으로 바쁜 경운·정지와 육묘시기인 이때부터 수탁작업 수행은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작업 수행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작업은 개인임작업자에 분할, 의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조직 구성원간에는 상호 갈등이 쌓이게 된다. 구성원들은 점차 자기 관련 분야(이양조는 이양만, 트랙터조는 경운 정지)만을 수행할 뿐 상대작업조가 늦은 시각까지 작업해도 도와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트랙터를 밭작업에 이용할 때 누가 먼저 작업하느냐 그리고 누가 작업계획 수립과 작업 감시를 하느냐 등의 갈등이 증폭하였으며, 점차 농기계관리도 소홀해지고 고장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원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아래에서 이것을 조정할만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 위탁영농회사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관할 농촌지도소장은 타지역으로 전출하였고, 그렇다고 조직내부에서 강력한 지도력의 지도자가 나서서 추스리지도 못한 것이다. 조직 구성원간의 인지도의 저위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위탁영농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모여 수십차례의 토론회를 하게 된다. 어떤 때는 밤을 세우면서 토론회를 한적도 있다고 하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개인별 농기계 책임제도 구상해 보고, 임대제도도 구상해 봤으나 모두가 관리의 헛점이 많게 되어 결국은 남아 있는 구성원끼리 균등방법에 의해 보유 농기계를 나눠 지입제형태로 운영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그것조차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미처리된 부채만 해결되면 이들은 흩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와 비슷한 처지로 Jos과 Hc을 들 수 있다. 이들 회사의 조

직과정과 조직원간 구성관계가 매우 유사하다. 즉,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유대관계가 미약한 농민들을 조직화했다는 점이다. 어느 한 농민이 선도적으로 이끌었다고는 하나 구성원 상호간의 인지도가 낮은 회사는 Sh도 마찬가지이다. Jos의 경우 설립자의 수는 무려 15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는 농기계 조작이 서툰 사람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행정적인 차원의 전시적 요소가 크다. 이들은 처음부터 누가 어느 농기계로 작업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농기계 운전에서 배제된 구성원들의 불만 표출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배제된 구성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농기계 운전경력이 풍부한 구성원들은 농기계의 고장을 염려하여 농기계 이용을 제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불편한 관계는 연말 수익 배분과정에서 폭발하게 된다. 결국 대다수인 10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5명만이 보조된 농기계를 적절히 분배하여 사용하고 있다.

두번째 위탁영농회사의 갈등 유발요인은 회사 경영방법이나 추진사업체계에 대한 의견 불일치, 나아가 기대수익의 미회수이다. Jus, Jos, My, Sy, Hj가 이러한 경우이다. Jus의 경우에는 초대 대표자와 설립자들간에 도정공장 도입건으로 의견이 대립되어 결국 대표자가 탈퇴하게 된다. My은 그지역 연장자를 대표로 추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젊은 층과 사업 시행에 있어서 갈등이 나타나게 되어 연장자들이 탈퇴하게 된 경우이다. Hj 역시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이장들과 젊은 후계자들 사이에 사업 추진상의 갈등으로 연장자들이 물러선 경우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개가 대표자의 교체를 유발한다. 그러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라도 후임 대표자의 자질에 따라 그 위탁영농회사의 조직은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Jus, Sy, Hj, My이런 경우이다. 회사 경영방법을 개별운용과 비슷한 지입제형태로 바뀌 위탁영농회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러한 갈등의 조정과정은 구성원 수의 변화로써 간접적이거나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직 구성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1년에 조성

표 4-4 회사별 대표자의 변경 및 실제 참여자수의 변화(설립시점 기준)

단위: 명

설립 년도	회사명	대표변경	설립자수	형식상수	1991			1992			1993		
					탈퇴	신규	실제	탈퇴	신규	실제	탈퇴	신규	실제
1991	Kp	0	7	0	0	0	7	0	0	7	5	0	2
	Cs	0	4	0	0	0	4	1	1	4	1	1	4
	Is	×	5	0	1	0	4	0	0	4	1	1	4
	Jus	0	8	0	1	1	8	6	3	5	0	0	5
	Jos	0	15	0	0	0	15	7	0	8	3	0	5
	Dp	×	8	0	2	0	6	0	0	6	1	0	5
	Dd	×	7	2	0	0	5	5	2	2	1	2	3
	Gd	0	7	0	0	0	7	2	2	7	5	0	2
	Hc	×	6	0	0	0	6	0	0	6	0	0	6
	Dj	×	8	0	0	0	8	1	0	7	3	0	4
	Ma	×	8	0	1	0	7	4	1	4	2	1	3
	Sh	×	5	4	0	0	1	0	0	1	0	0	1
My	0	7	0	3	0	4	0	6	10	6	0	4	
소 계			95	6	8	1	82	26	15	71	28	5	48
1992	Dl	×	7	1	-	-	-	2	0	4	1	0	3
	Yd	×	5	0	-	-	-	2	0	3	0	0	3
	Md	×	5	0	-	-	-	0	0	5	0	0	5
	Sy	0	5	0	-	-	-	2	0	3	0	0	3
	Mg	×	2	0	-	-	-	0	0	2	0	0	2
소 계			24	1	-	-	-	6	0	17	1	0	16
1993	Pt	×	6	0	-	-	-	-	-	-	0	0	6
	Di	×	5	0	-	-	-	-	-	-	0	0	5
	Ss	×	5	0	-	-	-	-	-	-	0	0	5
	Id	×	5	0	-	-	-	-	-	-	0	0	5
	Bg	×	5	0	-	-	-	-	-	-	2	0	3
	Hj	0	6	0	-	-	-	-	-	-	2	1	5
	Wh	×	4	1	-	-	-	-	-	-	0	0	3
소 계			36	0	-	-	-	-	-	-	4	1	32
합 계	0:7, ×:15		137	4	7	1	127	31	13	109	28	6	87

주: 대표자 변경의 경우: 0 변경되지 않은 경우: ×

된 위탁영농회사의 참여자 수는 1992년, 1993년의 그것에 비해 많은 7~8명 수준이다(표 4-4). 이것은 위탁영농회사 조성 초기에 군단위 대규모 회사라는 홍보아래 참여자 역시 대규모 영농집단을 구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2, 1993년이 되면서 조직 구성원이 많으면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사실을 조직 구성원들이 알게 되었고, 아울러 앞에서 보듯 동일부락에 선·후배, 친구나 친척에 의해 소집단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 수는 5명 내외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1991년에 조성된 13개 위탁영농회사 조직 구성원 수의 변화는 역시 1992년과 1993년에 비해 심하다. 이것은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관계가 미약한 다수인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이 쉽게 노정된 결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해체되거나 조만간 될 것으로 판단<sup>9)</sup>되는 경우는 Cs, Is, Jus, Dj, Ma, My, Md를 제외한 6개사에 이른다.

한편 비교적 짜임새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들도 조직원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조직원 수의 변화는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사항이다. 이들은 대부분 6~7명이던 참여자 수를 3~4명 수준으로 줄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표자의 지휘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회사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탁영농회사들이 과거의 기계화영농단처럼 관련 시설자금, 운영자금, 농한기사업자금 등의 지원 수혜가 없었으면

---

9) 이러한 판단을 가능케 하는 증거를 실제 위탁영농회사에서는 주지 않는다. 다만 조사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첫째 몇몇 구성원들이 간접적으로 해체를 시인한 경우, 둘째 보유 농기계를 내부 조정을 통해 개인들이 나눠 사용 수익하고 변제하는 경우, 셋째 대표자가 내부자료 수집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거절한 경우, 넷째 구성원들간에 부채만 청산되면 떠나겠다는 의견이 팽배할 경우 등을 대체로 간주하였다. 적은 집단형성에 있어 대동소이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목적과 동기(형성원인)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였다.

표 4-5 회사별 대표자의 선정 이유 및 변동 현황

연도	회사	성명	추천이유	연령	학력	영농경력	농기계경력	후계자	영농단	수리능력	변동사항	변동이유	
1991년	Kp	K. J. S.	관공서에서 가장연장자들 임명	42	고졸	22	22	0	0	숙달	'92년 탈퇴	형식상리더로 기재만되어있음	
		K. B. G.	실제 업무추진자	29	고졸	8	8	0		숙달			
	Cs	K. M. J.	과거 팀리더로의 활동성있어 추천	36	고졸	8	8	0	0	보통	'93. 9. 탈퇴	투병	
		I. M. J.	리더가 병으로 탈퇴하자 추천됨	37	중졸	12	10	0		미숙			
	Is	H. H. M.	설립주도, 사원결정 설립	38	고졸	10	10	0	0	보통			
		J. T. G.	과거 팀리더	41	대졸	-	-	-	-	-	'92. 4. 탈퇴	도정공장문제로 의견불일치	
	Jus	K. H. D.	과거 도정공장장의 아들로 추천	37	중졸	14	14	0	0	보통			
		P. S. B.	설립추진자이나 기계일은 못함	42	고졸	12	17	0		미숙	'92년 탈퇴	실제작업하지않아배당이 없자탈퇴	
	선립	Jos	H. D. H.	대외업무단 위해 연장자추천	37	고졸	12	17	0		보통		
			Dp	K. C. S.	연장자이며 대외업무의 실력자	42	고졸	20	7	0		미숙	
Dd		K. J. S.	설립주도, 단독투자	44	고졸	21	3	0		미숙		운영에만참여, 개인회사화	
		L. M. H.	연장자, 대외업무단 위해추대	46	고졸	12	14	0		숙달	'92년탈퇴	실제작업에 큰도움 안됨	
My		L. J. H.	실제 운영, 추진자	36	고졸	12	11	0		보통			
		Hc	L. S. N.	연장자	37	중졸	15	15	0		보통		농기계는 개인별배분, 유명회사인 듯
1992년	Dl	L. H. G.	설립주도, 개인회사임	34	고졸	11	11	0	0	보통			
		Yd	J. S. G.	가족중 농사와 대외업무 적격자	30	고졸	8	8	0	0	보통		
	Md	U. C. H.	젊은층중 연장자로 추대	31	고졸	10	10	0	0	보통	'92년탈퇴	뜻이 안맞아 탈퇴	
		Sy	K. C. G.	설립주도	36	대졸	12	10	0	0	보통		
	K. H. G.		사원들의 추천	35	중졸	12	10	0	0	보통			
	Dj	K. S. H.	설립주도, 실권장악, 공동협의로 운영	37	고졸	15	8	0	0	보통			
		Ma	L. I. S.	설립주도 모두탈퇴하고 혼자 남음	36	농고	15	15	0	0	숙달		시설원예보조매 타인 모두 탈퇴한듯
	선립	Mg	L. S. Y.	설립주도, 거의 개인회사식	36	농고	17	13	0	0	숙달		
			Gd	U. C. Y.	지도소장 정진판씨와 함께 설립주도	30	고졸	11	6	0	0	보통	거의 탈퇴
		U. J. Y.	모두 탈퇴하려고 하자 추대	39	고졸	19	11	0		보통			
Sh	U. D. C.	개인회사, 보조금 받을때 사원고용	37	고졸	11	8	0	0	숙달				
1993년	Pt	H. N.	4H전국회장출신, 대외적 능력우수	39	농고	17	16	0	0	보통			
		Di	H. J. S.	모든업무주도, 결정자, 자금줄	40	고졸	16	16	0	0	숙달		
	Ss	M. H. S.	4H군 회장이고 연장자	31	고졸	5	3	0		보통			
		Id	G. S. G.	연장자이며 출자액 많음	44	중졸	27	27	0	0	숙달		
	Bg	C. H. M.	설립주도, 풍순력부족으로 개인화	41	고졸	16	12	0		보통			
		Hj	K. S. S.	회사설립과정상 형식적 대표	52	고졸	16	16			미숙		
	J. Y. G.		과거조직의 실질적 리더	33	고졸	12	12	0	0	숙달			
	Wh	G. C. S.	주도적으로 조성, 고용인으로 운영중	37	고졸	15	7	0		미숙			

거의가 농기계를 분산, 소유하는 형태로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적 장치는 상당부분 이것을 방지하고 있다.

현재 지속적인 운영<sup>10)</sup>이 유지되고 있는 회사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뉘 볼 수 있다. 하나는 수도작의 수탁영농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Is, Dj)이며, 다른 하나는 소득작목 재배(Ma, My, Dd)나, 농한기사업(Cs, Jus, Sy)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그런데 이들 회사의 공통적 특징은 조직의 와해위기 속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표자가 실권을 쥐고서 조직정비를 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똑같은 위기를 이들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하더라도 미래소득을 기대하면서 조직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Jus의 경우 재투자자가 많아 분배몫은 개인수탁보다 형편없이 적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Ma이나 My은 오히려 인원은 감축하고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새로운 고소득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지속적 운영을 하는 회사의 구성원들은 비교적 친밀한 관계인 경우(Is)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Dj, Ma, My)도 있어 참여자의 태도와 대표자의 경영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농한기사업은 농업생산과 밀접한 폐농기계 수집상(Cs), 도정업(Jus), 시설농업(Dj, My, Dd) 등이다.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지속요인을 먼저 조직원 수가 적다는 점, 다음으로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수라는 것, 마지막으로 적절한 농한기사업을 통해 노동력 이동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위탁영농회사의 작업이외에 구성원의 농작업을 포함시켜 수행하고 있다.

---

10) 지속적인운영과 수익증대와는 다르다. 여기서는 조직이 와해되지 않고 존재의 목표를 향해 활동해(going-concern)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1992년도 조성된 조사대상 회사는 공교롭게도 일가 친척 중심이 많은데, 대부분 이들은 개별소유화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변화도 엇보이지만 어떤 갈등에 의한 경우는 적다. 이 가운데 DI는 농산물 포장판매업을 해오던 조직이 주축이 되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다. 이 회사의 조직은 일면 기업체처럼 되어 있으며, 월급제를 시행하는, 다른 위탁영농회사에서 보기 드문 형태이다. 이것은 과거 유통업의 경영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 사업에 부수적으로 수탁영농사업이 끼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현재 도정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 회사의 경우 수탁영농이 확대, 지속되리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인다. Yd은 친척끼리 농기계를 분산 소유한 경우로 보이며, Mg은 처음부터 주도자 2인에 의해 농기계가 사유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 다른 갈등이 있을 수 없다. 단지 Sy은 비록 일가 친척으로 구성된 회사이나 운영방법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조직 구성원간의 친분관계로 쉽게 정리되었다.

1993년도에 설립한 회사로서 커다란 조직 갈등을 겪고 있는 회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나, Bg와 Hj에서는 구성원간 갈등으로, 특히 대표와 구성원간의 의견 불일치로 구성원 변화가 있었다. Bg는 불만 참여자가 탈퇴하여 나머지 일가 친척이 이용하는 형태이며, Hj는 이질적 조직(이장단과 후계자임)의 충돌에서 젊은 후계자들이 모임을 주도해 나가 현재는 지입제형태의 회사로 변화된 경우이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위탁영농회사의 조직시 유념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일단 조직 구성원간의 밀착 정도가 희박한 사람들을 대규모로 조직하는 것은 조직 와해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둘째, 참여 구성원들의 경영규모 파악과 이것의 수행을 위탁영농회사의 작업계획에 포함시키되 처음부터 과욕을 삼가해야 된다는 점이다. 세번째 수도작에서 농한기때 구성원들이 계속적으로 소득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을 적절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농업이외의 사업만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네번째 소규모조직원 수에 적절한 농기계 대수를 보유토록 유도해야 한다. 무조건 성능만 대규모라고해서 수익이 높은 것은 아니며, 자칫 농기계 과잉보유와 비용 과다지출은 구성원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전면에서 이끌어 갈 유능한 리더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직 지도자에 대한 조직관리 경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관리자 교육이 필요하다.

## 제 5 장

# 위탁영농회사의 사업실태 분석

### 1. 위탁영농회사의 농지 임차 및 농작업 수탁실태 분석

#### 1.1. 농지 임대차 및 농작업 수위탁의 증대요인 분석

##### 1.1.1. 분석시각의 정립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매년 발간되는 위탁영농회사육성 지원요령에 따르면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목적은 일손부족농가에 대한 농작업대행과 농지 임차의 확대를 통한 농업구조 개선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위탁영농회사의 육성 초기인 1991~93년까지는 위탁영농회사의 육성 목적을 일손부족농가의 농작업대행에만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들을 통한 농업구조의 개선에 있었다면 애당초부터 이것은 잘못된 시각과 목적 설정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농지 임대차의 허용을 조문화하고 있는 중이어서 늦게나마 위탁영농회사에는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이러한 법적인 정비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농촌내에는 농지의 임대차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여기에 상당수의 위탁영농회사는 적극적으로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탁영농회사가 본래의 육성 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농경지를 보다 많이 구입 소유하고, 이것을 경영하는 방법이며, 둘째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방법, 셋째는 농작업의 대량수행을 통해 위탁농가의 농업생산비용을 낮춰주는 방법이다. 위 세가지 과정을 통해 위탁영농회사의 구성원들은 개인이 영농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전제조건이다.

현재 위탁영농회사의 농지 소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농업구조 개선의 가장 소망스런 형태가 농지 소유를 통한 규모 확대에 있다는 점과 위탁영농회사와 유사한 조직체로서 영농조합법인에만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농지 소유 불허는 재고의 충분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위탁영농회사의 농지 소유 확대 가능성 분석은 제외하며, 단지 농지의 임대차나 농작업의 수위탁에 대해서만 연구의 초점을 두려고 한다.

먼저 위탁영농회사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농지임대차와 농작업의 수위탁이 현재 농촌내에 많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그 추세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소유농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한가지 문제이다. 이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지주 자신이 직접 농지를 경영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소유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는 경우이다.

지주가 소유 농지를 자경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임금노동자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작업위탁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 지주의 경작규모가 어떠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즉 자기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전제조건이 필요치 않는다. 그러

나 주지하다시피 농업생산은 노동수요의 계절적 변화가 심하여 타인 노동력의 이용 없이는 그 자체가 이뤄지기 매우 어렵다. 단순한 취미 생활정도의 경작이라면 모르되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류의 지주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시해도 전체적인 흐름의 이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의 자경은 앞에서 보듯 두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농지를 임대할 경우에도 크게 두가지 형태로 세분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나 혼합형태도 없지 않으나 그런 것은 비교적 특수성이 강한 지역적 현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하고, 아래 (표 5-1)에 나타난 비교적 일반화된 형태만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지주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농업을 경영할 때 농작물 생산의 모든 과정에 대해 지주는 관리책임을 지게 된다. 지주는 피고용인들의 농작업 수행에 대해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할 수 없다. 피고용인들의 작업태만, 실수 등으로부터 지주는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주는 당연히 임금노동자의 농작업행위를 감시하는데 따른 거래비용<sup>1)</sup>에 당면하게 된다.

농촌내에 잠재실업자들이 많고, 그들의 타산업 취업기회도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가 불안정한 경우 지주는 오히려 자경을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실업상태의 임금노동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지주에게 고용되기를 원하게 되고, 추후의 안정적 피고용을 위해 지주의 노동투하에 대한 감시가 없어도 그들은 충실하게 농작업을

---

1) Williamson(1985)은 거래비용을 사전적·사후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전적 비용이란 계약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수집, 계약 작성, 협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칭하고, 사후적 비용은 계약 이행과정의 법적 행위비용, 계약 재협상비용, 계약 감시비용등으로 보며, 이러한 비용은 그 사회의 이념, 민족성, 교육 등 사회·문화적 성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Jensen & Meckling (1976)은 농촌계약형태와 관련지어 다음의 순합계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주의 감시지출, 둘째 노동자의 기회주의로부터 발생하는 지주 총수입의 손실분, 셋째 발각된 작업자의 기회행동으로 인한 지불 벌칙금, 넷째 노동자의 기회행동을 통해 얻은 순수입(net gain)이다.

표 5-1 지주의 농지 이용방법과 선택

지주의 농지이용방법		토지계약관계	노동계약관계	생산위험
지주자경	임금노동자 이용 농기계농작업 위탁	지주소유 지주소유	시간제 임금계약 기계 노동면적 수수료계약	지주부담 지주부담
농지임대	분할지대 고정지대	분할지대 임대차계약 고정지대 임대차계약	산출물 분배계약 대리점식계약	지주, 임차인분담 임차인부담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외적 강제까지 나타나던 지주 소작인의 관계나, 연고나 계절고의 성행은 그 저변에 이러한 경제적 원인들이 깔려 있는 것이다. 농촌내에 존재하고 있는 가용노동력의 규모에 비해 경작 가능한 토지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경우에는 지주의 자경이 성행될 것이다.

반면 농지에 비해 농촌노동력의 상대적 중요성이 배가 되면, 이러한 경향은 다르게 변화될 것이다. 1970년대 이래 우리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이에 따른 농촌노임의 급상승은 그만큼 임금노동자의 손쉬운 이용을 어렵게 만든다. 지주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 임금노동자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주는 자경보다 농지임대를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토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의 경지기반 정비사업이다. 농지가 잘 정비되면 농지의 집약적인 이용이 가능케 되는데, 이때 더 많은 임금노동자의 고용은 더 많은 거래비용을 지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결국 지주는 자기 스스로 경작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동대체적인 기술이 개발, 수용될 경우 해당 농작업 수행에 따른 거래비용은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지주는 자경을 선호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중·대형 농기계의 보급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위탁영농의 성행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탁농작업이외의 작업은 지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경영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경제·사회적인 여건으로서 지주의 대안적 소득기회도 자경과 농지 임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지주가 손쉽게 농업이외의 소득원을 접할 수 있을 경우 지주는 임금노동자를 이용한 자경에 집착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이상에서는 자원구조나 기술적 조건 그리고 대안적 소득기회 등이 지주로 하여금 자경을 할 것인지, 농지를 임대할 것인지의 의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이제는 세분화된 4가지의 경우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임금노동자를 이용하여 지주가 자경하는 경우와 농기계 소유자에 농작업을 위탁하고 자경하는 두 가지의 경우는 지주가 생산량이나 생산물의 가격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며, 지주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여 자경한다는 점, 그리고 일부작업은 외부에 의존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외부의존 작업내용이 다르다. 첫번째의 경우는 노동력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동에 따른 감시비용이 많이 요구된다. 고용된 임금노동자는 작업시간에 대해 일정율의 임금을 받는다. 따라서 적당히 시간만 소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일부작업을 농기계를 갖고 있는 작업자에 위탁하는 경우는 그 위탁작업이 농기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내용의 질적 수준이 균등하다. 또한 시간에 따른 비용지불이 아닌 작업규모에 따른 비용 지불이기 때문에 작업자측면에서의 자기유인적 성격이 강하다. 한 마디로 임금노동자를 이용한 자경보다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노동성수기 - 지주부담능력 이상 요구되는 노동수요기-의 작업을 위탁할 수 있을 경우 지주에게는 적지 않은 이득이 작용한다. 작업자 입장에서도 보유토지면적이 기계부담면적을 하회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작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부채지주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동력 제공능력이 있다면 농지 임대보다는 이러한 형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지주가 농지를 임대할 때에도 지주와 임차인간의 계약성격에 따라 분할지대계약과 고정지대계약으로 양분된다. 먼저 분할지대계약에 의한 농지의 임대차시에는 생산과 생산물가격의 변화에 대한 위험을 지주와 임차인 사이에 분담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지주의 경영적 능력과 소작인의 감시적 능력을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래비용은 임금노동자를 이용한 지주의 자경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될 것이다. 생산물은 일정 비율로 지주와 임차인간에 분배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노동투입의 자기유인적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시장의 발달로 인해 경영적 정보가 확산되면 임차인의 경영적 능력과 감시적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때는 고정지대계약의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지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아울러 가족노동력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지주는 이와는 반대로 임금노동자를 이용한 자영형태로 전환할 것이다.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노동집약도를 강화해야 될 경우에는 오히려 분할지대계약보다 고정지대계약이 많아질 것이다. 노동에 관련된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노동감시 기술의 개발은 고정지대계약보다 분할지대계약, 분할지대계약보다 임금노동자를 이용한 자경이 광범위해지도록 할 것이다.

고정지대계약에 의한 농지의 경영은 임금노동자를 이용하여 경영하는 것과 비교적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 모든 생산과 가격으로 인한 위험, 노동자 고용에 따른 거래비용은 소작인이 부담한다. 이런 형태는 지주가 농업경영과 상당히 이완되어 있을 때(부재지주)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생산과 가격의 위험성이 높을 때 소작인은 임금노동자 상태로 남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계약의 형태는 소작인의 측면에서 볼 때 경영적, 감시적 능력이 비교적 풍부할 때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농촌의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고 생산 및 가격의 불확실성이 낮을 때 소작인들의 교섭력은 강화되고 이에 따라 고정지대형태의 계약이 많아질 것이다.

표 5-2 농지 이용방법별 지주와 소작인의 선호 랭킹

주 체	내 용	선 호 랭 킹
지 주	위험(Risk)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L > ML > S > O L > ML > S > O
농지임차인 (임금노동자)	위험(Risk) 기업가적 경영기회 (Entrepreneurial opportunity)	L < S < ML > O L > S > ML > O

주: L: Leasehold tenancy with fixed rent(고정지대소작).

S: Share tenancy(분할지대소작).

O: Owner farming with fixed-rate wage labor(임금노동자를 이용한 자경).

ML: Owner farming with fixed-fee Machine-Labor cost(농기계위탁을 이용한 자경).

이상에서 검토된 네가지 농지 이용방법별 선호랭킹을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 1.1.2. 농지 임대차 증대요인의 분석

#### 가) 분석 모델 및 자료

지주가 소유 농지를 자경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하고 임대수수료(지대)만을 취할 것인가의 결정에는 앞에서 보듯 자원이나 기술, 그외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농촌노동력의 감소는 노임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높은 거래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주는 임금노동자를 이용한 자경보다는 농지의 임대차를 통한 경영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둘째, 토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지주에게는 직접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어 자경보다는 소작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토지가치가 높을 경우 잘못된 관리는 지주에게 상대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능한 한 자경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 농지 개량이 진전되어 농지의 노동집약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그에 따른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지주에 의한 자경보다는 소작이 선호될

것이다. 네번째 자본 집약도의 증대는 지주의 관리·감독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켜 준다. 특히, 농기계의 보급은 노동에 대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위탁영농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다섯번째 지주의 대안적 소득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경에 집착할 이유가 적어진다. 농지 임대후 농외취업소득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농지의 임대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요인과 임대차화와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관련 변수간의 관계를 OLS로서 계측하고자 한다.

농지의 임대차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첫째, 농촌노동력 감소에 따른 농촌노임 상승, 둘째 농지의 상대적 중요도 감소, 세번째 농지 개량의 확대, 네번째 자본기술적 변수로서 자본 집약도의 증가와 마지막으로 농외취업 증가와 이에 따른 농외소득 증대이다. 실증적인 분석에 이용된 추정식 및 변수는 아래 식 (1)과 같으며, 양대수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한편 해당년도의 임대차지 규모의 결정은 전년도 관련 변수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된 추정식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시차를 적용하였다.

$$(1) \ln Y_t = A + B \ln W_{t-1} + C \ln P_{t-1} + D \ln I_{t-1} + E \ln K_{t-1} + F \ln O_{t-1} + e_t$$

단, Y: 차용지 면적 비율

W: 농촌노임(원/성인 남자 1일)

P: 논외 상대지가지수(1970=100)

I: 수리안전담울(%)

K: 자본집약도(원/10a)

F: 농외소득률(%)

t: 시간변수(년도)

e: 오차항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가설과 현실적 관련 변수의 변화를 살펴볼 때 경지의 차용지 면적과 상대지가는 부(負)의 관계로 나타나야 하며 농촌노임과 수리안전담을, 그리고 농외소득률과는 정(正)이어야 할 것이다. 농업자본의 경우 농기계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이 변수와는 역의 관계가 나타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농림수산부의 「농가경제생산비결과보고」의 1970~93년 자료이다.

#### 나) 분석결과 및 전망

회귀식 추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표 5-3)에서 보면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가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농업노동력의 부족과 그것의 질적인 저위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지주로 하여금 자경보다는 임대를 선호케 하고 있다. 여기에 상대지가 하락은 그것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농지 개량 정도가 높아짐에도 임대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농지 개량이 완료된 논외의 경우 노동집약적 이용이 요구되는데, 그럴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기계의 급속한 보급은 역시 지주로 하여금 자경을 하도록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외소득 증대기회의 확대는 지주의 농지 임대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3 파라메타 추정치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for H0: Parameter=0	Prob >  T
A	-5.5670	14.5360	-0.383	0.7068
B	0.2828	0.2613	1.083	0.2950
C	-0.1518	0.1725	-0.880	0.3919
D	1.9880	3.9534	0.503	0.6219
E	-0.1071	0.2082	-0.514	0.6141
F	0.2833	0.3693	0.767	0.4542

$R^2 = 0.9083$

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관련 변수들의 변화 추세를 살펴봄으로서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1.1.3. 농작업 수·위탁 증대요인의 분석

농촌노동력의 감소추세속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의 보급은 노동력 이용에 관련된 거래비용을 한층 절감시켜 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 특히, 노동과 기계가 결합되어 공급되는 위탁 영농의 경우 작업의 질이 균등할 뿐만 아니라 작업면적단위로 작업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이용한 수탁영농자에 자기유인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지주로서는 일시적인 대량 노동투하를 요구하는 농작업은 위탁영농 대행자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자가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영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탁영농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성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전국적인 지표는 없다. 다만 1991년부터는 농림수산부의 「농가생산비조사결과보고」에 위탁영농비라는 비목이 새로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농촌노동력이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따라서 농기계 보급도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1980년 전후의 농기계 소유자의 위탁작업 수행실적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중·소형 농기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 시기에 있어서 기종별 평균 임작업률(타가이용면적/총이용면적\*100, 수탁작업률과 동의어)은 트랙터가 56%, 콤바인이 51%, 이앙기와 바인더는 약 40% 정도였으며, 경운기는 29% 수준이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트랙터에 의한 경운기의 대체와 콤바인에 의한 바인더 대체가 발생하고 있었다(김영식의; 1980. 5).

농촌노동력 부족과 이에 따른 농촌노임의 급속한 상승과 중·대형 농기계의 보급이 활발하게 된 1980년대 후기에 있어서 기종별 임작업률을 보면 1980년대 전후에 비해 매우 높다(표 5-4). 이것은 그만큼 위

탁 농작업 수행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나아가 농기계 보급률의 증가를 고려할 때 현재 농촌내에는 상당히 많은 농작업 수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지규모별 보유 농기계의 임작업률을 보면 규모가 작은 농가의 그것은 큰 농가에 비해 훨씬 높다. 이것은 소규모 경영농가의 경우 자경을 통한 농업소득으로 가족의 생활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입하여 전문적인 임작업자로 전환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조사에 따르면 임작업이 경영수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농작업 수탁농가는 전체의 75%에 이르고 있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농작업의 위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속성과 농기계의 기술적·경제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농가의 경영규모는 호당 1ha 내외의 소규모이다. 반면 근년에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의 가격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농가의 농

표 5-4 농가의 경지규모별 농기계 임작업률

단위: %

구 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1ha 미만	96.6	94.0	98.0	97.3
1 - 2	90.9	85.3	94.0	93.2
2 - 3	88.1	76.0	90.1	83.8
3 - 4	80.8	65.0	85.2	56.9
4 - 5	53.3	57.1	76.8	75.7
5ha 이상	44.8	29.8	49.9	48.0
평 균	87.6	79.5	90.5	86.5

주: 임작업률: (타가이용면적/총이용면적) \* 100

자료: 강정일 외, 「농업기계화 사업의 장기정책방향 연구」, C8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p.71.

작업에 농기계를 사용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으로 농기계 운영과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전하기가 불가능하다. 농기계의 기종별 수지균형 규모가 농가의 경작규모를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표 5-5). 타인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농기계를 이용한 수·위탁 농작업 수행의 성행은 임대차 면적의 증가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규모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치 않고 있는 농민들은 소유면적의 자영만으로는 생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적어도 가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소득원을 찾게 될 것이다. 먼저 비농업적 고용에 의한 임금소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농가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겸업소득은 전체 농외소득 가운데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농외소득 가운데 겸업소득의 비중은 18%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1980년대 초에는 10% 수준으로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도 10~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농업적 겸업기회가 적거나 혹은 농민이 그러한 업종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농민은 농업내에서 소득 증대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 이 때 소규모 또는 무토지소유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세가지

표 5-5 기종별 경영수지 균형규모, 1990

단위: ha

구 분	손익분기규모	소득기준수지균형규모	이윤기준수지균형규모
경운기	0.78	0.97	2.32
트랙터(30hp급)	4.99	7.34	9.49
이앙기(4조식)	0.54	2.59	10.5
콤바인(3조식)	2.53	9.99	13.75

자료: 강정일 외, 「2000년대 농업기계화의 전망과 과제」, (91-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8. p.60에서 발췌.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농지임차의 확대와 이의 경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이며, 둘째는 농기계 구입과 이를 이용한 농기계 임작업 소득 증대, 셋째는 위의 두가지 형태의 병행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농업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첫번째의 경우로서 자작지의 농업소득만을 가지고 가계비를 충족키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차용지 확대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차용한 논으로부터의 소득을 제외한 농업소득만으로도 가계비를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논을 차용하지 않을 경우 가계비 충족이 어렵다. 1980년대 이후에는 차용지를 포함한 농가 전체의 농업소득만으로도 가계비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별 다른 대안적 소득기회가 없는 농가의 경우 차용지 확대를 통한 소득의 확대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결과로서 김성호(1986)에 의하면 임차농가의 70% 정도는 경작규모 확대와 이를 통한 소득 증대에 임차의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번째로는 농기계 구입과 이것을 이용한 임작업 소득증대이다. 이것은 앞에서 밝힌 두가지 이유로 인해 애초부터 농기계 구입농가는 타인 작업 수행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었다. 실제 대부분의 농기계 이용실태를 보면 농기계 작업면적의 80~90% 이상이 타인작업(임작업, 수탁작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농작업의 수·위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 농작업의 수·위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하여 (표 5-6)을 작성하였다.

## 1.2. 위탁영농회사의 농지 임차 및 농작업 수탁실태 분석

앞에서의 분석에서 보듯 우리 농촌내에 농지의 임대차와 농작업의 수·위탁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한 계층(성격 규명에는 다양하겠지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닌지는 분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지금 위탁영농회사가 농지의 임차나 수탁영농

표 5-6 농작업 수탁 관련 요인

작용방향 항목	위탁촉진적	위탁억제적 · 폐지적
기반정비	완료	미정비
토지	소규모경영면적 먼거리 소재 경작지 토지조건 열악	대규모경영면적 근거리 소재 경작지 토지조건 양호
노동력	농외유출, 상실, 노령화, 여성화	노동력존재, 농업에 리턴
기계시설	기계미소유, 고가의 농기계가격	기계소유
위탁작업	저요금, 작업내용 균질 기술실패(특히 육묘)	고요금, 작업내용 조잡, 적기작업 불필요
영농형태	집약작목에 전문화	개별복합 경영화
경제·사회의식	개별·합리주의 지향	공동체적·사회합리성 지향

자료: 大原興太郎, [稻作受託組織と農業經營], 日本經濟評論社, 1985. p. 225에서 수정함.

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는 그것을 통한 농업구조 개선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

위탁영농회사의 전체적인 영농작업규모는 제3장의 분석에서 보듯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3-14 참조). 위탁영농회사 1개사당 주요 작업규모는 1991년 141.9천평에서 1993년에는 130.6천평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위탁영농회사의 수탁영농규모는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참여자 수의 변동, 혹은 새로운 사업도입 등과 같은 여러 변수들의 변화는 직접수탁 영농규모를 변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아직 위탁영농회사가 안정적인 사업체로 정착되지 못한, 조성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형태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위탁영농회사에서 수행하는 수탁영농은 크게 농지 임대차에 의한 것, 완전수탁작업, 부분수탁작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먼저 조사대상인 21개 위탁영농회사 가운데 농지의 임차경영을 하는 회사는

1993년말 현재 11개사이다. 조성 초기에는 농지를 임차하지 않다가 이후 임차를 한 회사는 3개사이며, 농지를 임차했으나 중단한 회사는 1개사이다.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임차규모 변화를 (표 5-7)에서 보면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1991년에 조성되어 농지 임차를 하고 있는 5개사의 임차면적은 Is과 My을 제외하면 모두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는 회사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다. Is의 경우 운영의 기본사업이 수탁영농이며, 지향목표 역시 농지의 대규모경영이기 때문에 My은 시설영농을 소득사업으로 추가하여 수행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농지를 임차 확대한 것이다. Dp은 최근 내부경영의 부실과 부채 누증으로 경영이 어려울 지경이고, Cs는 강력한 지도자의 병환에 따른 탈퇴와 수익성 높은 폐농기계 수집 판매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Dd은 심한 구성원들의 변동 결과 개인사업체의 성격으로 꾸러나가면서 겪는 경영규모 확대의 곤란에 직면해 있는 등의 문제로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는 것이다. 위탁영농회사 참여자 1인당 작업면적도 구성원의 격심한 변화과정 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3년말 현재 완전수탁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총 21개사 가운데 5개사를 제외한 16개사이다.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작업규모도 앞서와 같이 회사마다 차이가 많다. 또한 위탁영농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완전수탁면적이 증가추세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1991년에 조성된 위탁영농회사의 평균 완전수탁면적은 약 143천평(47.7ha) 정도이며, 조성 초기에 비하면 약간 적어진 규모이다. 그러나 개개회사의 완전수탁작업규모의 변화를 보면 결코 감소추세만은 아님을 볼 수 있다. Jos과 Dd을 제외한 6개사는 완전수탁작업규모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1992년도에 조성된 회사들은 Dj를 제외하면 모두 감소하였다(표 5-8).

한편 참여자 1인당 완전수탁작업 면적을 보면 대체로 늘어가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1991년도에 Jos된 위탁영농회사의 평균 1인당 완전수

표 5-7 위탁영농회사의 임차면적 추이

단위: 천평

년도	회사명	임 차 면 적			임차면적/참여자수(천명/명)			임차면적/농기계총가액(평/천원)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년 설립	Is*	-	25.0	67.0	-	6.3	16.8	-	0.22	0.75
	Jus*	-	-	-	-	-	-	-	-	-
	Jos	-	-	-	-	-	-	-	-	-
	Dp*	8.0	1.6	0.9	1.3	0.3	0.2	0.06	0.01	0.01
	Cs	75.0	53.0	20.0	18.8	13.3	5.0	4.63	1.41	0.20
	Dd	40.0	25.0	20.0	8.0	12.5	6.7	0.42	0.36	0.45
	My*	-	4.5	6.0	-	0.5	1.5	-	0.04	0.07
	평균	17.6	15.6	16.3	2.7	2.8	3.8	0.20	0.15	0.17
1992 년 설립	DI	-	60.0	60.0	-	15.0	20.0	-	0.66	0.5
	Yd	-	-	-	-	-	-	-	-	-
	Md*	-	-	10.0	-	-	2.0	-	-	0.10
	Sy*	-	5.5	8.5	-	1.8	2.83	-	0.06	0.11
	Dj*	-	-	-	-	-	-	-	-	-
	Ma	-	-	-	-	-	-	-	-	-
	Mg	-	2.6	-	-	1.3	-	-	0.02	-
	평균	-	9.7	11.2	-	2.4	3.4	-	0.10	0.12
1993 년 설립	Pt*	-	-	62.0	-	-	10.3	-	-	0.52
	Di*	-	-	14.0	-	-	2.8	-	-	0.17
	Ss*	-	-	-	-	-	-	-	-	-
	Id*	-	-	10.0	-	-	2.0	-	-	0.09
	Bg	-	-	-	-	-	-	-	-	-
	Hj	-	-	-	-	-	-	-	-	-
	Wh	-	-	-	-	-	-	-	-	0.00
	평균	-	-	12.3	-	-	2.7	-	-	0.12
전체평균	17.6	12.7	13.3	2.7	2.68	3.37	0.20	0.13	0.13	

주: \*는 실질적 운영회사.

탁면적은 1991년 22.5천평에서 1992년 27.3천평, 1993년 33.3천평으로 증가하고 있다. 7개 회가별로 계산해 보아도 Dd을 제외하면 모두 늘어나고 있다. 단지 농기계가액(천원)에 대한 완전수탁작업면적은

약간 적어져 효율성문제는 남아 있다. 1992년에 조성된 위탁영농회사의 참여자 1인당 완전수탁면적도, 총완전수탁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줄어들고는 있지 않다.

위탁영농회사의 부분수탁작업규모를 보기 위해 (표 5-9)에서 (표 5-12)를 작성하였다. 주요 작업인 경운, 정지, 이앙, 수확작업의 전체적인 작업규모의 변화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1개 위탁영농회사의 부분수탁작업규모는 약 100~150천평 수준이다. 반면 참여자 1

표 5-8 위탁영농회사의 완전수탁면적 추이

단위: 천평

년도	회사명	임차면적			임차면적/참여자수(천평/명)			임차면적/농기계총가액(평/천원)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년 설립	Is*	33	42	42	8.3	10.5	10.5	0.27	0.37	0.47
	Jus*	96	100	144	12.0	20.0	28.8	1.48	0.55	0.84
	Jos	75	90	60	5.0	11.3	12.0	1.26	1.04	0.98
	Dp*	228	240	272	38.0	40.0	54.4	1.68	2.09	2.13
	Cs	76	186	186	19.0	46.5	16.5	4.69	4.94	1.82
	Dd	363	198	130	72.6	99.0	43.3	3.77	2.82	2.91
	My*	164	207	165	41.0	20.7	41.3	1.43	1.77	1.80
	평균	147.9	151.9	142.7	22.5	27.3	33.3	1.69	1.47	1.45
1992 년 설립	DI	-	-	-	-	-	-	-	-	-
	Yd	-	60	48	-	20.0	16.0	-	0.65	0.56
	Md*	-	138	60	-	27.6	12.0	-	1.18	0.62
	Sy*	-	80	40	-	26.7	13.3	-	0.94	0.52
	Dj*	-	93	160	-	13.3	40.0	-	0.70	1.62
	Ma	-	60	30	-	15.0	10.0	-	1.06	0.29
	Mg	-	-	-	-	-	-	-	-	-
	평균	-	61.6	48.3	-	15.4	14.7	-	0.62	0.50
1993 년 설립	Pt*	-	-	-	-	-	-	-	-	-
	Dj*	-	-	140.0	-	-	28.0	-	-	1.65
	Ss*	-	-	40.0	-	-	8.0	-	-	0.55
	Id*	-	-	-	-	-	-	-	-	-
	Bg	-	-	-	-	-	-	-	-	-
	Hj	-	-	96.0	-	-	19.2	-	-	0.92
	Wh	-	-	60.0	-	-	20.0	-	-	0.48
평균	-	-	48.0	-	-	10.5	-	-	0.47	
전체평균	147.9	106.7	79.7	22.5	22.3	19.7	1.69	1.05	0.80	

주: 단위는 앞의 표와 같음. \*는 실질적 운영회사.

인당 작업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조성년도에 따른 각 회사의 변화나, 모든 회사의 평균적 추세도 그렇다. 이는 조직 구성원 수는 줄어든 반면 작업면적은 그보다 적은 수준으로 감소한 결과, 다시 말하면 보다 짜임새 있는 작업계획과 수행의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의 간접지표로 볼 수 있는 농기계 보유가액(천원)당 작업면적과 마력(조)당 작업면적은 낮아지고 있다. 거꾸로 보면 상대적 과잉 농기계 보유가 엿보이는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된 위탁영농회사의 수탁영농형태를 요약한 것이 (표 5-13)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의 수탁작업에서 일률적인 변화 추세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회사마다 주변 여건과 내부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아직은 안정되지 못한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천차만별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몇가지 측면에서 비교적 일반화될 수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먼저 비교적 내부의 갈등이 적고, 법인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작업규모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크거나 증가추세이다. 물론 농한기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아무래도 농작업 규모는 적어진다. 개인경영형태로 운영되거나 지입제, 농기계가 개인 분배된 경우는 임차면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의 작업규모도 작아지고 있다. 세가지 수탁영농형태의 변화를 보면 위탁영농회사의 참여자 1인당 임차면적은 그다지 규모도 크지 않으며 증가추세를 찾기도 어렵다. 반면 완전수탁과 부분수탁은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 아직은 완전과 부분수탁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위탁영농회사의 경영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은 없고, 생산으로 인한 책임과 위험부담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할뿐만 아니라 임차면적 증대시 인력 동원의 한계 등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기계가액당 또는 규격당 작업면적이 작아져 비효율적인 농기계 이용이 엿보인다. 이것은 탈퇴자들이 농기계를 남겨놓고 나가고 또한 일시작업 수요에 대응키 위해 추가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의 원인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표 5-9 경운작업의 규모 변화

	회사	총면적			천평 / 명			평 / 천원			천평 / 대			천평 / 마력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1991년도 설립	Cs	36	81	106	9.0	20.3	26.5	3.03	4.09	2.56	9.00	16.20	17.67	0.24	0.42	0.38
	Is	340	187	300	85.0	46.8	75.0	7.99	5.23	9.96	56.67	26.71	60.00	1.45	0.68	1.38
	Jus	240	360	102	30.0	72.0	20.4	8.33	3.94	1.20	40.00	40.00	11.33	1.11	0.77	0.22
	Jos	75	150	180	5.0	18.8	36.0	4.10	4.33	5.42	25.00	30.00	36.00	0.86	0.87	1.05
	Dp	0	0	37.5	0.0	0.0	7.5	0.00	0.00	0.70	0.00	0.00	7.50	0.00	0.00	0.12
	Dd	0	0	0	0.0	0.0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My	59	31	15	14.8	3.1	3.8	1.82	0.80	0.52	14.75	6.20	3.00	0.36	0.16	0.08
	평균	107.1	115.6	105.8	16.3	20.7	24.7	3.59	2.95	2.60	25.00	20.74	20.01	0.65	0.48	0.43
1992년도 설립	Di		300	120		75.0	40.0		104.53	2.73		100.0	120.0		2.08	3.16
	Yd		60	72		20.0	24.0		2.39	3.48		30.00	36.00		0.83	1.00
	Md		120	240		24.0	48.0		1.92	4.30		30.00	60.00		0.58	1.17
	Sy		80	80		26.7	26.7		2.84	3.15		40.00	40.00		0.91	0.91
	Dj		0	0		0.0	0.0		0.00	0.00		0.00	0.00		0.00	0.00
	Ma		100	60		25.0	20.0		2.45	1.12		3.33	15.00		0.38	0.21
	Mg		56	66		28.0	33.0		1.75	2.45		18.67	22.00		0.39	0.46
	평균		102.3	91.1		25.6	27.7		2.94	2.42		32.55	30.38		0.61	0.59
1993년도 설립	Pt			59		9.8			1.30			11.80			0.31	
	Di			20		4.0			0.55			10.00			0.17	
	Ss			135		27.0			3.53			33.75			0.75	
	Id			300		60.0			7.00			100.0			2.22	
	Bg			59		19.7			1.20			19.67			0.36	
	Hj			40		8.0			1.11			13.33			0.28	
	Wh			120		40.0			1.99			30.00			0.40	
	평균			104.7		22.9			2.38			30.54			0.59	
전체평균	107.1	108.9	100.5	16.3	22.8	24.8	3.59	2.95	2.46	25.00	25.00	25.75	0.65	0.53	0.52	

주: 보유가액 및 마력, 대수 기준은 트랙터임.

표 5-10 정지작업의 규모 변화

회사	총면적			천평 / 명			평 / 천원			천평 / 대			천평 / 마력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1991년 도 설 립	Cs	30	81	106	7.5	20.3	26.5	2.52	4.09	2.56	7.50	16.20	17.67	0.20	0.42	0.38
	Is	340	240	300	85.0	60.0	75.0	7.99	6.71	9.96	56.67	34.29	60.00	1.45	0.88	1.38
	Jus	240	360	128	30.0	72.0	25.6	8.33	3.94	1.50	40.00	40.00	14.22	1.11	0.77	0.28
	Jcs	75	150	180	5.0	18.8	36.0	4.10	4.33	5.42	25.00	30.00	36.00	0.86	0.87	1.05
	Dp	0	0	37.5	0.0	0.0	7.5	0.00	0.00	0.70	0.00	0.00	7.50	0.00	0.00	0.12
	Dd	0	0	10	0.00	0.00	3.3	0.00	0.00	0.82	0.00	0.00	5.00	0.00	0.00	0.11
	My	59	31	15	14.8	3.1	3.8	1.82	0.80	0.52	14.75	6.20	3.00	0.36	0.16	0.08
	평균	106.3	123.1	110.9	16.2	22.1	25.9	3.56	3.14	2.73	24.80	22.10	20.99	0.64	0.51	0.45
1992년 도 설 립	Dl		300	120		75.0	40.0		104.53	2.73		100.0	120.0		2.08	3.16
	Yd		60	72		20.0	24.0		2.39	3.48		30.00	36.00		0.83	1.00
	Md		120	240		24.0	48.0		1.92	4.30		30.00	60.00		0.58	1.17
	Sy		80	80		26.7	26.7		2.84	3.15		40.00	40.00		0.91	0.91
	Dj		235	80		33.6	20.0		4.55	2.14		47.00	16.00		0.94	0.32
	Ma		0	0		0.0	0.0		0.00	0.00		0.00	0.00		0.00	0.00
	Mg		108	100		54.0	50.0		3.38	3.71		36.00	33.33		0.75	0.69
	평균		129.0	98.9		32.3	30.1		3.71	2.62		41.05	32.95		0.77	0.64
1993년 도 설 립	Pt			59			9.8			1.30			11.80			0.31
	Di			40			8.0			1.11			20.00			0.33
	Ss			135			27.0			3.53			33.75			0.75
	Id			300			60.0			7.00			100.0			2.22
	Bg			59			19.7			1.20			19.67			0.36
	Hj			0			0.0			0.00			0.00			0.00
	Wh			160			53.3			2.65			40.00			0.53
	평균			107.6			23.5			2.44			31.38			0.61
전체평균	106.3	126.1	105.8	16.2	26.3	26.1	3.56	3.41	2.59	24.80	28.93	27.09	0.64	0.62	0.55	

표 5-11 이양작업의 규모 변화

	회사	총면적			천평 / 명			평 / 천원			천평 / 대			천평 / 마력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1991 년도 설립	Cs	120	93	9	30.3	23.3	2.3	-	31.76	0.85	-	31.00	2.25	-	6.64	0.50
	Is	319	240	300	79.8	60.0	75.0	22.58	14.09	25.11	79.75	48.00	60.00	13.29	8.00	10.00
	Jus	180	240	94	22.5	48.0	18.8	58.06	16.50	8.20	180.0	80.00	31.33	45.0	15.00	5.88
	Jos	75	90	150	5.0	11.3	30.0	8.49	14.35	40.49	12.50	15.00	25.00	2.34	2.81	4.69
	Dp	0	0	37.5	0.0	0.0	7.5	0.00	0.00	3.39	0.00	0.00	12.50	0.00	0.00	2.08
	Dd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My	15	25	11	3.8	2.5	2.8	1.26	1.64	1.38	7.50	8.33	3.67	1.25	1.39	0.61
	평균	101.3	98.3	85.9	15.4	17.6	20.1	9.94	8.70	9.42	32.23	25.48	20.74	5.96	4.59	3.76
1992 년도 설립	DI		300	600		75.0	200.0		10.57	31.91		50.0	100.0		8.33	16.67
	Yd		15	24		5.0	8.0		2.27	5.40		7.50	8.00		1.25	1.50
	Md		60	60		12.0	12.0		4.95	6.56		12.00	12.00		2.31	2.31
	Sy		60	80		20.0	26.7		5.52	8.89		8.57	11.43		1.88	2.50
	Dj		72	100		10.3	25.0		4.64	7.62		24.00	33.33		4.00	5.56
	Ma		0	36		0.0	12.0		0.00	2.71		0.00	0.00		0.00	0.00
	Mg		172	130		86.0	65.0		10.16	10.82		34.40	26.00		6.14	4.64
	평균		97.0	147.1		24.3	44.8		7.51	12.91		22.63	35.52		4.14	6.60
1993 년도 설립	Pt			89		14.8			11.49			12.71			3.18	
	Di			0		0.0			0.00			0.00			0.00	
	Ss			45		9.0			15.66			22.50			5.63	
	Id			160		32.0			19.85			40.0			8.00	
	Bg			59		19.7			4.47			29.50			4.92	
	Hj			0		0.0			0.00			0.00			0.00	
	Wh			20		6.0			2.34			10.00			1.67	
	평균			53.3		11.7			6.22			16.95			3.52	
전체평균	101.3	97.6	95.5	15.4	20.4	23.6	9.94	8.07	9.85	32.23	23.98	25.06	5.96	4.35	4.75	

주: 보유가액 및 대수, 조수 기준은 이양기임.

표 5-12 수확작업의 규모 변화

	회사	총면적			천평 / 명			평 / 천원			천평 / 대			천평 / 마력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1991년도 설립	Cs	297	84	129	74.3	21.0	32.3	92.81	9.13	4.21	297.0	42.00	32.25	74.25	12.00	9.21
	Is	397	246	303	99.3	61.5	75.8	11.48	8.09	16.62	79.40	49.20	75.75	23.35	12.95	20.20
	Jus	180	240	180	22.5	48.0	36.0	7.44	4.96	4.01	45.00	34.29	25.71	12.0	9.23	6.92
	Jos	75	60	192	5.0	7.5	38.4	5.36	1.98	15.48	75.00	20.00	64.00	18.75	5.00	16.00
	Dp	0	0	37.5	0.0	0.0	7.5	0.00	0.00	1.75	0.00	0.00	6.25	0.00	0.00	1.79
	Dd	0	0	0	0.0	0.0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My	71.4	84.4	19.2	17.9	8.4	4.8	1.50	2.29	0.73	14.28	21.10	4.80	3.97	5.63	1.28
평균	145.8	102.1	123.0	22.2	18.3	28.7	5.06	3.67	5.46	42.52	24.63	28.69	11.73	6.61	7.75	
1992년도 설립	Dl		300	600		75.0	200.0		6.52	12.66		60.0	200.0		20.00	66.67
	Yd		60	48		20.0	16.0		1.56	1.24		60.00	24.00		8.57	4.36
	Md		320	300		60.0	60.0		11.71	17.60		75.00	150.0		25.00	50.00
	Sy		100	153		33.3	51.0		3.09	5.85		25.00	51.00		7.69	15.30
	Dj		186	200		26.6	50.0		4.43	8.33		62.00	66.67		16.91	18.18
	Ma		100	45		25.0	15.0		-	2.63		-	45.00		-	15.00
	Mg		162	148		81.0	74.0		5.02	5.56		81.00	74.00		20.25	18.50
평균		172.6	213.4		43.1	65.0		5.57	7.59		63.58	93.38		18.30	25.76	
1993년도 설립	Pt			89			14.8			2.07			17.80			5.93
	Di			40			8.0			1.84			20.00			6.67
	Ss			60			12.0			8.21			30.00			10.00
	ld			300			60.0			7.23			75.00			18.75
	Bg			150			50.7			4.06			50.00			13.64
	Hj			160			32.0			5.91			40.00			12.31
	Wh			100			33.3			6.70			33.33			9.09
평균			128.4			28.1			4.67			39.09			11.53	
전체평균		145.8	137.3	154.9	22.2	28.7	38.3	5.06	4.67	5.95	42.52	40.05	47.16	11.73	11.05	13.17

주: 보유가액 및 대수, 조수의 기준은 콤바인임.

표 5-13 1991~92년 설립 운영회사의 수탁영농형태

단위: 1인당 천평

구 분	회사	임차면적	완전수탁	부분수탁(수확)	기타 소득사업	地帶	기 타
1991	Cs	감소(5.0)	증가후 고정(46.5)	감소후 증가(32.3)	폐농기계수집, 판매, 직판	중간	
	Is	증가(16.8)	증가 (10.5)	감소후 증가(75.8)	보리재배	평야	
	Jus	없음(0.0)	증가 (28.8)	증가후 감소(36.0)	정미소·직판	평야	
	Dp	감소(0.2)	증가 (54.4)	'93시작 (7.5)	없음	평야	
	My	증가(1.5)	감소후 증가(41.3)	감소 (4.8)	시설농업(고추, 버섯)	중간	
1992	Md	증가(2.0)	감소 (12.0)	불변 (60.0)	없음	산간	
	Sy	증가(2.8)	감소 (13.3)	증가 (51.0)	퇴비공장, 벚짚수거·판매	산간	
	Dj	없음(0.0)	증가 (40.0)	증가 (50.0)	없음	평야	
개인 경영	Dd	감소(6.7)	감소 (43.3)	없음	보리경작, 시설농업	중간	
	Dl	증가(20.0)	없음	증가 (200.0)	쌀포장판매, 조정	평야	
	Ma	없음	감소 (10.0)	감소 (15.0)	시설농업, 퇴비	산간	
	Mg	없음	없음	감소 (74.0)	벚짚수거·판매	산간	
지입제	Jos	없음	증가 (12.0)	증가 (38.4)	도시직판장	평야	
개인분배	Yd	없음	감소 (16.0)	감소 (16.0)	없음	평야	

## 2. 위탁영농회사의 농한기 소득사업실태 분석

위탁영농회사에서 농한기소득사업을 도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영농수탁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농한기소득사업이 영농수탁사업보다 소득률이 높다는 판단이며, 두번째는 수탁영농 수행시기 이외의 농한기에 적절한 소득이 없이는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공동체적인 법인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대부분은 농한기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농한기소득사업의 형태는 대개 농업생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위탁영농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한기사업형태를 대별하면 보다 고소득작물이나 농한기 이용작물 재배(Ⅰ)와 생산이외의 가공, 수집·판매 등(Ⅱ)이다. 조사대상 21개 위탁영농회사 가운데 농한

기소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11개사(Is의 경우에는 1992년도에 보리경작 후 1993년에는 비로 인해 경작치 못했으나 계속 의지가 있어 포함시킴)로서 52.3%에 이른다. (I) 형태의 농한기소득사업만을 하는 위탁영농회사는 3개사, (II) 형태만 하는 회사는 5개사, 두형태 모두 하는 회사는 3개사 이다(표 5-14).

1991년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조사대상 7개 위탁영농회사 가운데 농한기 소득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6개사로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설립당시부터 농한기사업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 1991년 당시에는 Cs와 Jus만이 농한기사업을 하였으나 그후 2년 사이에 4개사가 추가로 농한기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1992년에 설립된 회사도 초기에는 Dd와 Ma만이 농한기소득사업을 하였으나 다음 해에는 Mg과 Sy도 이들 대열에 끼어 들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농한기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이란 판단이 가능하다.

회사별, 년도별 농한기소득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표 5-15)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I)형태 농한기사업의 경우 시설영

표 5-14 농한기 소득사업의 내용

년도	회사명	I	II
1991	Cs	-	개답정리('91~), 쌀직판(서울, '91~), 폐농기계수집·판매('93~)
	Is	보리경작('93~)	-
	Jus	보리경작('92~)	조정('92~), 쌀직판('91~)
	Jos	보리경작('92~)	읍내에 판매장 보유
	Dd	알로에제배('93~)보리경작('93~)	-
	My	시설농업-고추, 버섯('93~)	-
1992	Dd	-	청결미 포장·판매('92~), 정미(예정)
	Ma	시설농업-고추('92~)	퇴비('92~)
	Mg	-	베일리어용 벧짚수거·판매('93~)
	Sy	-	퇴비공장('93~), 벧짚수거·판매('93~)
1993	Pt	-	축사건축('93~)

주: Kp(정미), Jos(토목공사), Dd(정미, 시설농업, 농기계수리), Hj(한우농장), Sy(도정 1993.12.인수), Dj(시설농업), Is은 1993년 실적이 없으나 지속적인 의지가 있는 회사 여서 포함시킴.

표 5-15 회사별, 년도별 농한기사업 현황

년도	회사	항 목 별	1991	1992	1993	
1991년 도 설 립	Cs	개답정리	20일간*130천원(일)	30일간 * 130천원(일)	30일*130천원(일)	
		서울에 쌀직판	500가마*10천원(가마)	340가마 * 10천원(가마)	0가마	
		폐농기계수집·판매	-	-	수입:30,000천원 비용:16,000천원	
	Is	보리경작	-	임차농지25천평 수입22,092천원 (*임차부수입이 됨) 비용중 임차료는 0원	많은비로 인하여 하지 못함	
	Jus	쌀 직판	3,000가마 * 4천원(가마)	3,000가마 * 3천원(가마)	소매상(7,000원), 소비자(8,190천원) 약 5,063가마*3천원(가마)	
		운 반	-	-	수입: 9,552천원	
		도정	-	10,000가마 * 3천원(가마)	23,550가마 * 3천원(가마)	
		보리경작	-	-	24천평 * 8.3천원(평), 비용중 임차료0원, 기타비용은 250원(평당)	
	JOs	보리경작	-	수입:60천평 * 1천원/평, 임차료 0원, 기타비용은 333원(평)	18천평 * 1천원(평), 임차료: 0, 기타비용은 333원(평)	
	Dd	보리경작	-	-	4천평 * 1,005원(평), 임차료: 0	
	My	버섯재배	-	-	2동(164평), 수입:7,000천원, 비용:5,000천원(경영비)	
		시설고추하우스	-	-	'93하반기 시설설치(610평)	
	1992년 도 설 립	DI	청결미포장·판매	-	8,400가마*3,000원(가마)	25,000가마*3,000원(가마)
		Sy	벗짚수거·판매	-	수입: 5,000천원	수입 : 6,000천원
			퇴비공장	-	-	시설만 설치함(150평)
Ma		퇴비제조판매	-	수입:26,000천원, 비용: 10,000천원	수입:17,000천원, 비용:13,000천원	
	고추 하우스	-	시설설치(800평)	수입:32,000천원, 비용:14,960천원		
Mg	베일리어용 벗짚수거·판매	-	-	수입:20천원 * 100원(평) 비용: 4,390천원		
93년 도 설 립	Pt	축사건축	-	-	2동(60평) * 6평 * 40천원(일당) * 12.5일(수입)	

농과 같은 것을 제외하면 년도마다 변화가 적지 않다는 것이며, (Ⅱ) 형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탁영농과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농한기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영농회사의 수탁작업규모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예컨대 Cs의 경우 임차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완전수탁면적은 증가후 감소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1인당 부분수탁면적도 2.3천평(이양작업 기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Jus의 경우에도 임차지는 아예 없고, 완전수탁면적은 약간 증가하지만 경운작업을 전년 대비 1/3 수준으로, 이양작업은 1/2 수준으로 적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위탁영농회사에서 농한기소득 사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수탁영농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시사를 던지고 있다.

## 제 6 장

#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성과 분석

### 1.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입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입은 앞에서의 사업실태 분석에서 보듯 크게 수탁수입(농지 임대차, 완전수탁작업, 부분수탁작업에 의한 수입)과 농한기사업(위·수탁수입이외의, 예컨대 시설농업수입, 퇴비제조판매수입, 가공수입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조사대상 21개사 가운데 수탁수입과 농한기사업수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회사는 10개사이다.

위탁영농회사 1개사당 연간 총수입은 적게는 27,630천원에서 많게는 423,383천원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것을 평균해서 보면 1993년도 총수입은 120,671천원이다. 이 가운데 수탁수입은 108,310천원으로 89.8%이며, 나머지 12,361천원(10.2%)은 농한기수입이다. 농한기사업을 경영하는 위탁영농회사의 총수입은 155,311천원으로 평균을 약간 웃돌고 있다.

설립년도별 위탁영농회사의 총수입을 (표 6-1)에서 보면 1991년도 설립회사의 총수입이 1992년도 설립회사에 비해 크며, 1992년도 설립

회사의 총수입은 1993년도 설립회사에 비해 크다. 1991년도에 설립된 위탁영농회사의 1993년도 1개사당 평균 총수입은 154,179천원, 1992년도 설립회사의 그것은 129,726천원, 1993년 설립회사의 그것은 78,107천원이다. 이는 1991년도 설립회사의 경우는 대부분 평야지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규모가 클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7개사중 5개사가 농한기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 설립회사의 경우 참여자 수가 비교적 많고, 이들이 과거 개인적으로 수행해 온 작업을 그대로 위탁영농회사로 끌어들이는 탓도 있을 것이다. 지역적으로 농기계의 공급 확대와 이에 따른 수탁영농의 분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 이후 년도별 총수입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그 변화가 다양하다. 먼저 비교적 위탁영농회사의 구성원이나 운영 등이 안정된 Is과 Jus의 총수입은 다른 위탁영농회사에 비해 클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설립초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던 리더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조직 자체가 재정비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조성후 2~3년차에 걸쳐 총수입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Cs의 경우 초창기의 강력한, 존경받던 대표자가 질병 관계로 중도탈퇴하면서 전체 경영이 흔들리고, 이에 따라 총수입이 줄어들었다. My도 초창기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이 현재의 젊은 대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의 혼란이 있었다.

위탁영농회사 조직 구성원이 대폭적으로 변화(감소)되거나 회사의 성격 자체가 변화될 때도 이의 여파가 회사 경영에 미쳐 사업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Jos의 경우 초창기 15명의 설립자가 2~3년사이 5명으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회사 성격도 지입제로 바뀌어 버렸다. 또 Dd의 경우는 회사의 성격이 개인회사형태로 변화하였을뿐만 아니라 대표의 경영 부실도 뒤따라 총사업수입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위탁영농회사의 농한기사업수입은 설립 초기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1991년도에 설립된 위탁영농회사의 농한기수입은 2,800천원으로 총수입의 2.20%였으나, 1993년에는 각각 17,368천원, 11.3%로

표 6-1 회사별 년도별 수탁수입과 농한기수입의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회사	1991			1992			1993			증 감	
		수탁수입	농한기수입	계(A)	수탁수입	농한기수입	계(B)	수탁수입	농한기수입	계(C)	B-A	C-B
1991년도 설립	Cs	238,518	7,600	246,118	283,352	7,300	290,652	206,256	33,900	240,156	+	-
	Is	95,503	0	95,503	119,277	22,092	141,369	188,399	0	188,399	+	+
	Jus	80,640	12,000	92,640	102,100	39,000	141,100	101,056	65,392	166,448	+	+
	Jos	84,225	0	84,225	120,510	60,000	180,510	124,614	18,000	142,614	+	+
	Dp	106,293	0	106,293	99,133	0	99,133	132,989	0	132,989	-	-
	Dd	202,516	0	202,516	134,382	0	134,382	89,686	4,020	93,706	-	-
	My	83,252	0	83,252	136,569	0	136,569	114,680	263	114,943	+	-
	평균	127,278	2,800	130,078	142,189	18,342	160,531	136,811	17,368	154,179	+	-
1992년도 설립	Dl				254,617	34,200	288,817	348,834	75,000	423,833		+
	Yd				34,209	0	34,209	43,554	0	43,554		+
	Md				72,900	0	72,900	77,393	0	77,393		+
	Sy				70,660	5,000	75,664	63,046	6,000	69,046		-
	Dj				108,405	0	108,405	124,900	0	124,900		+
	Ma				81,420	26,000	107,402	48,150	49,000	97,150		-
	Mg				76,733	0	76,733	70,655	2,000	72,655		-
	평균				99,850	9,314	109,164	110,869	18,857	129,726		+
1993년도 설립	Pt							127,012	6,000	133,012		
	Di							102,260	0	102,260		
	Ss							62,185	0	62,185		
	Id							97,995	0	97,995		
	Bg							27,995	0	27,995		
	Hj							63,440	0	63,440		
	Wh							60,223	0	60,223		
	평균							72,249	857	78,107		
평균	127,278	2,800	130,078	121,020	13,828	134,848	108,310	12,361	120,671	+	-	

증가하였다. 1992년에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도 초년도에는 9,314천원, 8.6%에서 18,857천원, 14.5%로 늘어났다. 이러한 전체적인 추세와 달리 회사에 따라 약간의 수입 변화 폭은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농한

기 소득원을 확보하고 있는 Cs(폐농기계 수집상), Jus(정미소), DI(쌀 포장판매), Ma(시설고추, 퇴비)등의 농한기수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벗짚 수거, 보리재배 등과 같이 소득원이 비교적 유동적인 경우는 그로 인한 수입 역시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

수탁작업수입의 년도별 변화는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앞의 수탁작업 실패에서 보듯 수탁작업 규모가 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작업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총수탁작업수입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수탁작업수입의 크기를 결정하는 세가지 사업별 수입은 (표 6-2)와 같다.

수탁작업수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1991년도 설립회사의 경우 완전수탁으로 72,532천원, 53.0%이며, 그 다음은 부분수탁작업수입으로 40,138천원(29.3%), 임차지수입 24,141천원(17.7%)의 순이다. 각 수입원의 년도별 변화를 보면 완전수탁수입은 증가후 감소하였으며, 부분수탁수입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임차지에 의한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추세는 1992년도에 설립된 위탁영농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조사대상 21개사의 전체평균을 보면 총수입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은 부분수탁으로 전체 108,310천원의 52.6%, 56,978천원이다. 다음으로는 완전수탁수입으로 46,717천원(43.1%)이며, 임차지수입은 20,145천원(4.3%)이다.

이상과 같은 위탁영농회사의 수입변화를 볼 때 먼저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는 아직도 안정적인 경영궤도에는 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농한기사업의 수입은 점차 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수탁작업수입은 작업수수료의 상승을 감안할 때 별 다른 증가를 보기 어렵다. 수탁수입을 구성하는 부분수탁수입은 대부분 증가추세이나 임차지 경영에 의한 수입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완전수탁수입은 아직도 년도별 변화가 심한데, 이것은 아마도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에 대한 확신이 구성원들간에 확립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도 불안정요인이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6-2 회사별, 연도별 수탁수입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회사	완전수탁			부분수탁			임차지			합 계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년도 설립	Cs	38,380	131,130	106,392	58,640	48,440	64,180	141,498	103,782	35,684	238,518	283,352	206,256
	Is	12,111	15,834	16,464	83,392	55,713	83,133	0	47,730	88,802	95,503	119,277	188,399
	Jus	39,840	41,500	60,048	40,800	60,600	41,008	0	0	0	80,640	102,100	101,056
	Jos	60,000	74,970	55,020	24,225	45,540	69,594	0	0	0	84,225	120,510	124,614
	Dp	91,200	96,000	115,600	0	0	16,013	15,093	3,133	1,376	106,293	99,133	132,989
	Dd	127,050	89,100	58,500	0	0	600	75,466	45,282	30,586	205,516	134,382	89,686
	My	65,600	107,640	95,700	17,650	19,016	6,440	0	9,913	12,540	83,252	136,569	114,680
	평균	62,026	79,453	72,532	32,101	32,758	40,138	33,151	29,977	24,141	127,278	142,189	136,811
1992년도 설립	Dl	-	0	0	-	166,500	265,800	-	88,117	82,583	-	254,617	348,834
	Yd	-	21,000	17,616	-	13,209	25,938	-	0	0	-	34,209	43,554
	Md	-	41,400	18,000	-	31,500	44,100	-	0	15,293	-	72,900	77,393
	Sy	-	34,400	17,200	-	25,225	30,680	-	11,039	15,166	-	70,660	63,046
	Dj	-	471,850	80,000	-	66,555	44,900	-	0	0	-	108,405	124,900
	Ma	-	60,420	13,500	-	21,000	34,650	-	0	0	-	81,420	48,150
	Mg	-	0	0	-	71,515	72,655	-	5,218	0	-	76,733	70,650
	평균	-	28,439	20,902	-	56,501	74,103	-	14,911	16,149	-	99,850	110,869
1993년도 설립	Pt	-	-	0	-	-	32,195	-	-	94,817	-	-	127,012
	Di	-	-	67,200	-	-	13,650	-	-	21,410	-	-	102,260
	Ss	-	-	25,680	-	-	36,505	-	-	0	-	-	62,185
	Id	-	-	0	-	-	87,800	-	-	10,195	-	-	97,995
	Bg	-	-	0	-	-	27,630	-	-	0	-	-	27,630
	Hj	-	-	47,040	-	-	16,400	-	-	0	-	-	63,440
	Wh	-	-	30,000	-	-	29,000	-	-	1,223	-	-	60,223
	평균	-	-	24,274	-	-	34,740	-	-	18,235	-	-	72,249
연도별평균	62,026	53,946	46,717	32,101	44,630	56,978	33,151	22,444	20,145	127,278	121,020	108,310	

## 2.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지출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에 소요된 비용은 (표 6-3)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위탁영농회사 참여자의 인건비는 제외하였는데, 이것은 회사마다 지급 보류, 일부 지급, 그때 그때 무계획적 지급 등 여러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1993년말 현재 1개 위탁영농회사의 총경영지출 규모는 89,799천원이다. 설립년도별 총지출규모는 1991년설립회사가 1992년에 비해, 1992년 회사가 1993년 회사에 비해 많다. 이것은 수입에서 보듯 1991년 회사가 1992년회사에 비해, 1992년 회사가 1993년 회사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지출 비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는 것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전체의 36.6%인 32,863천원이다. 그 다음에는 지급 인건비로서 15,436천원, 17.2%를 차지하고 있다. 부채에 따른 지급 이자와 논의 임차료가 각각 8,249천원(9.2%), 6,827천원(7.6%)이며, 각종 수리비, 유류비, 기타가 각각 4,800천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조성년도별 비목 구성을 살펴봐도 위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위탁영농회사별 총경영비용은 적게는 30,000천원 수준에서 많게는 229,608천원으로 총수입과 같이 다양하다. 각 설립년도별 위탁영농회사의 경영비규모는 일부 회사에서 감소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추세가 총수입의 변화추세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탁영농회사의 총경영비용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 6-4)에서 보면 회사마다 매우 불안정하다. 비율이 높은 회사는 158.1%에서부터 낮은 회사는 43.2%까지 다양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는 비율의 변화가 10% 포인트 내외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경영이 매우 불안정한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서도 분석하였듯이 구성원의 잦은 변화, 수탁작

표 6-3 년도별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지출규모

단위: 천원

구 분	1991 년 도	1992년			1993년			
		평 균	'91년설립	'92년설립	평 균	'91년설립	'92년설립	'93년설립
상 고 인 건 비	2,651	10,976	9,710	12,243	7,392	8,348	12,214	1,614
일 고 인 건 비	18,317	15,695	17,257	14,132	8,044	9,941	8,663	5,527
감 가 상 각 비	27,062	34,724	35,745	33,703	32,863	42,352	28,853	27,383
수 리 비	4,969	4,700	4,740	4,659	4,825	6,500	5,965	2,011
유 류 비	3,096	3,262	2,904	3,619	4,782	3,818	6,574	3,952
종 자 비	1,041	1,354	2,266	443	1,016	1,780	1,166	192
비 료 비	795	987	1,433	540	965	1,223	1,066	606
농 약 비	1,960	1,977	2,214	1,741	1,410	2,574	977	680
기 타 재 료 비	2,200	2,065	2,413	1,717	1,702	2,016	2,390	700
수 도 작 임 차 료	11,589	7,279	9,538	5,021	6,827	8,389	5,768	6,324
전 기 비	1,080	716	886	546	479	680	561	197
전 화 비	741	543	629	447	518	747	479	328
기 타 공 과 금	1,906	1,556	2,096	1,017	1,270	2,240	1,498	71
사 무 비 품 비	579	616	926	305	288	405	274	186
경 조 · 접 대 비	1,733	1,310	1,536	1,083	1,402	1,511	1,170	1,524
여 비 · 교 통 비	1,406	771	1,201	341	630	1,081	521	287
식 비	2,161	2,106	2,674	1,538	2,311	3,304	2,200	1,629
이 자	4,073	8,303	10,376	6,229	8,249	13,079	8,218	3,450
기 타	671	3,510	3,529	3,491	4,795	7,392	6,295	697
합 계	88,210	102,417	112,082	92,752	82,799	117,382	94,655	57,359

주: 경 조 접 대 비 에 는 회 사 광 고 선 전 료 가 포 함 되 어 있 음.

기 타 비 용 에 는 임 차 료, 건 물 수 리 비, 기 타 잡 비 등 이 포 함 되 었 음.

위탁영농회사의 참여자지급인건비는 제외함.

업규모의 불안정, 농한기사업의 미정착과 함께 여기에 적절한 경영능력 부족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판단된다. 특별히 주의를 끄는 것은 이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회사가 21개 조사대상 위탁영농회사 가운데 5개사나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들 회사는 보조금, 감가상각비의

미적립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참여자 인건비조 차 회수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경영의 파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견이 가능하다.

표 6-4 회사별, 년도별 참여자 인건비 제외 비용과 총수입에서의 비중

단위: 천원, %

년 도	회 사	참여자인건비를 제외한 비용(A)			A/총수입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년도 설립	Cs	147,181	137,901	136,270	59.8	47.4	56.7
	Is	63,295	79,649	102,938	66.3	56.3	54.6
	Jus	56,736	120,148	159,320	61.2	85.2	95.7
	Jos	53,346	88,786	76,985	63.3	49.2	54.0
	Dp	95,131	96,782	111,758	89.5	97.6	84.0
	Dd	133,608	160,419	148,175	66.0	119.4	158.1
	My	68,170	100,887	86,230	81.9	73.9	75.0
	평 균	88,210	112,082	117,382	67.8	69.8	76.1
1992 년도 설립	DI		228,542	229,608		79.1	54.2
	Yd		52,700	53,380		154.1	122.6
	Md		62,987	71,599		86.4	92.5
	Sy		42,645	48,931		56.4	70.9
	Dj		84,617	85,187		78.1	68.2
	Ma		110,046	104,911		102.4	108.0
	Mg		67,725	68,969		88.3	94.9
	평 균		92,752	94,655		85.0	73.0
1993 년도 설립	Pt			91,651			68.9
	Di			44,185			43.2
	Ss			38,606			62.1
	Id			56,498			57.7
	Bg			29,668			107.4
	Hj			53,173			83.8
	Wh			87,730			81.2
	평 균			57,359			73.4
전 체 평 균		88,210	102,417	89,799	67.8	75.9	74.4

### 3.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성과 분석

경영수익은 위탁영농회사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존속하기 위해 필수

표 6-5 회사별, 년도별 처분가능수익과 참여자의 1인당 예상소득

단위: 천원

년 도	회 사	처분가능 수익			참여자 일인당 예상소득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9 9 1 년 도 설 립	Cs	98,937	152,751	103,886	24,734	24,188	25,971
	Is	32,208	61,720	85,461	8,052	15,430	21,365
	Jus	35,904	20,952	7,128	4,488	4,190	1,426
	Jos	30,879	91,724	65,629	2,059	11,466	13,126
	Dp	11,162	2,351	21,231	1,860	392	4,246
	Dd	68,907	-26,036	-54,469	13,781	-13,018	-18,156
	My	15,082	35,683	28,713	3,771	3,568	7,178
	평 균	41,868	48,449	36,797	8,392	8,602	7,789
1 9 9 2 년 도 설 립	Dl		60,275	193,775		15,069	64,592
	Yd		-18,491	-9,826		-6,164	-3,275
	Md		9,913	5,794		1,983	1,159
	Sy		33,019	20,115		11,016	6,705
	Dj		23,788	39,713		3,398	9,928
	Ma		-2,626	-7,761		-657	-2,587
	Mg		9,009	3,686		4,504	1,843
	평 균		16,412	35,071		4,163	11,195
1 9 9 3 년 도 설 립	Pt			41,361			6,894
	Di			58,076			11,615
	Ss			23,579			4,716
	Id			41,498			8,300
	Bg			-2,038			-679
	Hj			10,267			2,053
	Wh			-27,507			-9,169
	평 균			20,748			3,390
전 체 평 균	41,868	32,431	30,872	8,392	6,383	7,488	

주: 처분가능 수익은 총수입에서 참여자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뺀 부분을 가리킴.

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구성원간의 웬만한 갈등도 이 경영수익이 많을 경우, 그리고 그것이 적절히 분배될 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표 6-6 회사별, 연도별 참여자 인건비와 이윤

단위: 천원

연도	회사	참여자 인건비			이윤			참여자의 실질인건비			실질이윤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년 반월산	Cs	31,000	37,200	31,800	67,937	115,551	72,086	31,000	37,200	36,000	67,937	115,551	67,886
	Is	0	24,000	74,000	32,208	37,720	11,461	20,000	34,800	74,000	12,208	26,920	11,461
	Jus	0	46,700	18,000	35,904	-25,748	-10,872	40,000	45,000	-4,096	-4,096	-25,748	-37,872
	Jos	24,000	24,600	70,000	6,879	67,124	-4,371	40,000	69,600	70,000	-9,121	22,124	-4,371
	Dp	10,000	41,600	26,400	1,162	-39,249	-5,169	30,000	41,600	30,000	-18,838	-39,249	-8,769
	Dd	42,000	22,000	10,000	26,967	-48,036	-64,469	42,000	22,000	18,000	26,907	-48,036	-72,469
	My	26,940	49,880	24,000	-11,858	-14,197	4,713	26,940	58,000	36,000	-11,858	-22,317	-7,287
평균	19,134	35,140	36,314	22,734	13,309	483	32,849	44,271	44,143	9,020	4,178	-7,346	
1992년 반월산	Dl		45,600	44,200		14,675	149,575		45,600	44,200		14,675	149,575
	Yd		18,000	15,000		-36,491	-24,826		18,000	18,000		-36,491	-27,826
	Md		0	0		9,913	5,794		29,000	30,000		-19,087	-27,206
	Sy		0	21,600		33,019	-1,485		17,400	27,000		15,619	-6,885
	Dj		48,300	46,500		-24,512	-6,787		48,300	46,500		-24,512	-6,787
	Ma		28,029	8,885		-30,655	-16,646		34,800	27,000		-37,426	-34,761
	Mg		14,000	14,000		-4,991	-10,314		14,000	14,000		-4,991	-10,314
평균		21,990	21,455		-5,577	13,616		29,586	29,529		-13,178	5,542	
1993년 반월산	Pt			0			41,361			36,000			5,361
	Di			0			58,076			30,000			28,076
	Ss			0			23,579			30,000			-6,421
	Id			15,000			26,498			30,000			11,498
	Bg			11,964			-14,002			18,000			-20,038
	Hj			0			10,507			30,000			-19,733
	Wh			0			-27,507			18,000			-45,507
평균			3,852			16,869			24,429			-6,681	
평 균	19,134	28,565	20,540	22,734	3,866	10,332	32,849	36,929	33,700	9,020	-4,498	-2,828	

주: 참여자 인건비, 실제 지급 인건비: 농촌노임 기준 근무기간동안 지급해야 될 인건비임.

수 있다. 반면 아무리 구성원간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돈독해도 경영수익이 기대이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그 위탁영농회사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경영의 성과물인 경영수익을 통해 위탁영농회사의 지속 유지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총지급비용을 총수입에서 제한, 임의 처분이 가능한 수익을 보면 아무래도 1991년 설립 회사가 1992년과 1993년도 설립 회사에 비해 많다. 1991년도에 설립된 위탁영농회사의 년도별 처분 가능 수익은 1992년에 증가하였으나 1993년에는 증가분 이상으로 줄어들어 초창기 수익보다 낮은 36,797천원이다. 1992년도에 설립된 회사들도 D1와 D2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감소하고 있다. 1991~92년에 설립된 위탁영농회사 14개사 가운데 1992~93년에 걸쳐 처분 가능 수익이 감소한 회사는 10개사나 된다. 더욱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5개사는 그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진단된다.

한편 처분 가능 수익을 참여자 수로 나눈, 참여자 1인당 예상소득을 (표 6-5)에서 보면 2,000만원을 넘는 회사는 3개사에 불과하며, 1,000만원을 넘는 회사도 5개사에 불과하다. 처분 가능 수익과는 달리 1992~93년에 걸쳐 참여자 예상소득이 늘어난 회사는 6개사로서 2개사가 늘어났지만, 예상소득 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것의 분배문제가 경영 유지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위탁영농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의 인건비 지급방법은 회사에 따라 다르다. 설립 초기에는 일단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지급한다 해도 작업일수에 임의로 일당 인건비를 곱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참여자가 균등하게 협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가져가기도 한다. 위탁영농회사의 처분 가능 수익에서 실제 참여자에 지급한 인건비를 제외한 이윤을 (표 6-6)에서 보면 1993년도의 경우 10,332천원이다. 그러나 참여자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은 회사와 Cs, D1를 제외하면 이윤규모가 매우 적으며,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은 6개사를

제외한 15개사 가운데 10개사는 적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규모가 보조금과 감가상각 총당금의 규모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현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만약 참여자들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인건비를 처분 가능 수익에서 제외하면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실질이윤이라고 할 경우 1993년말 이것의 평균은 1개 위탁영농회사당 2,828천원이다. 총21개 조사위탁영농회사 가운데 적자를 나타내는 회사는 15개사에 이른다. 연속 2년여에 걸쳐 적자를 나타낸 회사는 14개 조사대상 가운데 9개사나 되어 내부적인 불만 누적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향후 위탁영농회사의 지속적인 유지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가 획기적인 수익사업을 찾고, 아울러 정상적인 운영케도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조직의 와해는 쉽게 예견되는 것이다.

#### 4.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지상 문제점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성과 분석에서 나타난 성격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위탁영농회사의 총경영수입이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작업수수료의 증가를 감안하면 그렇지만은 않다. 위탁수입의 변화가 심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농한기사업수입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탁수입을 구성하는 임차지 경영에 의한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며, 부분작업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완전작업수입은 변화가 심하며, 최근에는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위탁영농회사의 경영비지출 변화는 수입 변화보다 오히려 심하여 대부분 전년 대비 10% 포인트 이상의 진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결국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상 변화가 심할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이 있는 적절한 리더가 없어서 나타난 복합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예외적

으로 구성원 수나 전체적 운영이 비교적 안정된 회사는 비용의 변화 폭이 그리 크지 않다.

세번째로는 정부의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없고, 감가상각 충당금을 원래대로 적립할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 정상적인 인건비를 지불할 경우 70% 이상이 적자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상적인 경영수지를 계산해 보면 대부분 적자라는 것이다. 단지 정부 보조금과 감가상각 충당금의 미적립, 참여자 인건비 지급 보류 및 소규모 지급 등으로 적자가 외부에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대안적인 소득 기회가 없을 경우 참여자의 불만 누적과 위탁영농회사의 와해는 예상 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

결국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지 적자 수준은 위탁영농회사의 조성목적에 어디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조직 자체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위탁영농회사들은 대부분 제3의 형태로 변질될 것이다. 특히, 수탁작업수입의 수익성이 낮은 현실에서 그들에게 대규모 영농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제 7 장

# 위탁영농회사 관련 제도 검토

## 1. 위탁영농회사 관련 제도의 내용

### 1.1. 육성목적과 기본 방향

위탁영농회사를 조성하기 시작한 1991년도 육성지침에 따르면 위탁영농회사의 육성목적은 세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첫째는 일손부족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농기계 이용규모의 확대로 농업노동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셋째는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으로 이용률을 제고하고 농기계에 대한 과잉투자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창기 목적은 1993년에 오면서 앞의 두가지만 강조되고 세번째 목적은 제외되었다. 1994년에는 두번째 육성목적이 대형 농기계 중심의 규모화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수탁영농을 하되 성능이 우수한 대형 농기계를 가지고 대규모영농을 하여 농업생산성도 높이고, 아울러 농업구조 개선도 주도하자는 것이다.

육성 기본방향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1991년도에는 1991~92 시범사업 실시후, 사업성과에 따라 1994년까지 시·군당 1개소씩 설립하되 기계화 영농단 또는 기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중심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994년까지는 200개소(1993년까지 군지역 우선지원)를 육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992년에는 1992년까지 군당 1개소, 1996년까지는 면당 1개소 이상 총 1,260개소를 확대 설립하도록 계획하였으며, 1993년에는 1996년까지 시·읍·면당 1개소 이상 총 2,000개소 설립계획을 세웠다(표 7-1). 이런 계획이 1994년에는 1996년 이후 891개소를 조성한다고 계획하고 있어 사업기간에 개연성을 두고 있다.

위탁영농회사 1개사당 수탁영농규모는 50ha 이상 집단화된 대규모로 하고 있으며, 수도작 중심에서 전작, 과수, 채소 등으로 위탁영농을 확대하고, 분야별로 영농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1993년부터는 여기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경영수지 개선에도모도록 하고 있다.

표 7-1 년도별 위탁영농회사 육성계획

단위:개소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1991년 계획	16	60	60	64	-	-	200
1992년 계획	16	121		1,123('93년 이후)			1,260
1993년 계획	16	121	272		1,592		2,000
1994년 계획		409(실적)		300	400	'91('96이후)	2,000

자료: 농림수산부, 「'91 위탁영농회사 육성지원 요령」, 1990.12.  
 농림수산부, 「'93 위탁영농회사 육성지원 요령」, 1992.12.  
 농림수산부, 「업무자료」, 1993. 12.  
 농림수산부, 「1994년도 농기계화사업 시행요령」, 1994.1.  
 농림수산부, 「업무자료」, 1994.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편람」, 1992. 6.

## 1.2. 설립 자격자 및 지원자 선정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설립코자 하는 위탁영농회사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과 농지개발조합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이다(농발법 제7조, 동시행규칙 6조). 여기에서 농민(어민을 제외함)이란 농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첫째, 99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둘째 대가축 1두, 중가축 3두, 소가축 20두, 가금 30수 또는 양봉 5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셋째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 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넷째, 고등원예작물 또는 특수작물을 330㎡ 이상, 과수 또는 묘목을 660㎡ 이상 경작하는 자, 다섯째 신탄을 연간 30표 이상 생산하는 자, 여섯째 영농조합법인(동법 제2조 2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을 지칭한다.

설립 자격으로서 영농작업규모는 1991년의 경우 육묘,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수확 등 작업별로 50ha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1993년 이후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50ha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즉, 영농규모는 몇몇 작업만이라도 50ha 이상이면 자격조건이 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최소한의 설립자격 구성원 수는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자 2명 이상, 정비기술자 1명 이상, 총5명이상이면 된다. 보유 영농장비는 5종 13대 이상인 것을 1993년에는 밭 작물의 경우 4종 13대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나, 1994년에는 5종 10대 이상으로 통합하였다. 보유시설도 농기계 창고 60평 이상, 정비작업장 5평 이상이던 것을 묶어 60평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다.

위탁영농회사로 선정되는 절차는 1991~93년도와 1994년도가 약간 다르다. 1991~93년의 경우 먼저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코자 하는 대상

표 7-2 위탁영농회사 설립자격 기준

구 분	1991~92	1993	1994
작업규모	○ 육묘,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수확 등 작업별 50ha 이상	○ 토지이용형작물의 경우 50ha 이상	좌동
영농인력	○ 총5명 이상 - 농기계운전자 2명 이상 - 정비기술자 1명 이상	좌동	좌동
영농장비	○ 트랙터2대, 이앙기4대 콤바인3대, 건조기2대 주행식분무기2대 등 5종 13대 이상 ○ 답작이외 농작업에 대해 서는 상응하는 기종을 환산 보유	○ 좌동 단, 이앙기에 직파기포함, 콤바인을 수확기로 조정 ○ 발작물은 4종13대 이상 (트랙터 2대, 방제기 2 대 등)	○ 기계화일관 작 업이 가능하도 록 5종 10대 이상
시 설	○ 농기계보관창고 60평 이 상 ○ 정비작업장 5평 이상	○ 농기계보관창고 및 간이 수리시설 60평 이상	좌동

자는 사업계획서(설립자의 자격요건, 위탁영농규모, 인력시설장비 확보 등 내용 포함)와 정관(안) 및 기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농촌지도소장에 선정을 신청한다. 신청받은 농촌지도소장은 신청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시장·군수에 승인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적합한 선정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군수가 위원장인 「선정심의위원회」 1993년에는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조직하여 최종 선정한다 다음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3월 31일까지 회사 설립등기(기설립등기회사 제외)를 마치고, 설립 등기후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설립회사 등기부등본, 정관, 장단기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사실 통보해야 한다.

설립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시 사업계획과의 상위 여

부를 확인하고, 회사 설립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 단계에서 시장·군수는 미비된 사항에 대해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등의 사실이 있을 때는 지원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의해 농기계 구입 및 시설설치 상황 등을 수시 확인하고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였다(1991년에는 수시확인지도만하고 도지사가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였음). 1994년이 되면서 이러한 지원자 선정절차는 상당히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농촌지도소장이 신청서류를 취합, 1차 심의후 시장·군수에 선정의뢰하는, 절차를 없애버린 것이다

한편 위탁영농회사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을 보면 위탁영농회사로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계화영농 경험과 기술이 우수한 자,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및 4H회원 등 기계화영농의 핵심농가를 중점 우선지원토록 되어 있다. 영농인력기준도 가능한 한 55세 이하인 자로서 농기계 운전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 또는 농기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 이수자이어야 하며, 수리기술자는 연령 제한에서 제외되고 있다. 1993년에는 사업구역이 농업진흥지역인 회사로서 기계화영농 경험과 기술이 우수한 자,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및 4H회원 등으로 구성된 회사를 우선 선정·지원하도록 하였다. 연령 제한이 없어진 대신 농업진흥지역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1994년에는 농기계 운전자와 수리기술자를 기계화영농사,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농기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이수자(1주일 이상),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로 구체화시켰다. 또한 우선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이 농업진흥지역이어야 하며, 선정 우선순위는 첫째, “고도기술의 벼농사시범사업” 지역인 회사, 둘째, 선도개척농, 기계화 영농사,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회사, 셋째,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 설립하는 회사, 넷째, 자율적으로 설립·운영중인 위탁영농회사의 순으로 구분하고 있다.

### 1.3. 자금 및 세제 지원

위탁영농회사의 조성에 지원되는 자금은 세가지 형태를 취한다. 첫째는 농기계 구입자금, 둘째는 시설(농기계 보관창고 및 정비작업장) 설치자금, 세번째는 경영비 지원이며, 네번째는 기타소득사업시설비이다. 기타 소득사업시설비 지원은 1993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농기계 구입자금은 정부의 지원에 의한 보조금과 융자금,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서 부담하는 자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이들 자금의 구성 비율은 보조금 50%, 융자금 40%, 자부담금 10%이다. 보조금 50%는 국고에서 이것의 절반을,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분담하고 있다. 지방정부 분담 25% 역시 도와 시·군간에 일정비율대로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1개 위탁영농회사당 농기계 구입자금의 총규모는 1991년 70,940천원에서 1994년에는 95,220천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표 7-3).

농기계 운용에 관련된 시설 설치자금 융자규모는 1991년 26,000천원에서 1992~94년에는 33,000천원으로 늘어났으며, 융자상환기간도 1년 거치 4년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참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융자이율은 농기계 구입자금과 같이 년리 5%이다.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에 소모되는 경영비 지원은 융자기간이 1년이며, 20.

표 7-3 년도별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천원

구 분		국 고	지 방 비	융 자 금	자부담금	계
1991	전체	284	284	454	114	1,136
	1개사당	17,735	17,735	28,376	7,094	70,940
1992	전체	2,494	2,494	3,990	997	9,975
	1개사당	20,610	20,610	32,976	8,244	82,440
1993	전체	7,142	7,142	11,425	2,857	28,566
	1개사당	23,805	38,088	38,088	9,522	95,220
비 율		25%	25%	40%	10%	100%

000천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1993년부터 새로 도입된 기타소득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의 용자 가능금액은 1개소당 200,000천원이며, 용자조건은 앞에서 본 농기계 관련 시설자금과 같은 3년 거치 7년 상환, 년리 5%이다. 그러나 이 자금은 시·도(시·군)별로 배정된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용으로 우선 지원한 다음, 남아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1개사당 200,000천원까지 지원 가능토록되어 있어 아직은 현실적으로 용자받는데 어려움이 많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자금들의 지원체제는 보조금과 용자금에 따라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조금의 경우 최종교부자가 시·군인 반면, 용자금은 농협 군지회(단위농협)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지원자금의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위탁영농회사는 자금 종류별로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시장·군수는 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확인한 후 -1991년에는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지원대상금액을 확정, 그 내역을 위탁

표 7-4 시설 설치자금 지원계획(개소당)

단위: 천원

구분		개소당 지원한도	상환기간	용자이율
1991	보관창고	24,000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연 5%
	정비장	2,000		
1992~94		33,000	3년 거치 7년 상환	상동

표 7-5 경영비 및 기타소득사업 지원계획

단위: 천원

구분		개소당 지원한도	상환기간	용자이율
경 영 비	1991	회사신청에 따라 시장, 군수가 지원액 결정		
	1992~94	20,000	1년	5%
기타소득사업	1993~94	200,000	3년 거치 7년 상환	5%

영농회사와 농협장에게 통보한다. 통보받은 위탁영농회사는 시장, 군수에 보조금 교부를, 농협장에게 융자금 신청을 한다.

시설설치자금 지원과정에서 시장·군수는 이들이 사업기간내 시설 완공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 등의 조속한 행정사항 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융자금 대출시의 명의를 1993년까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 1994년에는 위탁영농회사로 못박고 있다. 또한 농협장은 위탁영농회사에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부 대출 등을 하여 융자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이외의 사항은 「농협 여신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융자금 상환과 기종은 물론 매년도의 농기계 공급요령에 준한다.

특히, 보조금 교부시, 지방비 확보지원 등으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될 경우 우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융자실행 및 자부담금의 정산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먼저 법인세 특례로써 위탁영농회사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부터 5년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부가가치세 특례의 경우 일반농가와 같은 비료, 농약, 농기계 구입시 적용받으며 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역시 특별소비세와 부가세 면제를 받는다. 아울러 위탁영농회사에서 수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고 있다. 농협으로부터 융자받기 위해 작성한 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도 면제된다(융자금 3,000만원 초과시 과세).

이상과 같은 국세에 대한 조세감면 이외에 지방세로써 위탁영농회사 고유업무에 사용키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과세 기준일 현재(5.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면제된다. 앞서서와 같은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6.1.)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

그림 7-1 보조금 교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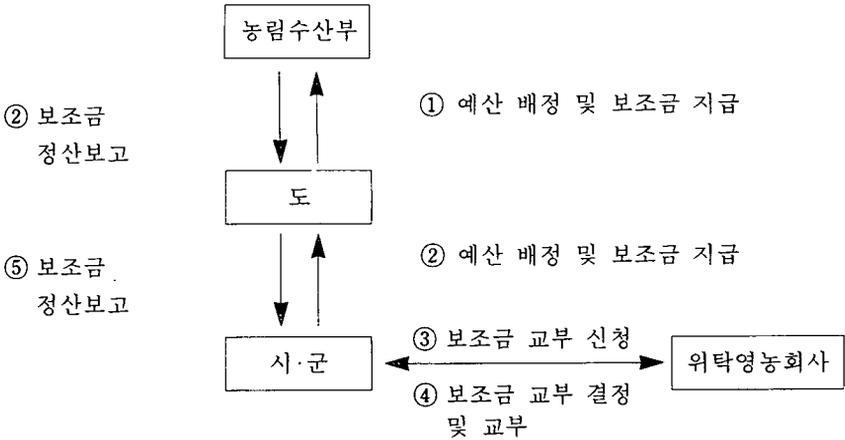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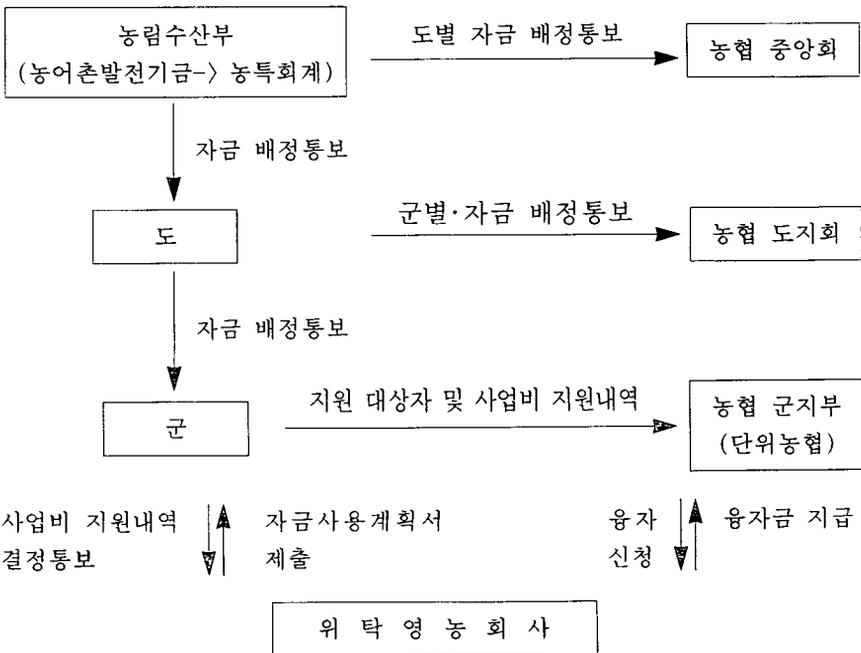


그림 7-2 융자금 교부 체계도



#### 1. 4. 관계기관 지원체계 및 내용

먼저 농촌진흥청에서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경영을 평가하고, 영농 기술지도 및 소득사업을 개발·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관련 행정기관은 첫째 법령에 정한 업무로써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보조사업 실적 보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관리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조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며, 둘째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총괄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즉, 상법상 회사 설립에 따른 회사 설립 발기, 정관 작성, 설립 등기 등의 설립절차를 지원·감독해야 한다. 셋째,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세무지도업무로서 사업년도 세무신고,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작성, 원천징수, 결산관련 세무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세 등에 관한 사항등을 지원하며, 넷째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원으로서 병역특례 적격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를 하며, 마지막으로 농지 전용,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 정책자금 융자, 노사관계, 의료보험 관련업무와 같은 행정지도업무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촌지도소에서는 담당지도사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경영지도로서 위탁작업면적에 따라 적정 영농계획 수립 및 위탁작업료 결정 등 영농계획을 감안한 적정 농기계의 선택과 구입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방안 지도, 인건비, 자재대 등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대 경영기법 지도, 감가상각, 자본이자 지출, 장부기장 등 결산업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탁영농회사 영농기술 및 소득사업 개발지도로서 첨단 농기계 및 시설을 이용한 생력화와 과학영농기법, 농림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농한기 소득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1.5. 사후관리

1991~93년까지 어떠한 지도기준이 없던 위탁작업료에 대해 1994년에는 지도요령이 제시되었다. 즉, 위탁작업료는 지역실정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되도록 행정기관, 지도기관, 농업단체 및 지역농민이 참여하는 “위탁작업료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작업료는 현금수납토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보조지원된 농기계에 대해서 시장·군수는 5년간-1991년에는 내용년수, 1993년에는 별도의 기간제시(이앙기, 관리기, 방제기, 시비파종기, 이식기, 바인더, 예취기 등: 6년, 동력경운기, 콤파인: 7년, 농용 트랙터, SS방제기, 탈곡기, 건조기: 8년) -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5년 이내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려워 신기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처분을 요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1991~93년까지는 장관 승인사항- 아래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다.

지원대상이 확정된 위탁영농회사는 사후봉사업소(1993년 이후 농협, 대리점) 등이 명확히 기록된 농기계 구입 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다. 이때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사업 요령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추가하여 이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했을 때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농기계의 잔존가격(정액법기준)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대장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대활용, 관리상태와 자격기준 유지 여부 등을(12월말 기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격기준이 미달시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7-6 위탁영농회사 관리보고 내용

보 고 내 용	보 고 자	보 고 기 한
○ 위탁영농회사 선정 결과보고	도 지 사	'94. 2.15
○ 위탁영농회사 설립 결과보고	도 지 사	'94. 5.31
○ 위탁영농회사 사업추진 실적 보고(반기별)	도 지 사	'94. 7.31 '95. 1.31
○ 위탁영농회사 운영실적 및 경영평가 결과보고	농촌진흥청장	'95. 2.28

위탁영농회사를 관리하는데 보고되는 내용은 4가지이다(표 7-6). 먼저 당해년도 선정결과는 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다. 사업 실적 보고는 분기별로 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은 다음해 2월말까지 위탁영농회사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2. 위탁영농회사 관련 제도의 문제점

위탁영농회사의 조성과정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지원제도 가운데 하나는 획일적·일시적 자금 지원일 것이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농기계 및 시설자금은 그 대상물을 구입하거나 설치해야만 자금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탁영농회사를 조직하려고 하는 농민들은 이미 스스로 구입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계화영농단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수혜받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기계는 당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위탁영농회사를 조직하려면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존의 이용 가능한 농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과잉 농기계 보유가 발생한다. 농기계 보관창고와 사무실과 같은 시설 설치자

금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위탁영농회사의 사무실을 신규 건축할 필요도 없으며, 가능한 한 농가에 격납고 등도 기존시설물, 예컨대 축사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두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관련제도의 문제는 각종 조직이나 개별농가에 대한 혼란스러운 지원체계이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와 함께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농정의 지상목표가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계화 전업농,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농사법인을 설립한다고 한다. 농가의 개별적인 성격에 따라 다양한 경영주체로 지원·육성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조성 주체의 구성원들은 상당수 중복되어 있다. 위탁영농회사의 구성원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대부분 농어민후계자 이거나 기계화영농단 출신들이 조직하고 있다(제4장). 더욱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농촌내에서 수행하는 이들의 사업영역에서 별다른 구분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중 삼중의 자금 지원만 이루어질 뿐 그로 인한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듯 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차체에 이러한 혼란스러운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재고되어야 할 내용은 농한기 사업자금 지원과 관계기관의 지원 내용이다. 현재 위탁영농회사의 상당수는 농한기 사업에 관심이 많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위탁영농회사의 대표자나 조직 구성원들의 농한기 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일천하다. 관련된 행정기관의 지원도 거의 없다. 여기에 농한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위탁영농회사의 관심과 지원기관의 지원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위탁영농회사의 조성목적이 농업구조를 개선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와는 상치되는 농한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문제가 될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농업구조 개선에 관련된 영

농 수행에 전념하기에는 여건이 부적절하고, 따라서 보다 고소득이 실현 가능한 농한기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전환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적어도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고소득시설 농업의 지원과 연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네번째 위탁영농회사라는 이유 때문에 농촌내에서 비슷한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화영농단이나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없애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농어촌의 활로 개척을 위해 새로운 목적세(농어촌발전특별세)를 거두는 상황 아래에서 한편으로는 농업구조 개선의 중추역할을 해야 하는 위탁영농회사에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부적절하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의 지속적 면세, 소득세, 주민세의 감면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도 위탁영농회사의 사업을 위해 구입 사용한 시설기자재에 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 제 8 장

### 요약 및 결론

#### 1. 요약

##### 1.1. 서론

이 연구는 1991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전체적 조명과 미시적인 경영문제의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해 시행되었다. 왜냐하면 위탁영농회사가 가지는 의미는 첫째 매년 수백억원의 자금이 지원(1994년 7,972억원: 용자 및 보조금)되고 있고, 둘째 위탁영농회사의 구성원들은 우리 농촌내에서 중추적인 기간 영농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농업구조 개선차원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위탁영농회사의 현황, 둘째, 위탁영농회사의 조직과정, 셋째 위탁영농회사의 사업실태와 경여수지, 마지막으로 관련된 법적 내용 검토이다. 단 이 연구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농촌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업농, 각종 농사법인 기계화영농단 등과의 비교·

검토가 미비되어 있다.

## 1.2.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의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이론적·현실적 조성목적은 첫째 규모의 경제성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이다. 두번째 농촌노동력의 질적 저하와 부족문제에 대한 대응이며, 세번째 대규모 일괄기계화체계의 정립, 네번째 겸업농의 부족노동력 보완 등이다. 한 마디로 가족농 규모를 떠난 대규모 수탁영농을 통한 구조 개선과 소득 증대이다.

1991년 16개소 조성 이래 1993년말 현재 총 493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고 보조회사는 409개, 지방비 보조회사 16개, 자율적 설립회사 66개소이다. 대단위 평야지가 많은 전남·북과 경남·북에 많이 조성되었다. 위탁영농회사가 지원된 자금규모는 1991~93년까지 총 41,248백만원(자부담 6,016백만원)이다. 현재 1개 위탁영농회사 지원금액은 95,220천원이다.

## 1.3. 조사위탁영농회사의 일반개황 분석

이 연구를 위해서 1991~93년도에 조성된 총 25개사에 대한 자료를 1991~93년에 걸쳐 수집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운데 4개사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최종경영수지 등의 분석에 이용된 위탁영농회사 수는 21개사이다. 물론 조직과정 등의 분석에서는 25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자 수는 1991년의 경우 7.4명에서 1993년말 현재 4.3명으로 1992년 설립회사는 5.7명에서 3.3명으로 1993년 설립회사는 초기 5.1명에서 4.6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1993년말 현재 조직원 수는 4.0명이다. 구성원 총 85명 가운데 25~44세가 81명(95%)이며, 고졸 이상이 70명에 이른다. 영농경력은 5~15년 사이가 많으며, 대부분 농기계 수리 및 운전경력이 높다.

참여자 4.0명 가운데 농어민후계자나 기계화영농단원 출신이 3.1명으로 농촌내에서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민들이 많다. 영농규모도 80% 이상이 1ha를 넘고 있다.

1개 위탁영농회사의 기존자산 규모는 213.4백만원이며, 이 가운데 51.1%인 109.1백만원은 정책적 지원 보조금과 융자금이다. 조직 참여자들에 의한 출자규모는 70.0백만원, 32.8%이며 기타부채는 34.2백만원 16.1%이다. 보유 부지규모는 1993년말 현재 831평(소유: 495평, 임차 336평이며,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21개사 가운데 10개사이며, 농지 전용에 의한 회사는 9개사이다(대표자 전용 포함 13개사임). 소유 부지 및 농지 전용이 늘고 있다.

위탁영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대시설은 총 358평이며, 이 가운데 농작업관련 시설은 286평, 80.0%이고 나머지는 부대사업 관련시설로 100평이다. 농작업 관련시설은 육묘장이 90평규모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격납고와 사무실이 각각 50~60평, 10~20평 수준이다.

1개 위탁영농회사당 보유 농기계는 차량을 비롯한 6기종 15~16대 수준이며, 보유 농기계 및 수리장비 등의 총가액은 125.0백만원이다. 트랙터와 이앙기는 약 4대, 콤바인 3.4대이며, 나머지는 2대 정도 수준이다. 금액으로 볼 때 역시 고가품인 트랙터(40.8백만원)와 콤바인(26.1백만원)의 비중이 높으며, 농한기 사업장비 역시 20.0백만을 보이고 있다.

위탁영농회사의 주요 작업의 합계(연작업이 아닌 포장면적 기준)를 보면 1991년에는 260.2천평에서 1992년에는 220.7천평, 1993년에는 194.4천평으로 점감하고 있다. 물론 일부 평야지에 위치한 건설한 회사의 경우 전체 작업면적의 증가를 보이기도 한다. 수령하는 수탁작업료는 조성 초기의 경우 인근과 15% 내외의 저렴한 수준이나 점차 이 격차가 접근되고 있다. 지역별 수탁수수료를 보면 임대차와 완전수탁의 경우 평야지가 중·산간지보다 많으며, 부분수탁료는 평야지가 비교적 낮다.

#### 1. 4. 위탁영농회사의 조직성격과 유지의 문제

위탁영농회사의 궁극적 조직목표는 참여농가 소득의 증대에 있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하부목표-전략적 수단-가 무엇이냐에 있다. 상당수의 위탁영농회사는 대규모 수탁영농에 의한 소득 증대보다는 농한기 소득사업의 도입을 통한 소득 증대에 관심이 많다. 조사대상 21개사 가운데 농한기 소득사업을 하는 회사는 11개사(Is의 경우 1993년 일시 중단)에 이르며, 조직 초창기에는 3~개사이던 것이 1~2년사이에 늘어난 것이다.

초창기(1991년) 위탁영농회사는 행정기관의 주도에 의해 비교적 7~8명의 다수인의,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선도농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비교적 친밀도가 높은 일가 친척, 친구, 선·후배에 의해 조직되고 있으며 설립자 수도 5명 내외로 적다.

행정기관의 주선이나 독선적인 선도농에 의해 조직된 위탁영농회사는 운영과약이 불가능하거나(Kd, Hc, Sh 등), 일가 친척에 의한 경우는 사유화(Bg, Yd 등)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인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는 과거 유사조직에서 함께 일해왔던 인근 친구나 선·후배에 의해 조직된 것들이 많다.

의외로 균등출자되어 조직된 회사 수는 전체 25개사 가운데 6개사에 불과하다. 위탁영농회사가 조직운영과약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입제 혹은 사유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모두 불균등 출자된 회사가 운데서 나왔다. 출자의 균등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위탁영농회사를 유지하는데 표출되는 갈등은 구성원간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수익성 저하가 이것을 더욱 부추이고 있다. 갈등 표출의 간접적 표현인 구성원 수의 변화를 보면 1991년에 설립된(설립등기시점)13개사의 총 발기인 수는 53명이던 것이 1993년 말에는 32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추세는 모든 위탁영농회사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년에 걸쳐 가입 탈퇴한 연인원은 53명에 이른다.

작업 배정, 내부관리, 사업 선택, 수익 분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탁영농회사의 내부 갈등은 상당부분 지도자의 역량 여하에 따라 조직와해로 가느냐, 재충전의 계기가 되느냐가 결정된다. Jus, My, Sy, Hj는 대표자가 교체되었으나 구성원들의 이해와 새로운 지도자의 강력한 지도에 힘입어 재건된 경우이다. 이러한 갈등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은 회사들은 대개 조직 와해, 지입제, 사유화 등으로 흘러가게 된다.

### 1.5. 위탁영농회사의 사업실태 분석

위탁영농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조 개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탁영농은 지원구조와 기술 등의 여건상 우리 농촌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위탁영농회사의 수탁영농규모는 일부회사를 제외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1년도 설립회사 가운데 임차경영을 하는 5개사 가운데 증가회사는 Is 1개사 뿐이다. 참여자 1인당으로 환산했을 경우 비록 My이 0.5천평으로 늘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하다.

완전수탁면적은 내부적인 갈등이 많은 회사를 제외하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늘어난 회사가 적지 않다. 특히, 비교적 법인성격으로 경영이 안정된 Is, Jus, Dp, Cs, My 등은 완전수탁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결코 감소추세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자 1인당 수탁면적도 대체로 늘고 있다. 부분수탁면적은 회사마다, 년도마다 매우 다르다. 전체 규모로 볼 때는 담보상태이나 1인당으로 보면 약간 늘어났다.

수탁영농규모가 전체적 정체 내지 감소추세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농기계 총가액당 작업규모나 대당 작업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비효율적인 농기계 보유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감가상각의 누증과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위탁영농회사 경영내부에 농한기사업을 도입하는 회사는 조사대상 21개사 가운데 11개사이다. 이들은 농한기 유희노동력 이용과 소득 증대라는 두가지 목표하에 농한기사업을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한기사업내용이 농업생산과 밀접히 관계된 것이 많고, 아직은 안정적인 농한기사업의 경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DI의 경우 비교적 안정된 농한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과거의 쌀 판매조직에 위탁영농회사를 도입한 결과이다.

### 1.6.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성과 분석

위탁영농회사 1개사당 총수입은 27,630천원에서 많게는 423,383천원으로 다양하며, 평균 120,671천원이다. 이 가운데 수탁수입은 89.8%, 농한기 수입은 10.2%이다. 연도별 총수입이 약간 증가하지만 작업수수료의 증가를 감안하면 그렇지 않은 않다. 특히, 수탁작업수입이 상대적으로 정체내지 감소하고 있으며, 농한기사업수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영비 지출규모도 회사에 따라, 년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평균 89,799천원이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비와 지급인건비 비중이 각각 36.6%, 17.2%로 가장 높다. 참여자 인건비를 제외한 총비용을 총수입으로 나눈 수지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영수지의 악화가 예견된다. 비용 지출이 많은 요인은 과도한 고정자산 보유, 내부적 갈등 증대, 경영관리의 미숙 등으로 생각된다.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익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참여자 실지급 인건비를 경영비용에 포함시킬 경우 조사대상 21개사 가운데 11개사가 적자이다. 정상적인 인건비를 지불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적자회사가 16개사로 늘어난다. 다만 보조금, 인건비 미지급 혹은 소규모지급, 감가상각비의 미적립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획기적인 수익이 달성되지 않는 한 조직 갈등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1.7. 관련 제도

위탁영농회사의 궁극적인 조성목적은 수탁작업규모 확대를 통한 구조개선이었다. 정부 조성 총계획치는 1991년 200개, 1992년에는 1,260개, 1993년에는 2,000개소로 늘어났다. 일정한 설립요건이 있으나 대체로 5인 이상이면 조성이 가능하다. 단, 영농장비나 시설은 일정요건을 주문하고 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은 1개사당 95,220천원이며, 이 가운데 50%인 47,610천원은 정부 보조금(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율 5:5)이다. 시설 설치자금은 1개 위탁영농회사당 33,000천원(3년 거치 7년 상환, 5%)이며, 기타 경영비 20,000천원(1년, 5%), 기타 소득사업은 최고 2억(3년 거치 7년 상환, 5%)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세제 지원은 법인세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부터 5년간 50% 감면을 받으며, 농용자재의 부가세 면제를 받는다. 수탁경영과 작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일부 인지세도 면제된다. 특히, 지방세로서 고유업무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면제된다.

관계기관의 지원체계는 세세히 갖춰졌으나 실질 운영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위탁영농회사 자체에 의한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 결국 획일적·일시적 지원에 따른 중복투자는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경영주체의 육성은 오히려 정책적·개별경영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적절한 농한기사업의 지원체제가 없다.

## 2. 결 론

### 2. 1. 일반사항

현실적으로 위탁영농회사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농촌에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듯하다. 더욱이 농기계 이용의 비효율성과 경영수익의 열악성은 조직체로서의 존립의의를 상실해 가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수적 규모 확대는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 농업구조 개선차원이란 다른 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 2. 2. 조직과정

위탁영농회사를 조직할 때는 첫째 조직 구성원간의 친밀도가 높은 소수의 인원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둘째 과도한 욕심을 자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적절한 농한기 사업을 추천해 줄 필요가 있다. 세번째 출자시부터 균등원칙을 세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자에 대한 사전 경영 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2. 3. 사업실태

위탁영농회사의 수탁작업 확대를 위해서는 농작업이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조직화·집단화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 수탁작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포장이 분산되고, 작업시간이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어 작업 수행의 비효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수익성이 높은 농한기 사업의 조직적·지속적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 2. 4. 수 지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지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는 적절한 소득사업과 안정적 경영관리 없이는 존립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이들

의 상당수가 수탁작업보다는 농한기사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위탁영농회사를 단순한 수익목적의 법인으로라도 유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처음부터 농한기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5. 제 도

확일적·일시적 자금 지원을 재고해야 하며, 여러 형태로 육성되고 있는 경영조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농한기사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과 각종 세제의 확대면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표 1 회사별 대표자의 변화 및 실제 참여자의 변화

단위: 명

설립 년도	회사	대표 변경 <sup>1)</sup>	설립 자수	혁식 상수	1991			1992			1993		
					탈퇴	신규	실제	탈퇴	신규	실제	탈퇴	신규	실제
1 9 9 1	Cs	○	4	0	0	0	4	1	1	4	1	1	4
	Is	×	5	0	1	0	4	0	0	4	1	1	4
	Jus	○	8	0	1	1	8	6	3	5	0	0	5
	Jos	○	15	0	0	0	15	7	0	8	3	0	5
	Dp	×	8	0	2	0	6	0	0	6	1	0	5
	Dd	×	7	2	0	0	5	5	2	2	1	2	3
	My	○	7	0	3	0	4	0	6	10	6	0	4
	계	4	54	2	7	1	46	19	12	39	13	4	30
1 9 9 2	Dl	×	7	1				2	0	4	1	0	3
	Yd	×	5	0				2	0	3	0	0	3
	Md	×	5	0				0	0	5	0	0	5
	Sy	○	5	0				2	0	3	0	0	3
	Dj	×	8	0				1	0	7	3	0	4
	Ma	×	8	0				5	1	4	2	1	3
	Mg	×	2	0				0	0	2	0	0	2
계	1	40	1				12	1	28	6	1	23	
1 9 9 3	Pt	×	6	0							0	0	6
	Di	×	5	0							0	0	5
	Ss	×	5	0							0	0	5
	Id	×	5	0							0	0	5
	Bg	×	5	0							2	0	3
	Hj	○	6	0							2	1	5
	Wh	×	4	1							0	0	3
계	1	36	1							4	1	32	
합	계	6	130	4	7	1	46	31	13	67	23	6	85

주: 1) 대표변경의 경우 변경되지 않을 경우 ×, 변경될 경우 ○ 임.  
합계는 변경된 회사의 수를 가리킴.

부표 2 회사별, 연령별 분포(1993년말)

단위: 명

설립 년도	회 사	~24세	~29	~34	~39	~44	~49	50~	계
1 9 9 1	Cs	0	0	3	1	0	0	0	4
	Is	0	0	1	3	0	0	0	4
	Jus	0	0	2	3	0	0	0	5
	Jos	0	0	4	1	0	0	0	5
	Dp	0	0	2	1	2	0	0	5
	Dd	0	1	0	1	1	0	0	3
	My	0	0	1	3	0	0	0	4
	계	0	1	13	13	3	0	0	30
1 9 9 2	Dl	0	1	2	0	0	0	0	3
	Yd	0	0	2	0	1	0	0	3
	Md	0	4	1	0	0	0	0	5
	Sy	0	0	0	2	1	0	0	3
	Dj	0	0	1	3	0	0	0	4
	Ma	0	1	0	2	0	0	0	3
	Mg	0	0	0	2	0	0	0	2
	계	0	6	6	9	2	0	0	23
1 9 9 3	Pt	0	0	0	6	0	0	0	6
	Di	0	0	1	1	2	1	0	5
	Ss	0	0	5	0	0	0	0	5
	Id	0	0	0	4	1	0	0	5
	Bg	2	0	0	0	1	0	0	3
	Hj	0	1	4	0	0	0	0	5
	Wh	0	0	0	0	0	0	3	3
	계	2	1	10	11	4	1	3	32
합	계	2	8	29	33	9	1	3	85

부표 3 회사별, 학력별 분포, 1993

단위: 명

설립년도	회 사	국 출	중 출	고 출	전문대출	대 출	계
1 9 9 1	Cs	0	3	0	0	1	4
	Is	0	0	4	0	0	4
	Jus	0	0	5	0	0	5
	Jos	0	2	3	0	0	5
	Dp	0	3	2	0	0	5
	Dd	0	0	3	0	0	3
	My	0	0	4	0	0	4
	계	0	8	21	0	1	30
1 9 9 2	Dl	0	0	3	0	0	3
	Yd	0	0	3	0	0	3
	Md	0	0	1	4	0	5
	Sy	0	2	1	0	0	3
	Dj	0	0	4	0	0	4
	Ma	0	0	2	1	0	3
	Mg	0	0	2	0	0	2
	계	0	2	16	5	0	23
1 9 9 3	Pt	0	0	6	0	0	6
	Di	0	1	4	0	0	5
	Ss	0	0	5	0	0	5
	Id	0	4	1	0	0	5
	Bg	0	0	3	0	0	3
	Hj	0	0	5	0	0	5
	Wh	0	0	3	0	0	3
	계	0	5	27	0	0	32
합	계	0	15	64	5	1	85

부표 4 회사별, 영농경력별 분포, 1993

단위: 명

설립년도	회 사	~4	~9	~14	~19	20~	계
1 9 9 1	Cs	1	2	1	0	0	4
	Is	0	0	4	0	0	4
	Jus	0	0	5	0	0	5
	Jos	0	0	4	1	0	5
	Dp	0	3	2	0	0	5
	Dd	0	1	0	1	1	3
	My	0	0	4	0	0	4
	계	1	6	20	2	1	30
1 9 9 2	Dl	0	2	1	0	0	3
	Yd	0	2	0	1	0	3
	Md	0	4	1	0	0	5
	Sy	0	0	2	1	0	3
	Dj	0	0	2	2	0	4
	Ma	1	0	1	1	0	3
	Mg	0	0	2	0	0	2
	계	1	8	9	5	0	23
1 9 9 3	Pt	0	0	0	6	0	6
	Di	0	1	1	2	1	5
	Ss	0	4	1	0	0	5
	Id	0	0	1	3	1	5
	Bg	2	0	0	1	0	3
	Hj	1	0	3	0	1	5
	Wh	0	0	1	2	0	3
	계	3	5	7	14	3	32
합	계	5	19	36	21	4	85

부표 5 회사별, 농기계운전 경력별 분포, 1993

단위: 명

설립년도	회 사	~4년	~9	~14	~19	20~	계
1 9 9 1	Cs	1	2	1	0	0	4
	Is	0	0	4	0	0	4
	Jus	0	0	5	0	0	5
	Jos	0	0	4	1	0	5
	Dp	0	2	2	0	1	5
	Dd	2	1	0	0	0	3
	My	0	0	4	0	0	4
	계	3	5	20	1	1	30
1 9 9 2	Dl	0	2	1	0	0	3
	Yd	0	2	1	0	0	3
	Md	0	4	1	0	0	5
	Sy	0	0	2	1	0	3
	Dj	2	2	0	0	0	4
	Ma	1	0	1	1	0	3
	Mg	0	0	2	0	0	2
	계	3	10	8	2	0	23
1 9 9 3	Pt	0	0	0	6	0	6
	Di	0	1	1	2	1	5
	Ss	2	2	1	0	0	5
	Id	0	0	1	3	1	5
	Bg	2	0	1	0	0	3
	Hj	3	1	1	0	0	5
	Wh	0	1	2	0	0	3
	계	7	5	7	11	2	32
합	계	13	20	35	14	3	85

부표 6 회사별, 수리능력별 분포, 1993

단위: 명

설립년도	회 사	숙 달	보 통	미 숙	계
1 9 9 1	Cs	3	0	1	4
	Is	1	2	1	4
	Jus	1	3	1	5
	Jos	1	4	0	5
	Dp	2	2	1	5
	Dd	1	0	2	3
	My	2	2	0	4
	계	11	13	6	30
1 9 9 2	Dl	0	3	0	3
	Yd	1	2	0	3
	Md	1	4	0	5
	Sy	0	3	0	3
	Dj	2	2	0	4
	Ma	2	1	0	3
	Mg	2	0	0	2
	계	8	15	0	23
1 9 9 3	Pt	2	4	0	6
	Di	2	3	0	5
	Ss	2	3	0	5
	Id	1	2	2	5
	Bg	0	3	0	3
	Hj	2	0	3	5
	Wh	0	2	1	3
	계	9	17	6	32
합	계	28	45	12	85

부표 7 회사별 인적 구성원의 경력(1993년말 현재)

단위: 명

설립년도	구분 회사	후계자와 영농단원	후 계 자	영농단위	전 체 실제참여자수
1 9 9 1	Cs	2	1	0	4
	Is	1	1	0	4
	Jus	2	0	0	5
	Jos	1	2	1	5
	Dp	0	4	0	5
	Dd	1	1	0	3
	My	0	1	1	4
	계	7	10	2	30
1 9 9 2	Dl	2	0	1	3
	Yd	0	0	3	3
	Md	1	0	1	5
	Sy	1	0	1	3
	Dj	1	3	0	4
	Ma	1	0	1	3
	Mg	1	0	1	2
	계	7	3	8	23
1 9 9 3	Pt	1	0	5	6
	Di	0	0	5	5
	Ss	0	3	0	5
	Id	0	0	5	5
	Bg	0	1	0	3
	Hj	2	0	2	5
	Wh	3	0	0	3
	계	6	4	17	32
합 계		20	17	27	85

부표 8 회사별, 영농규모별 분포, 1993

단위: 평

설립년도	회 사	~1,000	~3,000	~6,000	~9,000	~12,000	12,000이상	계
1 9 9 1	Cs	0	0	2	1	1	0	4
	Is	0	1	2	1	0	0	4
	Jus	0	1	0	3	0	1	5
	Jos	0	0	3	1	0	1	5
	Dp	0	0	4	1	0	0	5
	Dd	0	0	1	1	1	0	3
	My	0	3	1	0	0	0	4
	계	0	5	13	8	2	2	30
1 9 9 2	Dl	0	1	1	1	0	0	3
	Yd	0	0	0	1	0	2	3
	Md	0	0	3	1	1	0	5
	Sy	0	0	3	0	0	0	3
	Dj	2	1	1	0	0	0	4
	Ma	1	0	1	0	1	0	3
	Mg	1	0	1	0	0	0	2
	계	4	2	10	3	2	2	23
1 9 9 3	Pt	0	0	3	2	0	1	6
	Di	1	2	2	0	0	0	5
	Ss	0	0	1	3	0	1	5
	Id	0	0	3	2	0	0	5
	Bg	1	0	0	2	0	0	3
	Hj	0	0	3	1	0	1	5
	Wh	0	0	0	3	0	0	3
	계	2	2	12	13	0	3	32
합	계	6	9	35	24	4	7	85

부표 9 위탁영농회사의 회사별 기초자산

단위: 천원

1991년 설립회사	Cs	Is	Jus	Jos	Dp	Dd	My	평균
현 금 출 자	0	81,579	17,800	37,893	40,180	50,000	43,000	38,636
현 물 출 자	21,328	38,500	81,200	0	12,791	0	12,950	23,824
보 조 금	0	35,470	0	35,600	35,470	34,500	35,470	25,216
농기계융자금	0	28,376	0	23,500	99,090	74,000	49,886	39,265
시 설 융 자 금	0	0	0	25,000	26,000	26,000	26,000	14,714
운 영 융 자 금	20,000	10,000	20,000	20,000	0	4,000	10,000	12,000
금융기관차입금	0	0	15,000	0	0	90,000	0	15,000
사 채 차 입 금	0	0	180,000	0	0	60,000	0	34,286
합 계	41,328	193,925	314,000	141,993	213,531	338,500	177,206	202,940
1992년 설립회사	DI	Yd	Md	Sy	Dj	Ma	Mg	평균
현 금 출 자	0	35,833	43,481	46,785	122,000	42,000	50,366	48,638
현 물 출 자	11,100	0	0	24,830	29,357	64,684	15,135	20,729
보 조 금	41,220	51,250	43,360	41,220	41,220	80,000	41,220	48,499
농기계융자금	44,220	55,860	32,976	23,000	32,500	60,000	0	35,508
시 설 융 자 금	33,000	22,973	33,000	33,000	33,000	0	0	22,139
운 영 융 자 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30,000	20,000	21,429
금융기관차입금	200,000	0	7,000	0	50,000	20,000	0	39,571
사 채 차 입 금	0	0	0	0	0	35,000	22,100	8,157
합 계	349,540	185,916	179,817	188,835	328,077	331,684	148,821	244,670
1993년 설립회사	Pt	Di	Ss	Id	Bg	Hj	Wh	평균
현 금 출 자	89,363	50,000	15,000	52,345	8,000	36,198	95,048	49,422
현 물 출 자	24,737	0	79,762	23,404	11,097	900	61,938	28,834
보 조 금	45,342	48,000	0	46,000	45,500	48,035	45,000	39,697
농기계융자금	43,225	55,680	30,000	7,000	36,400	37,000	36,731	35,148
시 설 융 자 금	0	33,000	33,000	33,000	33,000	0	4,200	19,457
운 영 융 자 금	20,000	0	0	20,000	20,000	20,000	20,000	14,286
금융기관차입금	0	0	10,000	0	5,000	0	0	2,143
사 채 차 입 금	15,000	0	0	0	0	0	10,000	3,571
합 계	237,687	186,680	167,762	181,749	158,997	142,133	272,917	192,558

부표 10 회사별 부지의 면적과 평가액

단위: 평, 천원

실 업 종 류	구 분		소 유					임 차						
	회사명	년도	면 적			평 가 액			면 적			평 가 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9 9 1	Cs		0	0	654	0	0	38,538	150	150	150	0	0	0
	Is		520	520	520	7,800	7,800	7,800	0	0	0	0	0	0
	Jus		150	150	150	35,000	35,000	35,000	900	900	900	1,000	1,000	1,000
	Jos		150	150	150	28,000	28,000	28,000	150	150	150	0	0	0
	Dp		0	0	0	0	0	0	900	900	900	2,000	2,000	2,000
	Dd		0	0	0	0	0	0	600	1084	1084	0	0	0
	My		0	969	1,096	0	53,295	60,280	0	0	610	0	0	732
	Dl			0	0		0	0		900	900		0	0
	Yd			0	0		0	0		450	450		0	0
9 9 2	Md			0	0		0	0		400	400		0	0
	Sy			1,201	1,201		19,500	19,500		0	0		0	0
	Dj			3,650	3,650		109,500	109,500		0	0		0	0
3	Ma			1,400	1,400		42,000	42,000		0	0		0	0
	Mg			0	0		0	0		39	39		60	60
1 9 9 3	Pt				683			40,980			0			0
	Di				0			0			400			0
	Ss				0			0			200			0
	Id				0			0			600			1,138
	Bg				0			0			105			42
	Hj				0			0			170			1,500
	Wh				900			51,750			0			0

부표 11 회사별 격납고의 보유 현황

단위: 평, 천원

설립 년도	구 분		소 유					임 차						
	회사명	년도	면 적			평 가 액			면 적			평 가 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9 9 1	Cs		0	0	40	0	0	18,766						
	Is		54	54	54	9,550	9,100	8,650						
	Jus		0	60	60	0	15,471	14,742						
	Jos		55	55	55	15,007	14,300	13,593						
	Dp		70	70	70	9,550	9,550	8,650						
	Dd		55	55	45	4,400	800	21,488						
1 9 9 2	My		60	60	60	12,482	11,482	11,306						
	Dl			60	60		23,875	22,750						
	Yd			50	50		22,618	21,552						
	Md			60	60		29,090	27,720						
	Sy			58	58		38,200	36,400						
	Dj			96	96		32,088	30,576						
2	Ma			0	40		0	14,104						
	Mg									30	30		375	375
1 9 9 3	Pt				60			23,875						
	Di				50			19,100						
	Ss				40			8,318						
	Id				50			19,100						
	Bg				60			28,650						
	Hj										40			150
	Wh				50			20,224						

부표 12 회사별 사무실의 보유 현황

단위: 평, 천원

연도	구분 회사명	소유						임차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Cs	0	0	18	0	0	4,775						
	Is	4	4	4	1,433	1,365	1,298						
	Jus	5	5	5	1,289	1,229	1,168						
	Jos	5	5	5	1,365	1,300	1,236						
	Dp	20	20	20	5,730	5,460	5,190						
	Dd	15	15	15	4,125	750	7,163						
9	My	20	20	20	6,208	5,915	5,623						
	Dl		20	20		9,550	9,100						
	Yd		15	15		6,785	6,466						
	Md		5	5		2,425	2,310						
	Sy		18	18		7,640	7,280						
	Dj		10	10		3,343	3,185						
	Ma		0	20		0	7,053						
	Mg								4	4		50	50
	Pt			20			6,685						
	Di			10			3,343						
9	Ss			8			3,820						
	Id			20			7,640						
	Bg			0			0						
3	Hj									6			50
	Wh			15			6,067						

부표 13 회사별 정비실의 보유 현황

단위: 평, 천원

연도	구분 회사명	소유						임차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9 9 1	Cs	0	0	0	0	0	0						
	Is	4	4	4	1,433	1,365	1,298						
	Jus	0	0	0	0	0	0						
	Jos	0	0	0	0	0	0						
	Dp	30	30	30	15,853	15,106	14,359						
	Dd	0	0	0	0	0	0						
	My	20	20	20	5,014	4,778	4,541						
1 9 9 2	Dl		0	0		0	0						
	Yd		15	15		6,785	6,466						
	Md		0	0		0	0						
	Sy		5	5		7,640	7,280						
	Dj		0	0		0	0						
	Ma		0	0		0	0						
	Mg								10	10		125	125
1 9 9 3	Pt			40		7,640							
	Di			10		955							
	Ss			0		0							
	Id			10		3,820							
	Bg			0		0							
	Hj			0		0							
	Wh			10		4,044							

부표 14 회사별 건조장의 보유 현황

단위: 평, 천원

구분 회사명 년도	소 유						임 차						
	면 적			평 가 액			면 적			평 가 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9 9 1	Cs	0	0	20	0	0	15,581						
	Is		80	80	0	4,298	4,095						
	Jus	0	0	0	0	0	0						
	Jos	10	10	10	2,728	2,600	2,471						
	Dp	0	0	0	0	0	0						
	Dd	0	0	0	0	0	0						
	My	40	40	40	8,318	7,926	7,534						
1 9 9 2	Dl		60	60		23,875	22,750						
	Yd		15	15		6,785	6,466						
	Md		0	0		0	0						
	Sy		10	10		1,910	1,820						
	Dj		0	0		0	0						
	Ma		0	5		0	1,176						
	Mg								30	30		200	200
1 9 9 3	Pt			50			9,550						
	Di			10			955						
	Ss			20			4,097						
	Id			60			14,325						
	Bg			0			0						
	Hj			0			0						
	Wh			10			4,044						

부표 15 회사별 육묘장의 보유 현황

단위: 평, 천원

구분 연도	구분 회사명	소유						임차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9 9 1	Cs							150	150	150	2,700	2,700	2,700
	Is	50	50	50	1,910	1,820	1,730						
	Jus	100	100	100	4,202	4,004	3,806						
	Jos	0	0	0	0	0	0						
	Dp	200	200	200	1,433	1,365	1,298						
	Dd	75	475	400	3,850	19,800	18,200						
	My	519	519	519	3,820	3,640	3,460						
1 9 9 2	Dl		0	0		0	0						
	Yd		6	6		143	137						
	Md		90	90		4,393	4,186						
	Sy		200	200		Bg8	5,096						
	Dj		0	0		0	0						
	Ma		0	100		0	3,209						
	Mg								1,200	1,200		600	600
1 9 9 3	Pt			0		0							
	Di			0		0							
	Ss			100		3,343							
	Id			50		1,910							
	Bg			50		2,865							
	Hj			50		1,113			50				100
	Wh			50		1,433							

부표 16 회사별 부대사업시설의 보유 현황

단위: 평, 천원

연도	구분 회사명	소유						임차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9	Cs	0	0	0	0	0	0						
	Is	0	0	0	0	0	0						
	Jus	150	150	150	42,975	40,950	38,925						
	Jos	0	0	0	0	0	0						
	Dp	0	0	0	0	0	0						
	Dd	0	0	0	0	0	0						
	My	0	0	710	0	0	61,025						
1999	Dl		120	120		47,750	45,500						
	Yd		0	0		0	0						
	Md		0	0		0	0						
	Sy		0	210		0	49,660						
	Dj		0	0		0	0						
	Ma		900	900		75,044	71,508						
	Mg		0	0		0	0						
1999	Pt			0			0						
	Di			0			0						
	Ss			0			0						
	Id			0			0						
	Bg			0			0						
	Hj			0			0						
	Wh			0			0						

부표 17 회사별 기타시설의 보유 현황

단위: 평, 천원

연도	구분 회사명	소유						임차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Cs	0	0	0	0	0	0						
	Is	0	0	0	0	0	0						
	Jus	0	0	0	0	0	0						
	Jos	0	0	0	0	0	0						
	Dp	0	0	0	0	0	0						
	Dd	0	0	0	0	0	0						
	My	30	30	30	1,433	1,365	1,298						
1992	Dl		0	0		0	0						
	Yd		3	3		334	319						
	Md		0	0		0	0						
	Sy		0	0		0	0						
	Dj		14	14		4,680	4,459						
	Ma		0	60		0	11,460						
	Mg		0	0		0	0						
1993	Pt			0			0						
	Di			0			0						
	Ss			0			0						
	Id			0			0						
	Bg			0			0						
	Hj			0			0						
	Wh			0			0						

부표 18 회사별 트랙터의 보유 현황

단위: 마력, 대, 천원

연도	구분 회사명	총 규 격			대 수			총 가 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Cs	147	195	281	4	5	6	11,900	19,825	41,340
	Is	235	273	217	6	7	5	42,544	35,787	30,131
	Jus	217	465	465	6	9	9	28,800	91,300	85,200
	Jos	87	172	172	3	5	5	18,287	34,677	22,208
	Dp	217	297	307	5	6	5	45,912	33,224	53,830
	Dd	89	89	89	2	2	2	28,985	20,570	12,155
1992	My	162	197	197	4	5	5	32,410	38,740	28,870
	Dl		38	144		1	3		2,870	43,953
	Yd		72	72		2	2		25,140	20,703
	Md		206	206		4	4		62,635	55,840
	Sy		88	88		2	2		28,165	25,379
	Dj		250	250		5	5		51,690	37,380
1993	Ma		159	392		2	5		40,800	53,674
	Mg		144	144		3	3		31,975	26,950
	Pt			191			5			45,432
	Di			120			2			36,193
	Ss			179			4			38,270
	Id			135			3			42,872
1994	Bg			162			3			49,080
	Hj			144			3			36,036
	Wh			301			4			60,334

부표 19 회사별 이양기의 보유 현황

단위: 조, 대, 천원

연도	구분 회사명	총 규 격			대 수			총 가 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Cs	0	14	18	0	3	4	0	2,928	10,591
	Is	24	30	30	4	5	5	14,127	17,037	11,947
9	Jus	4	16	16	1	3	3	3,100	14,542	11,464
	Jos	32	32	32	6	6	6	8,835	6,270	3,705
9	Dp	19	12	18	4	2	3	12,101	8,547	11,072
	Dd	28	28	28	5	5	5	21,278	14,496	7,088
1	My	12	18	18	2	3	3	11,906	15,246	7,986
	Dl		36	36		6	6		28,375	18,805
1	Yd		12	16		2	3		6,601	4,444
	Md		26	26		5	5		12,110	9,140
9	Sy		32	32		7	7		10,869	9,002
	Dj		18	18		3	3		15,513	13,130
2	Ma		0	12		0	2		0	13,260
	Mg		28	28		5	5		16,925	12,016
1	Pt			28			7			7,749
	Di			10			2			7,491
9	Ss			8			2			2,873
	Id			20			4			8,060
9	Bg			12			2			13,192
	Hj			16			3			12,051
3	Wh			12			2			8,539

부표 20 회사별 콤바인의 보유 현황

단위: 조, 대, 천원

연도	구분 회사명	총 규 격			대 수			총 가 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9 9 1	Cs	4	7	14	1	2	4	3,200	9,198	30,635
	Is	17	19	15	5	5	4	34,590	30,412	18,234
	Jus	15	26	26	4	7	7	24,180	48,414	44,937
	Jos	4	12	12	1	3	3	14,000	30,250	12,400
	Dp	21	21	21	6	6	6	51,228	24,310	21,483
	Dd	8	8	8	2	2	2	26,740	15,280	3,820
1 9 9 2	My	18	15	15	5	4	4	47,560	36,860	26,240
	Dl		9	15		3	5		46,035	47,380
	Yd		7	11		1	2		38,540	38,640
	Md		12	6		4	2		25,625	17,050
	Sy		13	10		4	3		32,316	26,168
	Dj		11	11		3	3		42,000	24,000
	Ma		0	7		0	2		0	17,100
	Mg		8	8		2	2		32,300	26,600
1 9 9 3	Pt			15			5			42,922
	Di			6			2			21,716
	Ss			6			2			7,308
	Id			16			4			41,522
	Bg			11			3			36,921
	Hj			13			4			27,090
	Wh			11			3			14,927

부표 21 회사별 건조기의 보유 현황

단위: 석, 대, 천원

연도	구분 회사명	총 규 격			대 수			총 가 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9 9 1	Cs	0	0	82	0	0	2	0	0	6,616
	Is	88	88	88	2	2	2	5,699	5,099	4,498
	Jus	0	0	97	0	0	2	0	0	7,573
	Jos	72	72	72	2	2	2	4,511	3,201	1,892
	Dp	21	21	21	1	1	1	388	275	163
	Dd	0	0	0	0	0	0	0	0	0
	My	45	45	45	1	1	1	1,112	2,804	2,497
1 9 9 2	Dl		78	78		2	2		3,033	2,367
	Yd		108	144		3	4		7,537	9,083
	Md		36	36		1	1		3,276	2,952
	Sy		88	88		2	2		3,562	3,175
	Dj		0	0		0	0		0	0
	Ma		54	54		1	1		3,094	2,788
	Mg		36	36		1	1		2,661	2,191
1 9 9 3	Pt			84			2			6,495
	Di			72			2			5,678
	Ss			72			2			5,575
	Id			163			4			8,824
	Bg			0			0			0
	Hj			57			2			3,463
	Wh			36			1			3,029

부표 22 회사별 방제기의 보유 현황

단위: A, 대, 천원

연도	구분 회사명	총 규 격			대 수			총 가 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Cs	0	100	100	0	1	1	0	3,825	3,150
	Is	280	210	240	4	3	3	1,171	741	1,357
	Jus	100	250	250	1	2	2	1,640	4,953	4,265
9	Jos	100	100	100	1	1	1	1,743	1,486	1,229
9	Dp	400	400	400	1	1	1	3,825	3,150	2,475
1	Dd	270	270	410	3	3	5	2,647	1,733	978
	My	270	270	270	3	3	3	4,264	3,328	2,392
1	Dl		140	140		11	11		3,550	2,650
	Yd		210	280		3	4		474	664
	Md		0	0		0	0		0	0
9	Sy		0	350		0	5		0	832
9	Dj		0	0		0	0		0	0
2	Ma		0	0		0	0		0	0
	Mg		0	0		3	3		10,636	8,771
1	Pt			120			3			60
	Di			0			0			0
	Ss			0			0			0
9	Id			0			0			0
9	Bg			100			1			1,647
	Hj			792			4			9,451
	Wh			0			0			0

부표 23 회사별 차량의 보유 현황

단위: 대, 천원

연도	구분 회사명	대 수			총 가 액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9 9 1	Cs	0	1	4	0	2,325	14,860
	Is	1	1	1	5,986	4,672	3,358
	Jus	4	4	5	5,200	3,400	6,940
	Jos	0	0	0	0	0	0
	Dp	1	2	2	2,870	13,290	10,710
	Dd	3	3	4	22,034	17,509	17,303
	My	1	1	1	348	269	0
1 9 9 2	Dl		5	5		37,274	28,897
	Yd		2	2		2,240	800
	Md		1	2		1,650	10,786
	Sy		1	2		4,920	17,783
	Dj		0	0		0	0
	Ma		1	2		1,268	4,967
	Mg		1	1		5,446	4,642
1 9 9 3	Pt			0			0
	Di			0			0
	Ss			0			0
	Id			0			0
	Bg			0			0
	Hj			2			3,900
	Wh			1			1,400

부표 24 회사별 트랙터 부속작업기의 보유 현황

단위: 천원

설립 년도	회사명	구 분	총 가 액		
		년 도	1991	1992	1993
1 9 9 1	Cs		1,116	954	5,220
	Is		13,750	11,992	11,494
	Jus		4,018	14,101	11,284
	Jos		3,343	4,085	3,027
	Dp		7,216	11,036	9,619
	Dd		7,216	7,000	5,472
	My		10,332	11,016	14,496
1 9 9 2	Dl			0	0
	Yd			5,467	4,533
	Md			8,282	6,464
	Sy			7,860	6,701
	Dj			5,771	6,685
	Ma			6,720	9,750
	Mg			1,351	1,151
1 9 9 3	Pt				12,227
	Di				9,499
	Ss				16,685
	Id				5,659
	Bg				2,870
	Hj				5,001
	Wh				15,163

부표 25 회사별 수리장비의 보유 현황

단위: 천원

설 년 도	회 사 명	구 분	총 가 액		
		년 도	1991	1992	1993
1 9 9 1	Cs		0	0	0
	Is		2,554	1,994	1,433
	Jus		1,365	Pt0	1,095
	Jos		91	82	73
	Dp		910	820	730
	Dd		820	640	831
	My		2,255	1,760	1,265
1 9 9 2	Dl			1,331	1,163
	Yd			2,061	1,857
	Md			1,488	1,070
	Sy			820	640
	Dj			820	640
	Ma			1,558	1,387
	Mg			410	320
1 9 9 3	Pt				2,460
	Di				2,460
	Ss				820
	Id				0
	Bg				455
	Hj				0
	Wh				410

부표 26 회사별 기타장비의 보유 현황

단위: 천원

설립 년도	구분 회사명	총 가 액		
		1991	1992	1993
1 9 9 1	Cs	0	910	4,920
	Is	9,353	11,982	10,010
	Jus	1,820	5,805	5,011
	Jos	8,799	6,867	5,502
	Dp	14,375	33,408	28,437
	Dd	8,535	10,615	14,262
	My	2,614	7,501	8,008
1 9 9 2	Dl		6,131	3,847
	Yd		5,981	5,216
	Md		3,116	4,482
	Sy		1,948	5,155
	Dj		16,803	16,778
	Ma		4,590	4,613
	Mg		23,848	19,640
1 9 9 3	Pt			775
	Di			1,611
	Ss			683
	Id			3,905
	Bg			1,133
	Hj			10,811
	Wh			21,730

부표 27 회사별 부대사업장비의 보유 현황

단위: 천원

설 립 년 도	회 사 명	구 분 년 도	총 가 액		
			1991	1992	1993
1 9 9 1	Cs		0	0	0
	Is		0	0	0
	Jus		0	284,309	270,912
	Jos		0	0	0
	Dp		0	0	0
	Dd		0	0	0
	My		0	0	19,201
1 9 9 2	Dl			45,500	41,000
	Yd			0	0
	Md			0	0
	Sy			0	43,589
	Dj			0	10,920
	Ma			33,507	27,594
	Mg			0	0
1 9 9 3	Pt				0
	Di				0
	Ss				0
	Id				0
	Bg				0
	Hj				0
	Wh				0

부표 28 회사의 완전위탁 및 임대차 작업면적

단위: 천평

설립 년도	구분 회사명	년도	완 전 위 탁			임 대 차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9 9 1	Cs		76.0	186.0	186.0	75.0	53.0	20.0
	Is		33.0	42.0	42.0	0.0	25.0	67.0
	Jus		96.0	100.0	144.0	0.0	0.0	0.0
	Jos		75.0	90.0	60.0	0.0	0.0	0.0
	Dp		228.0	240.0	272.0	8.0	1.6	0.9
	Dd		363.0	198.0	130.0	40.0	25.0	20.0
	My		164.0	207.0	165.0	0.0	4.5	6.0
1 9 9 2	Dl			0.0	0.0		60.0	60.0
	Yd			60.0	48.0		0.0	0.0
	Md			138.0	60.0		0.0	10.0
	Sy			80.0	40.0		5.5	8.5
	Dj			93.0	160.0		0.0	0.0
	Ma			60.0	30.0		0.0	0.0
	Mg				0.0	0.0	2.6	0.0
1 9 9 3	Pt				0.0			62.0
	Di				140.0			14.0
	Ss				40.0			0.0
	Id				0.0			0.0
	Bg				0.0			0.0
	Hj				96.0			0.0
	Wh				60.0			1.2

부표 29 회사의 부분위탁 작업면적

단위: 천평

162

연도	구분 회사명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시비*			방제*			수확			건조			기타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1	Cs	36	81	106	30	81	106	90	93	138	120	93	9	0	18	15	50	75	13	297	84	129	0	69	114	0	20	134
	Js	340	187	300	340	240	300	0	0	0	319	240	300	0	51	120	250	240	240	397	246	303	18	0	120	0	0	42
9	Jus	240	360	102	240	360	128	0	0	0	180	240	94	0	0	0	0	0	0	180	240	180	0	60	96	0	85	48
	Jos	75	150	180	75	150	180	0	0	0	75	90	150	0	0	60	0	450	480	75	60	192	0	30	72	75	450	183
1	Dp	0	0	38	0	0	38	0	0	0	0	0	38	0	0	0	0	0	0	0	0	38	0	0	0	0	3	60
	Dd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My	59	31	15	59	31	15	0	0	0	15	25	11	0	0	0	0	0	0	71	84	19	0	0	0	79	73	21
	Dl		300	120		300	120		300	600		300	600		0	1200		750	600		300	600		150	60		0	0
1	Yd		60	72		60	72		0	0		15	24		30	30		30	36		60	48		30	60		60	78
	Md		120	240		120	240		0	0		60	60		0	0		0	0		300	300		0	0		0	60
9	Sy		80	80		80	80		0	0		60	80		0	0		35	0		100	153		35	46		10	10
	Dj		0	0		235	80		0	0		72	100		0	0		0	0		186	200		0	0		260	140
2	Ma		100	60		0	0		0	0		0	36		0	0		0	0		100	45		0	6		111	228
	Mg		56	66		108	100		178	126		172	130		0	0		0	0		162	148		26	8		120	107
1	Pt			59		59			29			89			0			29			89			59			0	
	Di			20		40			0			0			0			0			40			50			50	
9	Ss			135		135			45			45			0			10			60			21			0	
	Id			300		300			160			160			300			200			300			300			300	
9	Bg			59		59			23			59			0			0			150			0			0	
	Hj			40		0			0			0			0			0			160			0			0	
3	Wh			120		160			0			20			0			0			100			0			60	

\* 1회 작업 면적을 기준으로 함.

부표 30 회사의 완전위탁 및 임대차 작업수수료

단위: 원, 평

설 립 년 도	회 사 명	구 분 년 도	완 전 위 탁			임 대 차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9 9 1	Cs		505	705	572	1,887	1,958	1,784
	Is		367	377	392	0	1,909	1,325
	Jus		415	415	417	2,122	2,203	
	Jos		800	833	917		1,811	1,376
	Dp		400	400	425	1,887		
	Dd		350	450	450	1,887	1,811	1,529
	My		400	520	580			2,090
1 9 9 2	Dl			580	590		1,469	
	Yd			350	367		1,811	1,376
	Md			300	300			1,529
	Sy			430	430		2,007	1,784
	Dj			450	500		1,860	1,274
	Ma			1,007	450		2,203	
	Mg				565	605		2,007
1 9 9 3	Pt				583			
	Di				480			
	Ss				642			2,294
	Id							1,020
	Bg							
	Hj					490		1,529
	Wh					500		1,020

부표 31 회사의 부분위탁직업수료

단위: 원/평

구분 설립 년도	경운*		정지*		육묘		이양		시비*		방제*		수확		건조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연도	50	60	60	50	60	133	133	70	80	10	10	15	15	120	133	133	60	86	86
Cs	42	42	45	42	42	125	125	60	60	8	8	11	11	83	83	83	42	42	42
Is	40	40	40	40	40			40	40	10	10	10	10	80	80	83	50	58	58
Jus	34	39	42	34	39	167	167	55	58	3	3	3	3	5	100	100	67	67	67
Jos																			
Dp			30			70	165		60		15					75			
Dd	50	50	50	50	75	60	150	50	75					100	100	100			
My	40	50	50	40	50	60	130	60	70		90	130	150	80	90	100			
DI		50	55		70	75	150	150	80	80	20	20	20	120	120	120	70	70	70
Yd		42	50		42	50	100	100	67	67	5	5	5	100	100	100	35	35	35
Md		35	35		35	35	125	125	35	35						70	70		
Sy		45	45		45	45	170	170	60	60		50	50	110	110	110	35	35	35
Dj		50	50		75	75	185	185	90	90				100	100				
Ma		50	50		100	100	150	150	50	50		25	25	100	100				
Mg		50	75		75	80	150	150	75	80		30	30	100	125		60	60	60
Pt			55		55	55	105			75			20		130		65		
Di			65		65	65	120		80					150	150		50		
Ss			50		60	60	230		75	20			25	100	100		80		
Id			25		50	50	100		50	10			10	71	71		40		
Bg			40		40	40	190		60					100	100				
Hj			50		75	75	190		75				17	90	90				
Wh			50		50	50	125		100					100	100				

\* 1회 기준임.

부표 32 인근의 부분위탁직임수료

단위: 원/평

구분 월 년도 회 사 명 년도	경운*		정지*		육묘		이양		시비*		방제*		수확		건조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Cs	50	70	70	50	70	140	140	100	100			10	15	120	140	60	80
Js	48	48	50	48	48	144	144	69	79	9	9	10	12	92	92	46	46
Jus	40	40	40	40	40			40	40	10	10	10	10	80	80	50	58
Jos	42	42	42	42	42	167	167	67	67	3	3	3	5	100	100	67	67
Dp																	
Dd																	
My	50	60	60	50	60	130	130	70	70			100	130	100	100		
DI		60	60	60	80	170	170	100	100			20	20	140	140	80	80
Yd		42	50	42	50	117	117	67	67	5	5	5	5	100	100	35	35
Md		35	35	35	35	125	150	35	35					70	80		
Sy		45	45	45	45	170	170	60	60			50	50	110	110	35	35
Dj				100	100			90	100					115	125		
Ma		50	50	100	100	150	150	50	50					100	100		
Mg		60	75	75	80	175	175	80	80					150	150		
Pt			65		65		110		80			25		150	150	70	70
Di			65		65		120		80					150	150	50	50
Ss			50		60		230		75					100	100	80	80
Id			35		75		100		75			10					
Bg			40		40		190		60					100	100		
Hj														105	105		
Wh					50		150		125					125	125		

\* 1회 기준임.

부표 33 회사의 임대차와 완전위탁 및 농한기사업의 수입 현황

단위: 천원

설립 년도	구분 년도 회사명	임대차			완전위탁			농한기사업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9 9 1	Cs	141,498	103,782	35,684	38,380	131,130	106,392	7,600	7,300	33,900
	Is	0	47,730	88,802	12,111	15,834	16,464	0	22,092	0
	Jus	0	0	0	39,840	41,500	60,048	12,000	39,000	65,392
	Jos	0	0	0	60,000	74,970	55,020	0	60,000	18,000
	Dp	15,093	0	0	91,200	96,000	115,600	0	0	0
	Dd	75,466	45,282	30,586	127,050	89,100	58,500	0	0	4,020
	My	0	0	12,540	65,600	107,640	95,700	0	0	263
1 9 9 2	Dl		88,117	0		0	0		34,200	75,000
	Yd		0	0		21,000	17,616		0	0
	Md		0	15,293		41,400	18,000		0	0
	Sy		11,039	15,166		34,400	17,200		5,000	6,000
	Dj		0	0		41,850	80,000		0	0
	Ma		0	0		60,420	13,500		26,000	49,000
	Mg		5,218	0		0	0		0	0
1 9 9 3	Pt			0			0			0
	Di			0		67,200				0
	Ss			0		25,680				0
	Id			10,195			0			0
	Bg			0			0			1,600
	Hj			0		47,040				0
	Wh			1,223			30,000			0

부표 34 회사의 부분위탁사업의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시비*		방제*		수확		진조		기타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91	92	93											
설립년도	회사업년도																												
	1800	4860	6360	1500	4860	6360	10800	12369	16354	8400	7440	720	0	180	150	500	1125	195	35640	11172	17157	0	5894	9804	0	500	5080		
1	14178	7798	13300	14178	10008	13500	0	0	0	19140	14400	21600	0	423	966	2075	2592	2592	33070	20492	25240	751	0	5004	0	0	701		
9	9600	14400	4080	9600	14400	5542	0	0	0	7200	9600	4700	0	0	0	0	0	0	14400	19200	14944	0	3000	5568	0	0	6123		
9	2550	5850	7560	2550	5850	7560	0	0	0	4125	5220	10650	0	0	300	0	1350	2400	7500	6000	19200	0	2010	4824	7500	19260	17700		
1	0	0	1125	0	0	262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200	
1	0	0	0	0	0	6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660	1550	750	2360	1550	900	0	0	0	900	1750	770	0	0	0	0	0	0	5712	7596	1920	0	0	0	0	0	6320	6570	2100
	15000	6600		21000	9000		45000	90000		24000	48000		0	4000		5000	12000		36000	72000			10500	4200			0	0	
1	2562	3600		2502	3600		0	0	1005	1608		0	150		150	180			6000	4800			1050	2100			0	9900	
9		4200	8400		4200	8400		0	0	2100	2100		0	0	0	0	0	0	21000	21000			0	0			0	4200	
9	3600	3600		3600	3600		0	0	3600	4800		0	0	0	1750	0	1750	0	11000	16530			1225	1400			450	450	
9	0	0		17625	6000		0	0	6480	9000		0	0	0	0	0	0	0	18600	20000			0	0			23850	9900	
2	5000	3000		0	0		0	0	0	1800		0	0	0	0	0	0	0	10000	4500			0	0			6000	25350	
	0	0		8100	8100		26700	18900		12900	10400		0	0	0	0	0	0	16200	18500			1560	480			3250	11425	
	3245			3245			3045			6675		0	580							11570				3835				0	
1	1300			2600			0		0	0		0	0	0	0	0	0	0	6000				2500					1250	
9	6750			8100			10350			3375		0	250					0	6000				1680					0	
9	7500			15000			16000			8000		3000	2000					0	21300				12000					3000	
9	2360			2360			4570			3540		0	0					0	15000				0					0	
3	2000			0			0		0	0		0	0					0	14400				0					0	
	6000			8000			0		2000			0	0					0	10000				0					3000	

부표 35-1 회사별 대차대조표(1991년 설립회사의 1991년말)

단위: 천원

회사별		Cs	Is	Jus	Jos	Dp	Dd	My	평 균
항목별									
자	출 자	16,216	18,452	57,720	0	7,452	0	10,655	15,785
	보 조	0	65,823	0	45,801	56,219	58,628	77,160	43,376
	자 가	0	45,499	12,403	13,807	75,154	59,627	26,987	33,354
	시 설	0	14,325	48,466	19,100	32,566	12,375	37,274	23,444
	감가상각충당금	5,112	33,026	20,761	17,285	42,141	46,380	24,731	27,062
	부 지	0	7,800	35,000	28,000	0	0	0	10,114
산	유 동 자 산	67,937	22,208	147,554	4,879	1,161	184,397	0	61,162
	합 계	89,265	207,133	321,904	128,872	214,693	361,407	176,807	214,297
본	현 금 출 자	0	81,579	17,800	37,893	40,180	50,000	29,000	36,636
	현 물 출 자	21,328	29,500	73,200	0	12,791	0	12,950	21,396
	보 조 금	0	35,470	0	35,600	35,470	34,500	35,470	25,216
	농기계용자금	0	28,376	0	23,500	99,090	74,000	85,245	44,316
	시설용자금	0	0	0	25,000	26,000	26,000	26,000	14,714
	운영용자금	0	0	0	0	0	0	0	0
	금융기관차입금	0	0	15,000	0	0	90,000	0	15,000
	사채차입금	0	0	180,000	0	0	60,000	0	34,286
	이 윤	67,937	32,208	35,904	6,879	1,162	26,907	-11,858	-22,734
합 계	89,265	207,133	321,904	128,872	214,693	361,407	176,807	214,297	

부표 35-2 회사별 대차대조표(1991년 설립회사의 1992년말)

단위: 천원

회사별		Cs	Is	Jus	Jos	Dp	Dd	My	평 균
자	출 자	23,079	11,804	22,840	0	2,572	0	8,360	9,808
	보 조	0	52,669	132,696	74,969	30,822	39,846	62,269	56,182
	자 가	16,886	55,243	312,518	11,950	94,666	47,997	46,896	83,737
	시 설	0	17,948	61,654	18,200	31,031	21,350	35,517	26,529
	감가상각충당금	16,814	66,312	71,759	51,171	84,605	96,217	53,774	62,807
	부 지	0	7,800	35,000	28,000	0	0	53,295	17,727.86
산	유 동 자 산	219,100	0	0	0	0	86,054	0	43,593
	합 계	275,879	211,776	636,467	184,290	243,696	290,464	260,111	300,383
본	현 금 출 자	20,000	66,579	19,780	33,143	40,180	50,000	63,000	41,812
	현 물 출 자	37,328	29,500	73,200	0	12,791	0	12,950	23,681
	보 조 금	0	38,670	41,220	35,600	35,470	38,500	35,470	32,133
	농기계용자금	0	39,307	228,215	23,2123	168,504	74,000	136,888	95,762
	시설용자금	33,000	0	29,800	25,000	26,000	26,000	26,000	23,686
	운영용자금	0	0	0	0	0	0	0	0
	금융기관차입금	70,000	0	50,000	0	0	90,000	0	30,000
	사채차입금	0	0	220,000	0	0	60,000	0	40,000
	이 윤	115,551	37,720	-25,748	67,124	-39,249	-48,036	14,197	13,309
	합 계	275,879	211,776	636,467	184,290	243,696	290,464	260,111	300,383

부표 35-3 회사별 대차대조표(1991년 설립회사의 1993년말)

단위: 천원

회사별		Cs	Is	Jus	Jos	Dp	Dd	My	평 균
자	출 자	16,692	6,081	29,360	0	975	0	6,065	8,453
	보 조	70,639	39,515	113,161	52,743	23,576	21,434	66,580	55,378
	자 가	30,001	46,866	306,160	8,293	113,967	45,208	45,241	85,105
	시 설	39,122	17,070	58,641	17,300	29,497	46,850	94,785	43,324
	감가상각충당금	46,564	98,473	132,034	86,924	143,875	138,801	89,445	105,159
	부 지	38,538	9,800	35,000	28,000	0	0	60,280	24,231.14
산	유 동 자 산	78,658	0	0	0	0	21,167	0	14,261
	합 계	320,214	215,805	674,356	193,260	311,890	273,460	362,396	335,911
본	현 금 출 자	23,800	81,579	19,780	26,553	40,180	50,000	9,000	35,842
	현 물 출 자	37,328	29,500	73,200	0	12,791	0	12,950	23,681
	보 조 금	46,000	38,670	41,220	35,600	35,470	38,500	68,320	43,397
	농기계융자금	38,000	54,594.82	180,228.2	110,478	202,618	63,429	233,412.5	97,587.41
	시설융자금	33,000	0	29,800	25,000	26,000	26,000	26,000	23,686
	운영융자금	0	0	0	0	0	0	0	0
	금융기관차입금	70,000	0	91,000	0	0	100,000	8,000	38,429
	사채차입금	0	0	250,000	0	0	60,000	0	44,286
	이 윤	72,086	11,461	-10,872	-4,371	-5,169	-64,469	4,713	483
합 계	320,214	215,805	674,365	193,260	311,890	273,226	362,396	335,911	

부표 35-4 회사별 대차대조표(1992년 설립회사의 1992년말)

단위: 천원

항목별		회사별							
		Dl	Yd	Md	Sy	Dj	Ma	Mg	평균
자	출 자	8,394	0	0	19,008	21,784	19,159	11,626	11,424
	보 조	67,039	76,152	81,294	64,672	92,042	33,507	85,060	71,395
	자 가	98,666	17,889	36,888	6,781	18,771	38,871	28,865	35,247
	시 설	105,050	43,452	35,908	60,738	40,110	75,044	0	51,472
	감가상각충당금	53,868	22,300	27,591	25,700	43,155	40,036	23,270	33,703
	부 지	0	0	0	19,500	109,500	42,000	0	24,429
산	유 동 자 산	12,938	0	0	0	0	0	0	1,848
	합 계	345,955	159,793	181,681	196,399	325,362	248,617	148,821	229,518
본	현 금 출 자	0	13,500	0	3,000	34,000	42,000	10,000	14,643
	현 물 출 자	12,840	6,209	50,400	10,200	47,000	28,600	18,000	24,750
	보 조 금	41,220	51,250	43,360	41,220	41,220	80,000	41,220	48,499
	농기계융자금	44,220	102,352	38,008	75,960	32,500	63,672	62,492	58,038
	시설융자금	33,000	22,973	33,000	33,000	33,000	0	0	22,139
	운영융자금	0	0	0	0	0	30,000	0	4,286
	금융기관차입금	200,000	0	7,000	0	10,000	20,000	0	33,857
	사채차입금	0	0	0	0	152,154	15,000	22,100	27,036
	이 윤	14,675	-36,491	9,913	33,019	-24,512	-30,655	-4,991	-5,577
	합 계	345,955	159,793	181,681	196,399	325,362	248,617	148,821	229,518

부표 35-5 회사별 대차대조표(1992년 설립회사의 1993년말)

단위: 천원

항목별		회사별							
		Dl	Yd	Md	Sy	Dj	Ma	Mg	평 균
자	출 자	4,588	0	0	15,706	14,211	32,444	8,118	10,724
	보 조	104,201	71,485	70,542	100,163	64,150	90,067	70,240	81,550
	자 가	81,271	14,455	37,242	22,554	31,171	12,622	23,923	31,891
	시 설	100,100	41,404	34,216	107,536	38,220	108,509	0	61,426
	감가상각충당금	97,728	51,760	49,718	41,836	84,192	66,119	46,540	62,556
	부 지	0	0	0	19,500	109,500	42,000	0	24,429
	유 동 자 산	90,967	0	0	0	0	0	0	12,995
	합 계	478,855	179,104	191,718	307,295	341,444	351,761	148,821	285,571
본	현 금 출 자	0	13,500	10,000	3,000	34,000	14,000	10,000	12,071
	현 물 출 자	10,840	6,209	50,400	10,200	47,000	28,600	18,000	24,464
	보 조 금	41,220	51,250	45,010	121,220	41,220	125,000	41,220	66,591
	농기계용자금	44,220	109,998	43,514	130,360	183,011	131,807	67,815	88,537
	시설용자금	33,000	22,973	33,000	33,000	33,000	0	0	22,139
	운영용자금	0	0	0	0	0	30,000	0	4,286
	금융기관차입금	0	0	4,000	11,000	10,000	20,000	0	6,429
	사채차입금	200,000	0	0	0	0	19,000	22,100	5,871
	이 윤	149,575	-24,826	5,794	-1,485	-6,787	-16,646	-10,314	13,616
	합 계	478,855	179,104	191,718	307,295	341,444	351,761	148,821	285,571

부표 35-6 회사별 대차대조표(1993년 설립회사의 1993년말)

단위: 천원

회사별		Pt	Di	Ss	Id	Bg	Hj	Wh	평 균
항목별									
자	출 자	18,628	0	62,945	16,501	7,362	563	32,950	19,850
	보 조	84,157	82,165	0	90,436	93,477	75,367	69,042	70,663
	자 가	15,335	2,482	9,268	3,905	4,458	31,874	23,540	12,980
	시 설	47,750	24,353	19,578	46,795	31,515	1,113	35,813	29,500
	감가상각충당금	30,817	18,304	19,250	24,112	20,156	33,217	45,822	27,383
산	부 지	40,980	0	0	0	0	0	51,750	13,247
	유 동 자 산	21,361	26,772	80,300	6,498	0	0	0	19,276
	합 계	259,028	154,076	191,341	188,247	156,968	142,134	258,917	192,959
본	현 금 출 자	89,363	0	15,000	52,345	8,000	30,198	95,048	41,422
	현 물 출 자	24,737	0	79,762	23,2504	11,097	900	47,738	26,834
	보 조 금	45,342	48,000	0	46,000	45,500	48,035	45,000	39,067
	농기계용자금	43,225	15,000	30,000	7,000	73,373	52,734	84,238	ERR
	시설용자금	0	33,000	33,000	33,000	33,000	0	4,200	19,457
	운영용자금	0	0	0	0	0	0	0	0
	금융기관차입금	0	0	10,000	0	0	0	0	1,429
	사채차입금	15,000	0	0	0	0	0	10,000	3,571
	이 윤	41,361	58,076	23,579	26,498	-14,002	10,267	-27,507	16,896
합 계	259,028	154,076	191,341	188,247	156,968	142,134	258,917	192,959	

부표 36-1 회사별 손익계산서(1991년 설립회사의 1991년말)

단위: 천원

회사별		Cs	Is	Jus	Jos	Dp	Dd	My	평 균
항목별									
수 입	완 전 위 탁	38,380	12,111	39,840	60,000	91,200	127,050	65,600	62,026
	부 분 위 탁	58,640	83,392	40,800	24,225	0	0	17,652	32,101
	임 대 차	141,498	0	0	0	15,093	75,466	0	33,151
	부 대 수 입	7,600	0	12,000	0	0	0	0	2,800
	총 수 입	246,118	95,503	92,640	84,225	106,293	202,516	83,352	130,078
비 용	상시고인건비	10,100	0	4,200	0	1,200	0	3,060	2,651
	일고인건비	43,170	6,800	14,800	6,500	12,800	36,000	8,149	18,317
	감가상각비	5,112	33,026	20,761	17,285	42,141	46,380	24,731	27,062
	수 리 비	6,000	3,330	2,000	9,520	3,320	4,500	6,110	4,969
	유 류 비	2,500	3,080	2,000	4,350	2,240	5,500	2,000	3,096
	종 자 비	2,000	0	0	1,471	3,000	785	30	1,041
	비 료 비	3,000	0	0	0	500	2,052	10	795
	농 약 비	4,000	0	0	3,269	500	1,750	4,200	1,960
	기타재료비	4,000	1,000	1,000	467	3,130	2,000	3,800	2,200
	수도작임차료	56,599	0	0	0	5,660	18,866	0	11,589
	전 기 비	200	1,800	1,000	300	1,960	1,500	800	1,080
	전 화 비	50	840	700	300	1,500	1,000	800	741
	기타공과금	4,000	2,000	1,500	300	3,550	1,500	490	1,906
	사무비품비	150	500	100	100	240	1,500	2,720	759
	경조·접대비	600	2,000	1,500	4,000	1,130	1,500	1,400	1,733
여비교통비	0	4,000	2,000	1,000	1,030	1,000	810	1,406	
식 비	2,000	3,000	2,000	1,000	2,980	1,000	3,150	2,161	
이 자	1,000	1,919	3,175	3,484	6,250	6,775	5,910	4,073	
기 타	2,700	0	0	0	2,000	0	0	671	
합 계	147,181	63,295	56,736	53,346	95,131	133,608	68,170	88,210	
소 득	98,937	32,208	35,904	30,879	11,162	68,907	15,082	41,868	
지불참여자인건	31,000	0	0	24,000	10,000	42,000	26,940	19,134	
이 윤	67,937	32,208	35,904	6,879	1,162	26,907	-11,858	22,734	
실질참여자인건	31,000	20,000	40,000	40,000	30,000	42,000	26,940	32,849	
실 질 이 윤	67,937	12,208	-4,096	-9,121	-18,838	26,907	-11,858	9,020	

부표 36-2 회사별 손익계산서(1991년 설립회사의 1992년말)

단위: 천원

회사별 항목별		Cs	Is	Jus	Jos	Dp	Dd	My	평 균
		수	완 전 위 탁	131,130	15,834	41,500	74,970	96,000	89,100
입	부 분 위 탁	48,440	55,713	60,600	45,540	0	0	19,016	32,758
	임 대 차	103,782	47,730	0	0	3,133	45,282	9,913	29,977
	부 대 수 입	7,300	22,092	39,000	60,000	0	0	0	18,342
	총 수 입	290,652	141,369	141,100	180,510	99,133	134,382	136,569	160,531
비	상시고인건비	10,000	0	17,750	0	6,200	30,000	3,920	9,710
	일고인건비	42,660	7,720	13,960	15,200	12,000	18,550	10,710	17,257
	감가상각비	11,702	33,286	50,998	33,886	42,464	48,837	29,043	35,745
	수 리 비	6,000	5,130	1,500	3,100	3,500	4,000	9,950	4,740
	유 류 비	2,300	2,2760	2,500	4,000	2,500	4,500	2,070	2,904
	종 자 비	2,260	850	0	1,817	3,500	505	6,930	2,266
	비 료 비	4,700	1,760	0	0	500	1,300	1,770	1,433
	농 약 비	3,800	1,430	0	3,738	500	1,038	4,990	2,214
	기타재료비	4,600	1,730	500	561	3,500	1,500	4,500	2,413
	수도작임차료	33,729	17,134	0	0	1,018	12,239	2,644	9,538
	전 기 비	200	500	1,800	300	2,000	1,200	200	866
	전 화 비	50	330	840	300	1,600	1,000	350	639
	기타공과금	4,700	330	2,000	300	3,600	1,500	2,240	2,096
	사무비품비	150	830	100	100	1,500	1,000	2,800	926
	경조·접대비	600	830	3,000	1,000	1,200	1,500	2,620	1,536
	여비교통비	0	410	4,000	1,000	1,200	800	1,000	1,201
	식 비	2,100	3,000	3,000	1,000	3,000	2,000	4,620	2,674
이 자	5,550	1,919	18,200	2,484	5,000	28,950	10,530	10,376	
기 타	2,700	0	0	20,000	2,000	0	0	3,529	
합 계	137,901	79,649	120,148	88,786	96,782	160,419	100,887	112,082	
소 득	152,751	61,720	20,952	91,724	2,351	-26,036	35,683	48,449	
지불참여자인건	37,200	24,000	46,700	24,000	41,600	22,000	49,880	35,140	
이 윤	115,551	37,720	-25,748	67,124	-39,249	-48,036	-14,197	22,734	
실질참여자인건	37,200	34,800	46,700	69,600	41,600	22,000	58,000	44,271	
실 질 이 윤	115,551	26,920	-25,748	22,124	-39,249	-48,036	-22,317	4,178	

부표 36-3 회사별 손익계산서(1991년 설립회사의 1993년말)

단위: 천원

회사별		Cs	Is	Jus	Jos	Dp	Dd	My	평균
항목별									
수입	완전위탁	106,392	16,464	60,048	55,020	115,600	58,500	95,700	72,532
	부분위탁	64,180	83,133	41,008	69,594	16,013	600	6,440	40,138
	임대차	35,684	88,802	0	0	1,376	30,586	12,540	24,141
	부대수입	33,900	0	65,392	18,000	0	4,020	263	17,368
	총수입	240,150	188,399	166,448	142,614	132,989	93,706	114,943	154,179
비용	상시고인건비	10,200	0	17,650	0	11,150	14,977	4,460	8,348
	일고인건비	15,600	5,150	15,600	6,120	7,182	6,677	13,257	9,941
	감가상각비	29,750	32,161	60,275	35,753	59,270	43,584	35,671	42,352
	수리비	6,000	9,610	3,250	9,960	3,080	7,264	6,337	6,500
	유류비	2,825	2,000	5,321	5,560	3,504	3,629	3,890	3,818
	종자비	3,800	1,815	763	1,268	3,961	702	150	1,780
	비료비	2,700	2,387	2,013	0	0	1,463	0	1,223
	농약비	7,000	6,138	298	3,166	0	1,414	0	2,574
	기타재료비	2,400	1,500	1,000	320	3,594	5,300	0	2,016
	수도작임차료	10,195	37,570	0	0	459	10,195	306	8,389
	전기비	240	150	1,810	350	513	1,200	500	680
	전화비	960	80	700	222	970	1,800	500	747
	기타공과금	6,300	658	888	216	3,698	1,510	2,500	2,240
	사무비품비	120	100	200	100	1,106	208	1,000	405
	경조·접대비	800	500	500	3,600	406	2,772	2,000	1,511
	여비교통비	500	200	4,000	1,200	300	370	1,000	1,081
	식비	4,200	500	9,460	1,300	2,206	1,460	4,000	3,304
이자	12,950	2,419	35,000	1,850	4,954	29,950	4,429	13,079	
기타	19,730	0	680	6,000	5,405	13,700	6,230	7,392	
합계	136,270	102,938	159,320	76,985	111,758	148,175	86,230	117,382	
소득	103,886	85,461	7,128	65,629	21,231	-54,469	28,713	36,797	
지불참여자인건	31,800	74,000	18,000	70,000	26,400	10,000	24,000	36,314	
이윤	72,086	11,461	-10,872	-4,371	-5,169	-64,469	4,713	22,734	
실질참여자인건	36,000	74,000	45,000	70,000	30,000	18,000	36,000	44,143	
실질이윤	67,886	11,461	-37,872	-4,371	-8,769	-72,469	-7,287	-7,346	

부표 36-4 회사별 손익계산서(1992년 설립회사의 1992년말)

단위: 천원

회사별		DI	Yd	Md	Sy	Dj	Ma	Mg	평 균
수 입	완 전 위 탁	0	21,000	41,400	34,400	41,850	60,420	0	28,439
	부 분 위 탁	166,500	13,209	31,500	25,225	66,555	21,000	71,515	56,501
	임 대 차	88,117	0	0	11,039	0	0	5,218	14,911
	부 대 수 입	34,200	0	0	5,000	0	26,000	0	9,314
	총 수 입	288,817	34,209	72,900	75,664	108,405	107,420	76,733	109,164
비 용	상시고인건비	51,600	0	3,600	0	4,200	16,100	10,200	12,243
	일고인건비	44,400	20,000	6,720	2,538	13,242	8,600	3,424	14,132
	감가상각비	53,868	22,300	27,591	25,700	43,155	40,036	23,270	33,703
	수 리 비	6,230	3,000	8,000	600	5,270	5,000	4,513	4,659
	유 류 비	8,740	1,600	3,000	1,400	4,150	5,000	1,441	3,619
	중 자 비	1,180	0	0	111	0	1,200	164	443
	비 료 비	3,080	0	0	286	0	0	416	540
	농 약 비	2,620	0	0	229	0	9,000	336	1,741
	기타재료비	1,330	600	2,000	1,500	500	500	5,588	1,717
	수도작임차료	29,372	0	0	3,231	0	0	2,546	5,021
	전 기 비	1,000	200	600	150	720	960	189	546
	전 화 비	600	200	600	100	480	600	548	447
	기타공과금	1,500	1,500	1,000	2,500	300	300	20	1,017
	사무비품비	1,000	0	0	200	170	500	268	305
	경조·접대비	1,500	1,000	500	200	500	1,000	2,884	1,083
	여비교통비	600	200	100	0	200	1,000	289	341
	식 비	3,000	200	2,000	100	3,000	0	2,464	1,538
	이 차	6,922	1,900	7,276	3,800	8,730	10,250	4,728	6,229
	기 타	10,000	0	0	0	0	10,000	4,437	3,491
합 계	228,542	52,700	62,987	42,645	84,617	110,046	67,725	92,752	
소 득	60,275	-18,491	9,913	33,019	23,788	-2,626	9,009	16,412	
지불참여자인건	45,600	18,000	0	0	48,300	28,029	14,000	21,990	
이 운	14,675	-36,491	9,913	33,019	-24,512	-30,655	-4,991	22,734	
실질참여자인건	45,000	18,000	29,000	17,400	48,300	34,800	14,000	29,586	
실 질 이 운	14,675	-36,491	-19,087	15,619	-24,512	-37,426	-4,991	-13,173	

부표 36-5 회사별 손익계산서(1992년 설립회사의 1993년말)

단위: 천원

회사별 항목별		DI	Yd	Md	Sy	Dj	Ma	Mg	평 균
		수	완 전 위 탁	0	17,616	18,000	17,200	80,000	13,500
	부 분 위 탁	265,800	25,938	44,100	30,680	44,900	34,650	70,655	73,818
입	임 대 차	82,583	0	15,293	15,166	0	0	0	16,149
	부 대 수 입	75,000	0	0	6,000	0	49,000	2,000	18,857
	총 수 입	423,383	43,554	77,393	69,046	124,900	97,150	72,655	129,726
비	상시고인건비	65,600	0	3,600	0	5,600	0	10,700	12,214
	일고인건비	10,000	12,620	6,630	5,550	14,400	5,464	5,975	8,663
	감가상각비	43,860	29,460	22,127	16,136	41,037	26,083	23,270	28,853
	수 리 비	9,133	1,300	15,000	4,000	5,500	3,634	3,187	5,965
	유 류 비	14,829	2,000	4,000	3,500	5,000	14,000	2,692	6,574
	종 자 비	1,730	0	180	400	0	450	5,400	1,166
	비 료 비	4,515	0	750	500	0	1,700	0	1,066
	농 약 비	3,841	0	400	200	400	2,000	0	977
	기타재료비	1,950	200	2,000	2,000	500	2,600	7,421	2,390
	수도작임차료	30,586	0	4,588	5,200	0	0	0	5,768
	전 기 비	1,466	300	600	240	720	480	120	561
	전 화 비	880	200	600	120	480	480	593	479
	기타공과금	2,199	1,800	1,248	4,000	300	360	582	1,498
	사무비품비	1,000	0	0	300	300	100	219	274
	용	경조·접대비	2,199	500	500	1,000	2,000	1,000	990
	여비교통비	2,000	100	100	0	450	500	497	521
	식 비	4,398	400	2,000	500	4,000	0	2,712	2,001
	이 자	19,422	4,500	7,276	5,285	4,500	13,000	3,545	8,218
	기 타	10,000	0	0	0	0	33,000	1,066	6,295
	합 계	229,608	53,380	71,599	48,931	85,187	104,911	68,969	94,655
소	득	193,775	-9,826	5,794	20,115	39,713	-7,761	3,686	35,071
지불참여자인건		44,200	15,000	0	21,600	46,500	8,885	14,000	21,455
이	윤	149,575	-24,826	5,794	-1,485	-6,787	-16,646	-10,314	13,616
실질참여자인건		44,200	18,000	30,000	27,000	46,500	27,000	14,000	29,529
실	질 이 윤	149,575	-27,825	-24,206	-6,885	-6,787	-34,761	-10,314	5,542

부표 36-6 회사별 손익계산서(1993년 설립회사의 1993년말)

단위: 천원

회사별 항목별		Pt	Di	Ss	Id	Bg	Hj	Wh	평 균
		수	완 전 위 탁	0	67,200	25,680	0	0	47,040
입	부 분 위 탁	32,195	13,650	36,505	87,800	27,630	16,400	29,000	34,740
	임 대 차	94,817	21,410	0	10,195	0	0	1,223	18,235
	부 대 수 입	6,000	0	0	0	0	0	0	857
	총 수 입	133,012	102,260	62,185	97,995	27,630	63,440	60,223	78,107
	비	상시고인건비	0	0	0	0	0	0	11,300
일고인건비		6,900	6,000	3,270	12,000	2,350	3,270	4,900	5,527
감가상각비		30,817	18,304	19,250	24,112	20,156	33,217	45,822	27,383
수 리 비		1,200	1,500	1,500	2,000	400	1,500	5,975	2,011
유 류 비		4,600	2,000	4,536	5,000	1,200	4,536	5,790	3,952
종 자 비		1,299	45	0	0	0	0	0	192
비 료 비		3,395	700	0	150	0	0	0	606
농 약 비		3,245	1,190	0	100	0	0	225	680
기타재료비		328	75	3,000	300	100	300	800	700
수도작임차료		31,606	7,137	0	5,098	0	0	428	6,324
전 기 비		300	300	200	200	0	200	180	197
전 화 비		200	0	200	200	0	800	898	328
기타공과금		0	0	0	0	0	0	500	71
사무비품비		100	0	100	0	0	100	1,000	186
경조·접대비		1,000	0	500	2,000	0	2,600	4,567	1,524
여비교통비		500	0	200	200	0	200	908	287
식 비		3,000	1,500	1,500	1,000	600	1,500	2,300	1,629
이 자		3,161	5,434	4,350	3,000	3,220	2,850	2,137	3,450
기 타		0	0	0	1,138	1,642	2,100	0	697
합 계	91,651	44,185	38,606	56,498	29,668	53,173	87,730	57,359	
소 득	41,361	58,076	23,579	41,498	-2,038	10,267	-27,507	20,748	
지불참여자인건	0	0	0	15,000	11,964		0	3,852	
이 윤	41,361	58,076	23,579	26,498	-14,002	10,267	-27,507	16,896	
실질참여자인건	36,000	30,000	30,000	30,000	18,000	30,000	18,000	27,429	
실 질 이 윤	5,361	28,076	-6,421	11,498	-20,038	-19,733	-45,507	-6,681	

부표 37 회사의 유형 구분(1993년 현재)

회사별	지대별	농한기사업유무	운영형태별	출자방법별	설립자의 탈퇴	
1991년 설립사	Cs	중 간	유	공 동 운 영	불 균 등 출 자	50% 이상
	Is	평 야	무	공 동 운 영	균 등 출 자	50% 이하
	Jus	평 야	유	공 동 운 영	균 등 출 자	50% 이상
	Jos	평 야	유	지 입 제	불 균 등 출 자	50% 이상
	Dp	평 야	무	공 동 운 영	불 균 등 출 자	50% 이하
	Dd	중 간	유	개 인 운 영	불 균 등 출 자	50% 이상
1992년 설립사	My	중 간	유	공 동 운 영	균 등 출 자	50% 이상
	Dl	평 야	유	개 인 운 영	불 균 등 출 자	50% 이상
	Yd	평 야	무	가 축 배 분	불 균 등 출 자	50% 이하
	Md	산 간	무	공 동 운 영	불 균 등 출 자	50% 이하
	Sy	산 간	유	공 동 운 영	불 균 등 출 자	50% 이하
	Dj	평 야	무	공 동 운 영	균 등 출 자	50% 이상
1993년 설립사	Ma	산 간	유	개 인 운 영	불 균 등 출 자	50% 이상
	Mg	산 간	유	개 인 운 영	불 균 등 출 자	50% 이하
	Pt	산 간	유	공 동 운 영	불 균 등 출 자	50% 이하
	Di	산 간	무	공 동 운 영	균 등 출 자	50% 이하
	Ss	중 간	무	공 동 운 영	균 등 출 자	50% 이하
	Id	평 야	무	공 동 운 영	불 균 등 출 자	50% 이하
	Bg	산 간	무	개 인 운 영	불 균 등 출 자	50% 이하
Hj	중 간	무	지 입 제	불 균 등 출 자	50% 이하	
Wh	중 간	무	개 인 운 영	불 균 등 출 자	50% 이하	

주: 회사유형별 개수

1. 지대별                    평 야: 8개, 중 간: 6개, 산간: 7개
2. 농한기사업            유 : 10개, 무 : 11개
3. 운영 형태            공 동: 12개, 비공동: 9개
4. 출자 형태            균 등: 6개, 불균등: 15개
5. 설립자의 탈퇴 50% 이상: 8개, 50% 이하: 13개

부표 38 회사 유형별 참여자 수, 1993

단위: 명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설 립 자 수	7.6	5.5	5.1	6.9	5.5	5.9	6.6	6.3	6.1	8.0	5.1
형식상참여자	0.1	0.5	0.0	0.3	0.1	0.0	0.4	0.0	0.3	0.4	0.1
탈 퇴 자 수	3.9	3.2	1.6	4.6	1.4	2.4	3.6	3.7	2.6	6.0	1.0
신 규 참 여 자	0.6	2.2	0.3	1.8	0.2	1.1	0.8	1.8	0.6	2.2	0.2
실 제 참 여 자	4.2	4.0	3.9	3.8	4.3	4.6	3.3	4.5	3.9	3.9	4.2

부표 39 회사 유형별 참여자 수(합계 1993)

단위: 명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설 립 자 수	61.0	33.0	36.0	69.0	61.0	71.0	59.0	38.0	92.0	64.0	66.0
형식상참여자	1.0	3.0	0.0	3.0	1.0	0.0	4.0	0.0	4.0	3.0	1.0
탈 퇴 자 수	31.0	19.0	11.0	46.0	15.0	29.0	32.0	22.0	39.0	48.0	13.0
신 규 참 여 자	5.0	13.0	2.0	18.0	2.0	13.0	7.0	11.0	9.0	18.0	2.0
실 제 참 여 자	34.0	24.0	27.0	38.0	47.0	55.0	30.0	27.0	58.0	31.0	54.0

부표 40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연령 분포, 1993

단위: 명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24세 이하	0.0	0.0	0.3	0.0	0.2	0.0	0.1	0.0	0.1	0.0	0.2
~29세	0.1	0.3	0.7	0.3	0.5	0.3	0.4	0.0	0.5	0.4	0.4
~34세	1.8	2.2	0.3	1.2	1.5	1.4	1.3	1.8	1.2	1.6	1.2
~39세	1.9	0.8	1.9	2.1	1.1	2.2	0.7	2.2	1.3	1.8	1.5
~44세	0.5	0.2	0.6	0.2	0.6	0.5	0.3	0.3	0.5	0.1	0.6
~49세	0.0	0.0	0.1	0.0	0.1	0.1	0.0	0.2	0.0	0.0	0.1
~50세 이상	0.0	0.5	0.0	0.0	0.3	0.0	0.3	0.0	0.2	0.0	0.2
합 계	4.2	4.0	3.9	3.8	4.3	4.6	3.3	4.5	3.9	3.9	4.2

부표 41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학력별 분포, 1993

단위: 명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국	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	졸	1.1	0.5	0.4	0.7	0.7	1.1	0.2	0.2	0.9	0.6	0.8
고	졸	3.1	3.3	2.7	2.9	3.2	3.1	3.0	4.3	2.5	3.0	3.1
전 문 대	졸	0.0	0.0	0.7	0.1	0.4	0.3	0.1	0.0	0.3	0.1	0.3
대	졸 이 상	0.0	0.2	0.0	0.1	0.0	0.1	0.0	0.0	0.1	0.1	0.0
합	계	4.2	4.0	3.9	3.8	4.3	4.6	3.3	4.5	3.9	3.9	4.2

부표 42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영농경력별 분포, 1993

단위: 명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4년	0.0	0.3	0.4	0.2	0.3	0.1	0.4	0.0	0.3	0.2	0.2
	~9년	0.9	1.2	0.7	0.5	1.3	1.2	0.6	0.8	0.9	0.6	1.1
	~14년	2.4	1.7	1.0	2.0	1.5	2.0	1.3	2.8	1.3	2.2	1.4
	~19년	0.9	0.5	1.6	1.0	1.0	1.2	0.8	0.7	1.1	0.6	1.2
	20년 이상	0.1	0.3	0.1	0.1	0.3	0.2	0.2	0.2	0.2	0.1	0.2
합	계	4.2	4.0	3.9	3.8	4.3	4.6	3.3	4.5	3.9	3.9	4.2

부표 43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농기계운전경력별 분포, 1993

단위: 명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4년	0.2	1.3	0.4	0.4	0.8	0.4	0.9	0.7	0.6	0.8	0.5
	~9년	1.0	1.2	0.7	0.5	1.4	1.1	0.8	0.8	1.0	0.9	1.0
	~14년	2.2	1.5	1.1	2.0	1.4	1.8	1.4	2.5	1.3	2.0	1.5
	~19년	0.5	0.0	1.4	0.9	0.5	1.0	0.2	0.3	0.8	0.2	0.9
	20년 이상	0.2	0.0	0.1	0.0	0.3	0.2	0.0	0.2	0.1	0.0	0.2
합 계		4.2	4.0	3.9	3.8	4.3	4.6	3.3	4.5	3.9	3.9	4.2

부표 44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수리능력별 분포, 1993

단위: 명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숙	달	1.1	1.7	1.3	1.4	1.3	1.6	1.0	1.7	1.2	1.5	1.2
보	통	2.5	1.2	2.6	2.0	2.3	2.5	1.7	2.5	2.0	1.9	2.3
미	숙	0.6	1.2	0.0	0.4	0.7	0.5	0.7	0.3	0.7	0.5	0.6
합 계		4.2	4.0	3.9	3.8	4.3	4.6	3.3	4.5	3.9	3.9	4.2

부표 45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농어민후계자와 영농단 수의 분포, 1993

단위: 명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농 어 민 후 계 자	1.3	1.0	0.1	0.5	1.1	1.1	0.4	1.3	0.6	1.0	0.7
기 계 화 영 농 단	1.3	0.5	2.0	1.1	1.5	1.52	1.0	1.0	1.4	0.5	1.8
후계자및영농단원	0.9	1.3	0.7	1.2	0.7	0.8	1.2	0.7	1.1	1.3	0.8
실 제 참 여 자 수	4.2	4.0	3.9	4.3	4.6	3.3	4.5	4.6	3.9	3.9	4.2

부표 46 회사 유형별 참여자의 영농규모별 분포, 1993

단위: 명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1,000평	0.2	0.0	0.6	0.2	0.4	0.2	0.3	0.5	0.2	0.4	0.2
~3,000평	0.5	0.5	0.3	0.5	0.4	0.7	0.1	1.3	0.1	0.8	0.2
~6,000평	1.8	1.3	1.9	1.6	1.7	2.1	1.1	1.2	1.9	1.3	1.9
~9,000평	1.3	1.5	0.7	1.9	1.4	1.2	1.1	1.2	1.1	0.9	1.3
~12,000평	0.0	0.3	0.3	0.3	0.1	0.2	0.2	0.0	0.3	0.4	0.1
12,000평 이상	0.5	0.3	0.1	0.3	0.4	0.2	0.4	0.3	0.3	0.2	0.4
합 계	4.2	4.0	3.9	3.8	4.3	4.6	3.3	4.5	3.9	3.9	4.2

부표 47 회사 유형별 기초자산의 현황, 1993

단위: 천원

186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설립자탈퇴	
		평 야	중 간	산 간	유	무	공 동	기 타	균 등	불균등	50%이상	50%이하
출 자	현 금	48,454	39,874	47,142	37,721	52,697	50,128	39,482	54,897	41,833	39,087	49,552
	현 물	24,544	29,480	20,069	25,596	23,432	29,072	18,317	40,295	18,130	27,577	22,546
	계	72,998	69,354	67,211	63,317	76,128	79,199	57,799	95,191	59,962	66,664	72,098
보조금	보 조	35,779	27,168	49,235	35,457	39,937	30,963	46,925	26,693	42,248	33,501	40,451
농 협 자 금	농 기 계 자 금	36,318	37,936	35,897	31,783	41,056	33,478	40,857	32,740	38,200	35,513	37,334
	시 설 자 금	21,622	14,867	18,857	14,300	22,834	20,833	16,019	20,833	17,945	17,875	19,321
	운 영 자 금	16,250	12,333	18,571	18,400	13,636	13,333	19,333	10,000	18,267	18,000	14,615
	계	74,190	65,136	73,326	64,483	77,526	67,644	76,209	63,574	74,412	71,388	71,270
부 채	금 융 기 간	33,125	16,667	4,571	32,500	6,545	6,833	35,000	12,500	21,467	46,875	1,692
	사 채	22,500	11,667	10,300	31,210	909	16,250	14,122	30,000	9,473	34,375	3,623
	계	55,625	28,333	14,871	63,710	7,455	23,083	49,122	42,500	30,940	81,250	5,315
총 계		202,813	162,824	155,408	191,510	161,109	169,927	183,131	201,265	165,314	189,302	148,683

부표 48 회사 유형별 기말자산의 현황, 1993

단위: 천원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설립자탈퇴	
		평 야	중 간	산 간	유	무	공 동	기 타	균 등	불균등	50%이상	50%이하
고 정 자 산	농 기계 및 장비	154,634	101,235	113,098	149,559	103,688	138,037	108,858	154,237	114,050	155,788	106,913
	시 설	43,628	39,544	50,554	62,059	29,052	46,464	42,512	42,108	45,835	62,941	33,588
	부 지	22,538	25,095	14,640	26,430	15,368	25,967	13,528	35,430	14,718	39,165	9,223
	감가상각충당금	89,887	62,183	39,070	77,681	53,534	64,885	65,230	73,616	61,599	92,726	47,991
	계	310,687	228,056	217,362	315,729	201,643	275,352	230,127	305,391	236,201	350,619	197,724
유 동 자 산		12,183	30,021	6,876	21,215	10,325	17,799	12,459	17,845	14,577	23,849	10,379
총 자 산		322,870	258,077	224,238	336,945	211,968	293,151	242,587	323,236	250,778	374,468	208,103

부표 49-1 회사 유형별 부지 및 부대시설의 면적과 평가액(1993년말 현재 소유)

단위: 평, 천원

구 분		유 형 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설립자탈퇴	
			평 야	중 간	산 간	유	무	공 동	기 타	균 등	불균등	50%이상	50%이하
부	지	면 적	559	442	469	533	461	663	272	903	333	888	254
		평 가 액	22,538	25,095	14,640	26,430	15,368	25,967	13,528	35,430	14,718	39,165	9,233
부	격 남 고	면 적	62	39	40	48	48	54	40	52	47	57	42
		평 가 액	17,542	13,350	18,678	17,702	15,767	17,342	15,818	12,265	18,458	18,416	15,626
부	사 무 실	면 적	12	13	9	14	9	12	10	8	13	14	10
		평 가 액	4,410	4,575	3,333	5,008	3,271	4,081	4,120	2,516	4,731	4,913	3,597
대	정 비 실	면 적	7	5	6	7	6	9	3	4	7	3	9
		평 가 액	3,243	1,431	2,131	1,946	2,726	3,245	1,168	973	2,907	568	3,454
대	건 조 장	면 적	28	15	9	20	17	23	11	23	16	17	19
		평 가 액	6,263	5,209	1,792	6,088	3,002	4,750	4,101	2,621	5,212	6,189	3,415
시	육 묘 장	면 적	51	187	63	132	59	109	73	128	80	140	65
		평 가 액	1,110	4,591	2,194	3,377	1,638	2,069	2,995	2,057	2,630	3,584	1,778
설	부대사업	면 적	2	5	9	9	2	4	7	7	4	13	0
		평 가 액	597	216	1,367	1,276	434	480	1,309	960	785	2,152	25
설	기 타	면 적	34	118	159	209	0	89	113	143	82	235	16
		평 가 액	10,553	10,171	17,310	26,662	0	12,468	13,001	16,658	11,111	27,120	3,820
설	시설합계	면 적	196	382	294	438	140	301	257	366	249	478	161
		평 가 액	43,628	39,544	47,075	62,059	26,838	44,434	42,512	38,049	45,835	62,941	31,714

부표 49-2 회사 유형별 부지 및 부대시설의 면적과 평가액(1993년말 현재 임차)

단위: 평, 천원

구 분		유형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설립자탈퇴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50%이상	50%이하
부	지	면적	488	369	78	383	257	313	322	285	330	474	220
		평가액	517	372	15	179	425	406	178	289	316	217	365
부	격납고	면적	0	7	4	3	4	0	8	0	5	0	5
		평가액	0	25	54	38	14	0	58	0	35	0	40
부	사무실	면적	0	1	1	0	1	0	1	0	1	0	1
		평가액	0	8	7	5	5	0	11	0	7	0	8
대	정비실	면적	0	0	1	1	0	0	1	0	1	0	1
		평가액	0	0	18	13	0	0	14	0	8	0	10
대	건조장	면적	0	0	4	3	0	0	3	0	2	0	2
		평가액	0	0	29	20	0	0	22	0	13	0	15
사	육묘장	면적	0	33	171	135	5	13	139	0	93	19	96
		평가액	0	467	86	330	9	225	78	0	227	338	54
설	부대사업	면적	0	0	0	0	0	0	0	0	0	0	0
		평가액	0	0	0	0	0	0	0	0	0	0	0
설	기타	면적	0	0	0	0	0	0	0	0	0	0	0
		평가액	0	0	0	0	0	0	0	0	0	0	0
설	시설합계	면적	0	41	182	142	9	13	152	0	101	196	105
		평가액	0	500	193	405	27	225	183	0	290	338	127

부표 50 회사 유형별 농기계의 규격과 대수 및 평가액(1993년말 현재)

단위: 마력, 조, 석, A, 대, 천원

구 분	유 형 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설립자탈퇴	
		평 야	중 간	산 간	유	무	공 동	기 타	균 등	불균등	50%이상	50%이하
트랙터	규격	220	199	169	216	179	210	180	218	189	249	165
	대수	5	4	3	5	3	4	3	5	4	5	3
이앙기	규격	43,410	36,168	36,622	39,616	38,589	40,379	37,344	36,642	40,052	41,973	37,297
	대수	4	3	4	5	3	4	4	3	4	4	4
콤바인	규격	10,329	8,188	9,194	10,167	8,586	8,585	10,344	7,900	9,914	10,754	8,468
	대수	16	11	8	13	11	13	11	12	12	14	11
건조기	규격	31,074	18,337	23,823	27,820	22,470	25,042	24,986	20,120	26,977	25,814	24,528
	대수	4	3	2	4	3	4	3	3	3	4	3
방제기	규격	83	49	43	64	56	65	53	50	63	54	63
	대수	2	1	1	2	2	2	1	1	2	1	2
차량	규격	4,300	3,530	2,514	3,559	3,417	4,031	2,757	3,357	3,536	2,967	3,804
	대수	176	262	81	174	165	144	202	127	186	159	176
트랙터부속기	규격	1,580	2,662	1,616	2,433	1,418	1,211	2,821	1,336	2,127	1,833	1,943
	대수	2	2	1	2	1	1	2	1	2	3	1
수리장비	규격	6,338	6,244	5,454	9,539	2,814	1,211	2,821	1,3236	2,127	1,833	1,943
	대수	6,538	10,339	5,595	6,983	7,652	8,878	5,219	10,107	6,190	6,992	7,505
기타	규격	874	554	905	923	674	846	722	876	760	807	784
	대수	9,838	10,069	5,114	7,173	9,380	7,347	9,639	6,748	8,962	7,868	8,614
합계	규격	40,354	3,200	10,169	40,230	993	28,719	7,622	50,172	7,479	46,203	3,535
	대수	154,634	99,291	101,006	148,393	95,993	130,405	108,333	138,974	113,734	154,330	100,401

부표 51 회사 유형별 임대차와 완전위탁 및 부분위탁 작업면적, 1993

단위: 천원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임 대 차	17.2	7.9	13.4	17.6	8.9	16.8	9.0	14.6	12.8	13.3	13.3
완 전 위 탁	90.7	112.8	21.7	75.5	77.8	100.8	47.1	110.2	65.5	109.4	54.8
경 운	138.9	69.3	83.0	72.2	130.4	125.0	72.3	110.4	98.2	72.9	120.2
정 지	152.2	71.0	89.7	79.8	138.4	134.6	77.9	131.6	101.6	79.9	128.5
육 묘	95.0	30.5	29.7	89.3	22.8	33.8	83.2	9.0	71.7	92.2	31.9
이 앙	183.2	14.2	75.7	119.9	80.5	89.6	113.2	110.0	97.0	125.0	83.7
시 비	213.8	2.5	0.0	127.5	45.0	39.5	143.3	24.0	107.0	159.4	37.5
방 제	194.5	3.8	4.8	112.2	48.6	44.7	124.0	50.0	90.5	136.6	42.9
수 확	232.6	78.0	147.5	155.5	165.9	161.0	160.3	152.4	163.4	170.7	154.0
건 조	88.5	22.5	18.8	45.5	50.1	68.2	22.9	47.4	47.9	43.5	50.7
기 타	106.4	35.8	67.5	73.1	74.0	74.1	72.9	50.2	81.3	94.2	59.7

부표 52 회사 유형별 임대차와 완전위탁 및 부분위탁작업수수료, 1993

단위: 원/평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임 대 차 *	1,274.4	1,707.7	1,699.2	1,724.7	1,421.0	1,637.6	1,435.9	1,746.0	1,473.2	1,610.9	1,518.0
완 전 위 탁	515.4	539.0	473.6	559.4	452.0	484.1	546.1	506.2	513.8	559.5	473.4
경 운	42.1	51.7	50.0	52.2	42.5	44.1	51.3	47.0	47.5	49.6	45.8
정 지	56.3	60.8	59.2	62.0	55.0	54.4	63.6	56.7	59.1	64.4	54.6
육 료	141.7	163.0	148.3	147.2	153.5	148.8	152.4	172.5	144.7	155.0	147.9
이 양	67.0	79.2	60.0	68.7	68.4	65.2	72.7	71.4	67.6	70.2	67.4
시 비	10.5	15.0	.	11.3	11.7	12.2	10.0	12.8	10.8	11.3	11.7
방 제	23.0	51.6	33.3	37.5	27.9	43.4	15.3	49.0	27.1	40.0	29.7
수 확	91.6	103.8	105.8	110.1	88.9	96.0	103.9	93.3	101.6	104.5	96.2
건 조	51.9	83.0	53.3	63.0	49.2	58.0	58.0	59.9	57.2	70.2	51.0

\* 임대차 수수료는 평당 수입액을 나타냄.

부표 53 회사 유형별 인근의 부분위탁작업수수료, 1993

단위: 원/평

구	분	지 대 별			농간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경	운	46.1	60.0	51.7	56.3	45.6	49.9	53.9	49.9	52.2	53.7	50.5
정	지	62.8	60.0	60.8	65.0	57.4	60.3	63.1	62.6	61.0	70.8	55.0
육	묘	139.6	167.5	157.5	154.0	154.4	149.3	159.9	174.7	149.1	155.4	153.6
이	앙	76.9	92.5	60.8	73.0	77.0	72.4	78.4	74.8	74.9	76.7	73.6
시	비	7.8	.	.	7.5	8.1	9.7	5.0	9.6	6.7	7.5	8.1
방	제	10.3	82.5	37.5	39.3	9.0	38.8	10.0	57.3	18.6	40.0	20.4
수	확	106.6	114.0	115.0	119.3	103.3	108.9	115.0	100.0	116.7	112.6	111.2
건	조	57.2	80.0	52.5	65.0	53.6	61.5	60.7	61.3	61.2	71.2	53.2

부표 54 회사 유형별 임대차, 완전위탁, 농한기사업 및 부분위탁 수입, 1993

단위: 천원

194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탈퇴(50%)	
	평야	중간	산간	유	무	공동	기타	균등	불균등	이상	이하
임 대 차	12,375	13,339	5,076	9,398	11,551	16,153	3,534	20,268	7,210	9,851	10,890
완 전 위 탁	43,094	60,552	8,117	40,636	35,040	48,644	24,631	55,578	31,925	58,645	23,967
농 한 기 사 업	19,799	6,634	9,433	25,158	160	9,596	16,402	13,131	12,501	30,697	633
경 운	5,496	3,643	3,434	3,520	5,124	5,028	3,458	5,016	4,090	3,544	4,840
정 지	7,853	3,993	4,268	4,481	6,759	6,661	4,347	6,808	5,223	4,495	6,369
육 묘	13,250	4,784	4,386	13,030	3,072	4,341	12,586	2,070	10,045	13,544	4,389
이 앙	13,151	1,144	4,886	8,792	5,347	5,817	8,600	7889	6,796	9,380	5,529
시 비	3,556	25	0	2,445	415	377	2,717	199	1,840	3,056	346
방 제	2,397	74	97	1,518	502	511	1,620	568	1,157	1,824	467
수 확	22,543	8,246	14,567	17,667	14,055	14,438	17,600	13,631	16,605	18,721	13,954
건 조	4,212	1,914	953	3,011	2,078	3,572	1,289	2,450	2,576	3,050	2,208
기 타	6,816	1,697	6,904	6,823	3,790	3,523	7,486	3,765	5,820	8,282	3,323
총 수 입	154,540	105,776	62,120	136,476	87,893	118,661	104,269	131,375	105,788	165,090	76,915

부표 55 회사 유형별 비용 소득 이윤, 1993

단위: 천원

구	분	지 대 별			농한기사업		운 영 형 태		출 자		설립자탈퇴	
		평 야	중 간	산 간	유	무	공 동	기 타	균 등	불균등	50%이상	50%이하
참 여 자 인 건 비 를 제 외 한 비 용	상 시 고 인 건 비	12,500	6,823	2,383	12,359	3,165	4,787	11,397	5,542	8,502	14,811	3,063
	일 고 인 건 비	10,384	7,829	5,478	9,114	7,177	9,594	6,375	10,335	7,416	10,890	6,316
	감 가 상 각 비	40,741	34,549	23,098	34,520	32,661	33,691	33,467	37,679	32,228	39,502	29,650
	수 리 비	5,479	4,763	4,570	5,397	4,587	5,225	4,706	5,239	4,909	6,385	4,063
	유 류 비	5,402	4,201	4,999	6,085	3,757	4,016	6,026	4,149	5,178	6,882	3,613
	중 자 비	1,192	775	1,288	1,596	596	1,124	1,061	546	1,279	1,108	1,088
	비 료 비	1,133	694	1,058	1,629	329	1,081	853	880	1,012	1,549	599
	농 약 비	1,743	1,440	974	2,116	726	1,616	1,183	1,367	1,439	2,265	859
	기 타 재 료 비	1,171	1,967	2,418	2,338	1,229	1,511	2,117	1,200	1,978	1,766	1,795
	수 도 작 임 차 료	9,214	3,521	6,899	8,809	4,814	8,638	4,579	7,575	6,557	6,410	7,079
	전 기 비	689	420	290	671	306	498	477	676	426	846	250
	전 화 비	467	860	332	646	443	455	653	392	595	753	405
	기 타 공 과 금	1,209	1,802	1,032	1,847	820	1,773	796	852	1,494	1,773	1,041
	사 무 비 품 비	351	421	120	335	271	302	303	340	290	379	252
경 조 · 접 대 비	1,463	2,207	748	1,586	1,357	1,019	2,025	1,100	1,596	1,859	1,214	
여 비 교 통 비	1,056	530	266	1,057	266	677	642	1,170	492	1,253	267	
식	2,908	2,493	1,469	3,103	1,601	2,942	1,630	3,892	1,838	3,602	1,518	
이	9,456	9,444	5,915	12,859	3,921	7,939	8,942	10,140	7,807	15,138	3,891	
기	2,903	6,960	5,951	9,041	1,029	3,017	7,501	1,382	6,252	11,168	946	
합	109,459	91,697	69,288	115,105	69,054	89,908	94,733	94,456	91,287	128,336	67,908	
소	득	55,576	14,078	10,193	40,206	18,817	38,044	19,084	36,919	27,043	47,077	17,802
지	불참여자인건비	38,638	13,160	9,408	24,249	20,985	23,391	21,756	32,500	19,204	31,673	16,179
이	윤	16,939	3,112	785	15,958	-69	14,653	-255	4,419	9,119	15,404	2,971
실	질참여자인건비	44,713	28,000	25,333	35,320	32,450	38,227	28,578	46,300	29,747	40,338	29,583
실	질 이 윤	10,864	-13,922	-15,141	4,886	-13,633	-184	-9,494	-9,381	-2,704	6,739	-11,782

## 참고문헌 및 자료

- 강정일·김철민·위용석,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와 정책지원 방향」, 연구보고 2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12.
- 경상북도, 「'91 위탁영농회사 육성지원요령」, 1991. 1. 15.
- 경향신문, 「월급제 農夫등장했다」, 1990. 8. 9.
- 구재서, “空轉할 法이라면 만들지 않는 게 좋다”, 「농업경제」, 제9호, 농림부, 1964. 6., pp. 21~25.
- 김병택 외 2인, 「농업의 법인경영분석과 발전전략에 관한 사례조사연구」, M2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10.
- 김성호 외 4인, 「농지제도 및 농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 金永汀 編, 「集合行動論」, 振興叢書2, 圖書出版 進興文化社, 1984.
- 김정호·김홍배, 「전업농육성과 영농조직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2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12.
- 농민신문, 「위탁영농시대 열린다」①~⑩, 1991. 4. 11~5. 30.
- 농림수산부, 「위탁영농회사 설립해설」, 1990. 12.
- 농촌진흥청, 「농기계임작업 및 공동이용유형분석」, 1991. 7.
- 농협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육성지원계획」, 1991. 3. 2.
- 농협중앙회 자재부, 「농협의 위탁영농회사 참여방안검토」, 1991. 7.
-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협의 위탁영농사업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 1991. 1., 「농기계공동이용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1985.
- 농협중앙회, 「위탁영농회사 업무편람」, 1992. 12.
- 매일신문, 「농사代行業시대 열렸다」, 1991. 6. 9.

- 朴乃會, 「組織行動論」, 博英社, 1993.
- 朴英熙 外 9人, 「組織과 民主主義」, 건국대학교 출판부, 1989.
- 병곡농협, 「1991년도 주요업무계획」, 1991. 1.
- 병곡농업협동조합, 「1991년도 주요업무계획」, 1991. 9.
- 송대희·김건수, 「농촌노동력 부족과 위탁영농의 발전방안」, 정책연구 자료 '91-40, 한국개발연구원, 1991. 12.
- 신용하 編, 「공동체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
- 안준섭, “미작농가의 농작업 수·위탁 실태에 관한 고찰”,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조사부, 1989. 6.
- 안준섭, 「영농대행조직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조사연구보고서 '91-제2집, 농협중앙회조사부, 1991. 12.
- 영덕군, 「영덕위탁영농주식회사 '91 운영현황」, 1991. 9., 「'91 위탁 영농회사 설립에 따른 융자금지원통지」, 1991. 5. 15.
- 영덕군 농촌지도소, 「영덕라이스센타 지도사례」, 1990. 11.
- 영덕군 농촌지도소, 「'91 벼농사 군단위종합평가회자료」, 1991. 9. 27.
- 영덕위탁영농주식회사, 「정관」, 1991. 3. 4.
- 柳基鉉, 「組織行動論」, 貿易經營社, 1983.
- 윤수중, 「한국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문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0. 8.
- 전라북도농회편, 「全北의 農業」, 1928.
- 정두철, 「위탁영농회사의 발전과정과 경영실태분석-입지와 경영유형을 중심으로-」, 경제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4. 2.
- 조선총독부, 「1938년 농업통계표」, 1940.
- 주종환, 「농업기계화와 영농조직」, 일조각, 1985.
- 최민호,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의 확대방안」, -연구지도속부- 농촌진흥청, 1983. 9.
- 한국경제신문, 「營農會社 손길바쁘다」.
- 한국일보, 「위탁영농社들 장사된다」, 1991. 6. 1

- 大原興太郎, 「稱作受託組織と農業經營」, 日本經濟評論社, 1985.
- 久間健一, 「朝鮮農業の近代的様相」, 1935.
- 吉田 博, 「農業生産共同組織論」, 農村統計協會, 1980.
- Donelson R. Forsyth, 「An Introduction to Group Dynamics」,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Monterey, California(서울대사회심리학연구실 역, 도서출판 성원사, 1991).
- Richard H. Hall, 「Organization: Structure and Process」,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1982(鄭宇一·李汪宰 共譯,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1986).
- S.P.Robbins, 「Organizational Behavior」,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1983.
- M.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Press(윤여덕 역, 청림출판, 1987).
- Freud, S., 「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 London: Hogarth, 1922.
- Schutz, W.C., 「FIRO: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Rinehart & Co., Inc., 1958.
- Wilson, E.O.,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1975.
- Crook, J.H., "The evolutionary ethology of social processes in man". In H.Kellerman(Ed.), 「Group cohesion」, New York: Grune & Stratton, 1981.
- Festinger, L., "Informal social communic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157, 1950.

\_\_\_\_\_.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 Vol 7, 1954.

Schachter, S.. 「The Psychology of affiliation」, Palo Alto, Calif: Stanford Univ. Press, 1959.

Allan R.Cohen, Stephen L.Fink, H.Goden, and Robin D, Willits, 「Effective Behavior in Organizations」, Homewoods, III, Irwin, 1976.

Fremont E.Kast and James E.Rosenzweig, 「Organization and Management」, New York: McGraw Hill Book Co., 1970.

Hage, Jerald 「Theories of Organization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80.

빈

면

연구보고 299

##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조사 연구

---

---

찍은날 1994. 10.      펴낸날 1994. 10.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4

---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